

경영보고서 2009-01

#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2009. 3

이기형 · 한상용

보험연구원

## 머 리 말

우리는 흔히 화재나 자동차 충돌사고 등 보편화된 사고에 대한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지만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생산의 중단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영업 손실과 고정비용 등 기업휴지손실(business interruption loss)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예상치 못한 화재나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건물, 기계의 멸실등과 같은 직접적 손실(direct loss)보다 기업이 영업을 정상 수준으로 복구할 때까지 휴업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상실이나 고정비 지출과 같은 간접손실(indirect loss)인 기업휴지손실이 더 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손해와 간접손해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기업과 적절히 대응한 기업은 재해 발생 시 큰 경영성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기업의 경영활동이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연계되는 등 복잡성이 증가하고 나아가 글로벌화 되어 있어 휴업손실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증가되었다. 특히 2001년 WTC 테러로 인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사업중단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기업들도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기준(enterprise risk management)이나 사업연속성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기준(규격)을 제정하여 기업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 가입 수요는 매우 빈약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국내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국내 기업들이 기업휴지 리스크관리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 및 국내외 기업휴지보험의 운영현황 분석과 국내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 활용도 인식조사결과에 기초하여 기업휴지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업휴지보험이 활성화 되면 국내 기업들의 사업연속성관리가 제고되며, 손해보험회사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

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동 연구결과가 국내 기업들의 종합적 리스크관리의 제고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바라며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적극적인 심사를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9년 3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나 동 민

# 목 차

요 약 .....	1
<b>I. 서 론 .....</b>	<b>31</b>
1. 연구목적 .....	31
2. 선행연구 .....	32
3. 연구방법 및 구성 .....	33
<b>II. 기업휴지손해보험의 특징 및 리스크관리 역할 .....</b>	<b>35</b>
1. 기업휴지보험의 개념 및 종류 .....	35
2. 기업휴지보험의 특징 .....	43
3. 기업휴지보험의 필요성 .....	47
<b>III. 주요국의 기업휴지보험 운영현황 .....</b>	<b>59</b>
1. 미국 .....	59
2. 영국 .....	71
3. 일본 .....	79
<b>IV. 국내 기업휴지보험 운영 현황 및 평가 .....</b>	<b>91</b>
1. 상품 운영현황 .....	91
2. 국내 기업들의 활용사례 .....	104
3. 기업의 기업휴지보험 인식 .....	117
<b>V. 기업휴지보험의 활성화 방안 .....</b>	<b>127</b>
1. 기업휴지보험의 활성화 방향 .....	127

2.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 .....	131
3. 보험료 부담완화 .....	140
4. 마케팅의 개선 .....	144
5. 종합적 리스크관리 제도의 도입 .....	146
6. 도덕적 해이방지 .....	154
<b>VI. 결 론 .....</b>	<b>157</b>
<b>참고문헌 .....</b>	<b>160</b>

## <표 차례>

<표 II-1> 기업휴지보험 상품의 개발 내역 .....	37
<표 II-2> 기업휴지 손해 발생원인 .....	39
<표 II-3> 국내 기업의 휴업 및 폐업률 추이 .....	40
<표 II-4> 세계 기업들의 휴업원인 .....	41
<표 II-5> 영국식과 미국식 기업휴지보험의 주요 특징 .....	43
<표 II-6> 간접손실보험의 손해액 산출 예 .....	46
<표 II-7> 기업휴지보험의 보험가입금액 결정방식 .....	46
<표 II-8> 국내 기업의 휴업손해액 규모 추정결과 .....	48
<표 II-9> 국내 기업들의 휴업기간별 휴업손실액 규모 .....	49
<표 II-10> 산업별 영업레버리지 추이 .....	55
<표 II-11> 산업별 영업레버리지가 높은 업종 순위(2007년 기준) .....	58
<표 III-1> 미국 기업휴지담보종목의 보유보험료 실적 추이 .....	60
<표 III-2> 미국 트래블러사의 기업휴지 벤치마크 비율 .....	62
<표 III-3> 사업자종합보험의 재산손해 담보위험 .....	64
<표 III-4> 상업종합보험의 재산손해 담보위험(BI담보위험) .....	67
<표 III-5> 미국 NFPA 1600(재난관리 및 사업연속성 표준)의 개요 .....	70
<표 III-6> 영국 재물보험의 보유보험료 추이 .....	72
<표 III-7> 영국 상업종합보험의 실적 추이 .....	74
<표 III-8> 영국 기업휴지 보험금 추이 .....	75
<표 III-9> 영국 기업휴지원인별 지급보험금 추이 .....	75
<표 III-10> 일본 기업휴지보험료의 성장추이 .....	81
<표 III-11> 일본의 상실수익의 개념 .....	81
<표 III-12> 일본의 비용 이익종합보험 담보체계 .....	86
<표 III-13> 동경해상 초비즈니스보험 담보체계 .....	87
<표 IV-1> 화재보험의 국·영문약관 비교 .....	92

<표 IV-2>	영문 화재보험의 기업휴지보험 실적 .....	93
<표 IV-3>	영국식 및 미국식 약관의 비교 .....	94
<표 IV-4>	국문 화재보험의 기업휴지보험 실적 .....	95
<표 IV-5>	재산종합보험의 담보위험 체계 .....	99
<표 IV-6>	재산종합보험의 기업휴지 담보 현황 .....	101
<표 IV-7>	A사의 사고 전 후 경영성과 비교 .....	108
<표 IV-8>	B사의 사고전후 경영성과 비교 .....	109
<표 IV-9>	C사의 사고 전 후 경영성과 비교 .....	111
<표 IV-10>	D사의 사고 전 후 경영성과 비교 .....	113
<표 IV-11>	기업휴지보험 가입효과 차이(부채비율, DOL) .....	116
<표 IV-12>	기업휴지보험 가입효과 차이(ROE, 영업이익율) .....	117
<표 IV-13>	설문 응답 기업체의 업종별, 매출액별 분포 .....	118
<표 IV-14>	기업규모별 기업휴지보험 가입현황 .....	119
<표 IV-15>	기업들의 보험가입이유 (복수응답) .....	120
<표 IV-16>	매출액별 기업휴지보험 가입이유 (복수응답) .....	121
<표 IV-17>	기업휴지보험의 영업정상화 도움 정도 .....	122
<표 IV-18>	가입 기업의 휴지보험 계속 가입의향 .....	122
<표 IV-19>	기업휴지보험 미가입 이유 (복수응답) .....	123
<표 IV-20>	미가입 기업의 휴지보험 가입의향(업종별) .....	124
<표 IV-21>	미가입 기업의 휴지보험 가입의향(매출액별) .....	125
<표 IV-22>	기업 휴지보험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복수응답) .....	125
<표 V-1>	화재보험의 기업휴지담보 가입율 .....	127
<표 V-2>	재산종합보험의 기업휴지담보 가입율 .....	128
<표 V-3>	기업휴지담보 보험료 추정액 .....	129
<표 V-4>	기업휴지보험의 가입율별 보험료 규모 .....	130
<표 V-5>	기업 휴지보험의 활성화 방향 .....	131
<표 V-6>	국내 기업휴지보험 상품 비교 .....	132

<표 V-7> 기업들이 직면하는 주요 리스크 순위 .....	134
<표 V-8>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	135
<표 V-9> 주요국의 기업휴지보험 상품 .....	138
<표 V-10> 높은 보험료 인하(1순위) 응답 비율 .....	141
<표 V-11> 재산종합보험중 BI담보의 계약건당 보험료 .....	141
<표 V-12> 국내 손보사의 담보력 및 출재율 추이 .....	143
<표 V-13> 주요국의 사업연속성관리 규격 운영현황 .....	148
<표 V-1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법 내용 .....	150
<표 V-15> 리스크관리와 사업연속성관리의 사이클 비교 .....	152
<표 V-16> 기업규모별 수익대비 리스크비용 지출 비교 .....	153
<표 V-17> 기업휴지보험의 손해사정 시 자주 접하게 되는 이슈 .....	155
<표 V-18> 보험종사자, 손해사정사의 효과적인 교육수단 .....	156
<표 VI-1> 기업휴지보험 가입기업과 미가입의 인식차 .....	158

## <그림 차례>

<그림 II-1> 기업휴지보험의 개념 .....	35
<그림 II-2> 기업휴지보험계약의 보험 목적(총이익) .....	45
<그림 II-3> 업종별 휴업손실액의 비중 추이 .....	48
<그림 II-4> 산업별 영업레버리지 추이 (2005-2007) .....	55
<그림 II-5> 제조업 세분류별 영업레버리지 .....	56
<그림 III-1> 사업자종합보험의 기업휴지담보체계 .....	63
<그림 III-2> 미국 상업종합보험의 기업휴지담보체계 .....	66
<그림 III-3> 영국 상업종합보험의 기업휴지 담보 .....	73
<그림 III-4> 영국 중소기업의 보험가입현황(2008.3) .....	76
<그림 III-5> 영국의 사업연속성관리(BCM)의 영역 .....	77
<그림 IV-1> 영문약관 기업휴지보험특약 종류 .....	92

<그림 IV-2> 국문기업휴지보험 상품의 운영체계 .....	96
<그림 IV-3> 재산종합보험의 기업휴지손해 담보체계 .....	100
<그림 IV-4> 재산종합보험의 기업휴지 보험료 및 가입율 추이 .....	101
<그림 IV-5> BI 보험가입여부에 따른 부채비율 차이 .....	115
<그림 IV-6> BI 보험가입여부에 따른 ROE 비교 .....	117
<그림 V-1> 영업레버리지와 평균 휴업손해액의 비교 .....	136
<그림 V-2> 한국과 주요국의 산업구조 비교 .....	137
<그림 V-3> 기업의 휴지리스크의 포괄 담보 개념 .....	139
<그림 V-4> 다수 계약자 필요성 .....	142
<그림 V-5> 일본 손보재팬의 BCP 연계 보험제도 .....	146
<그림 V-6> 사업연속성계획(BCP)의 효용성 .....	149

## 요 약

### I. 서 론

- 선진국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된 기업휴지 등의 간접손실 리스크를 보험을 통해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휴지보험은 손해보험시장의 주요시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의 경우 기업휴지보험은 수요도 미진하며, 소비자 니즈에 부합한 상품체계도 갖추어 있지 못한 실정임.
-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리스크관리는 과거의 순수리스크에 국한하지 않고 전사적 리스크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개념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업휴지보험은 기업의 리스크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국내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의 수요는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회사들은 기업휴지보험의 정확한 리스크파악 및 획기적인 상품운용을 통해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경영 중단 리스크에 대한 기업들의 보험가입 활용사례를 분석하고 경영 중단 리스크의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조건제약이론(Theory of Constraints)과 영업레버리지를 기업의 경영 중단 리스크관리와 연결시킴으로써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적정 이익달성에 기업휴지보험이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II. 기업휴지보험의 특징 및 리스크관리 역할

### 1. 기업휴지보험의 개념 및 종류

-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에 대한 정의는 보험업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하나의 특정 보험종목의 특약 또는 담보위험 형태로 규정되어 있음.
- 기업휴지보험은 보통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기업의 영업이익의 상실과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경상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의할 수 있음.
- 기업휴지보험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 명칭으로 불리고 있음.
- 기업휴지보험은 영국에서는 이익 상실보험(loss of profit) 또는 결과적 손해보험(consequential insurance), 미국에서는 기업휴지 또는 이익보험(business interruption/income insurance), 일본에서는 이익보험(利益保險)으로 불림.
- 기업휴지 손실은 그 원인이 기업내부에서 야기된 것인지 외부에서 제공된 것인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는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후자의 경우는 우발적 기업휴지보험(contingent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이라고 불림.

### 2. 기업휴지보험의 특징

- 전 세계적으로 기업휴지보험은 크게 영국식상품과 미국식상품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 기업휴지보험의 목적

- 일반적인 보험의 목적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 보험의 목적이 보험계약에 부보 되는 유형의 실체인 것에 비해 기업휴지보험의 목적은 무형의 현금흐름이며 보험의 목적을 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음.

□ 기업휴지보험에서 계약의 목적

- 영업손익(net profit)과 고정비(standing charge)의 합인 손익, 즉 총이익(gross profit)은 보험계약의 목적에 해당되며 영업외 수익은 보험계약의 목적에 해당 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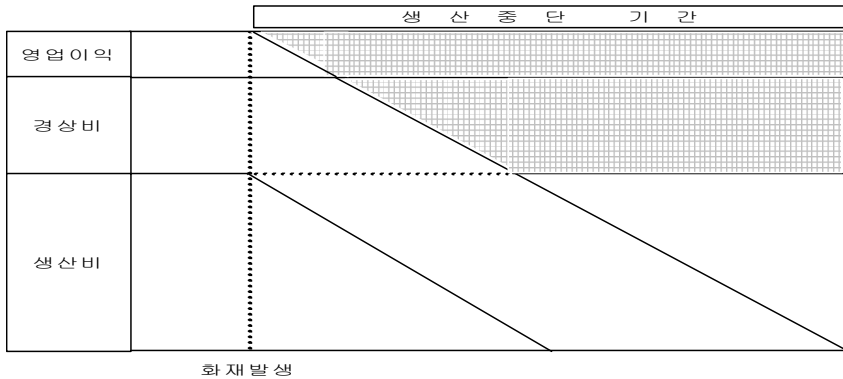
□ 보상하는 손해

- 일반 재물보험과는 달리 기업휴지보험 등의 간접손해보험은 약관상에 담보하는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해 생긴 영업이익(net profit), 조업의 중단 기간 동안 기업이 계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상비(standing charge), 보험사고시 기업휴지손해를 경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보상함.

□ 기업휴지보험에서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사고 시 보험회사의 지급한도로써의 기능을 하며, 비례보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임.
-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은 총이익방식(gross profit) 또는 자산방식과 차액방식(difference basis)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기업휴지보험계약의 보상손해



- 가산방식은 고정비에서 영업 손익을 합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차감방식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두 방법을 통해 산출한 금액은 모두 동일함.

3. 기업휴지보험의 역할

- 국내 기업들이 화재 등으로 인한 휴업손실규모는 2007년 기준 산업 전체로 연간 595조 1,100억원에 이르며 연평균 8.7%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국내기업의 기업휴업손해액 추정결과

(단위 : 천 억원)

업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광업	12.2	11.7	11.6	8.2	11.1	11.0	10.7	9.5
제조업	1,984.6	1,934.0	2,269.2	1,689.9	2,888.1	3,050.4	3,199.2	3,607.9
건설업	584.2	634.1	751.7	894.3	1,013.7	1,639.0	1,282.2	1,339.9
도소매업	51.6	103.1	91.7	72.2	52.9	115.8	171.5	213.6
운수업	241.7	242.6	288.3	203.1	369.0	386.8	389.2	422.5
서비스업	174.0	141.9	154.0	191.5	226.7	248.9	300.3	357.6
산업계	3,048.3	3,067.4	3,566.6	3,059.3	4,561.5	5,451.7	5,353.1	5,951.1

- 국내 기업들의 휴업손실규모를 산업별 비중으로 보면 광업, 제조업은 감소하고 있지만 건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의 휴업손실액 규모는 매년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휴업손실액 = 총매출액-(대손상각액+현금할인액)
   
=순매출액 - 재고제품증가액 - 제품판매가액(원부자재비) 등
  
- 사업연속성 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에 중요
  - 기업들은 복잡다기화 된 생산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적기에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연속성 관리체제의 구축을 기업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있음
  
- 기업의 최대목표인 수익의 창출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되는 제약조건이론(Theory of Constraints)은 기업휴지보험과 그 기능이 동일함.
  - 스루풋은 기업이 제품을 판매하여 기업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정의되며, 매출액(T/O)에서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것(스루풋 = 매출액(T/O) - 변동비(VC))과 기업휴지보험의 보험가입금액(TSI)은 동일
  - 스루풋(T) = 영업이익(NP) + 고정비(SC)
   
= 기업휴지보험의 보험가입금액
  
- 영업리스크관리에 필요
  - 기업휴지로 인한 손실은 주로 재해로 인해 발생한 영업이익의 손실과 고정비용의 지속적인 발생에서 비롯됨.
  - 이는 영업레버리지가 커서 매출액의 감소 상황에서 영업이익의 변화폭이 더 커지게 되는 경우 기업휴지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게 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며, 또 실제로 기업휴지

손실은 영업레버리지가 큰 경우 증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text{영업레버리지(DOL)} = \frac{\text{영업이익증가율}}{\text{매출액증가율}} = \frac{\Delta EBIT/EBIT}{\Delta Q/Q}$$

△EBIT: 영업이익 증가분

EBIT: 영업이익

△Q: 판매량의 증가분

Q: 판매량

- 제조업의 경우 특히 영업레버리지(DOL)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실은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면 고가의 고정자산인 생산설비 또는 용역설비의 복구기간이 길어지고 그에 따른 고정비용의 발생으로 기업휴지에 따른 손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음.

산업별 영업레버리지 추이

업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광업	-57.98	-30.34	52.92	-31.21	-55.43	20.05	19.76	30.39	
제조업	6.37	8.27	6.39	6.15	5.25	6.19	6.93	6.34	
건설업	15.00	10.22	8.94	6.71	6.78	5.44	5.82	6.15	
도소매업	16.43	11.80	10.39	9.26	9.43	9.70	10.81	9.55	
운수업	18.34	24.42	34.05	18.97	12.96	15.83	27.62	18.39	
서비스업	14.05	17.34	26.64	21.30	14.75	12.48	10.90	9.67	
제조업 세분류	대기업	4.90	6.51	5.37	4.98	4.15	5.09	5.88	5.54
	중소기업	10.37	12.80	9.01	9.66	9.91	9.24	9.44	8.38
	수출	6.18	11.82	6.30	5.98	4.85	6.65	7.36	6.09
	내수	6.51	6.94	6.44	6.28	5.68	5.84	6.61	6.56
	중화학	5.99	8.39	6.23	5.65	4.75	5.72	6.56	5.97
	경공업	8.20	7.88	7.03	8.90	9.14	9.04	8.87	8.52

### III. 주요국의 기업휴지보험 운영현황

#### 1. 미 국

- 미국에서 기업휴지보험은 1880년 Dalton대리점이 화재로 인한 영업손실 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1938년에 들어 총수익방식이 도입되어 영국 식 이익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상품으로 발전하였음.
- 미국에서 기업휴지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상품은 상업재물보험 (commercial property policy), 기업소유자종합보험(business owner's policy), 독립된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세 가지 형태가 있음.
  - 상업재물보험은 비교적 영업규모가 큰 기업들이 사용하는 약관이며, BOP는 규모가 작은 소규모 기업들이 사용하는 상품체계임.
- 사업소유자종합보험
  - 사업체 종합보험 가입업체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small sized business)이나 건물이 해당되기 때문에 동 보험을 소기업종합보험(small business owners policy)이라고도 하며, 또 이들 보험의 가입 기업체들이 주로 중요도로(main street)옆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 라는 점에서 중요도로 기업체 보험(main street business insurance)이라고도 함.
  - 사업체 종합보험에서 기업휴지담보는 재산손해의 담보하는 위험 중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휴업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하는 개념이며, 담보방식은 열거위험양식(named-perils form)과 특별양식(special form)의 2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사업체 종합보험의 재산손해의 담보위험(BI담보위험)

구 분	Basic Form	Special Form
담보위험	화재, 낙뢰, 폭발, 폭풍/해일, 연기, 항공기/자동차, 폭동/소요, 악행, 스프링클러누출, 싱크홀붕괴, 화산활동, 재물의 운송위험	기업휴지손실(business income, extra expense), 연기/증기/가스, 증기장기, 냉동배관, 부정직, 붕괴, 오염, 마모/녹/부식 등 위험, 기상조건 등
면책사항	법집행/정부기관 행위, 지진, 핵위험, 구외유틸리티서비스, 전쟁군사행동, 수손(water damage)	

□ 상업용 종합보험

- 상업용 종합보험(Commercial Package Policy)은 사업체 종합보험과 같이 재산손해를 기본 담보축으로 하고 배상책임 등을 하나의 증권으로 담보하는 종합보험으로 기업휴지보험을 담보하지만 규모가 큰 대규모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기업휴지손해의 담보위험은 재물손해의 담보위험(causes of loss)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든가 아니면 특정 위험만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함.

상업용 재산보험의 재산손해의 담보위험(BI담보위험)

구 분	Basic Form	Broad Form	Special Form
담보위험	화재, 낙뢰, 폭발, 폭풍/해일, 연기, 항공기/자동차, 폭동/소요, 악행, 스프링클러누출, 싱크홀붕괴, 화산활동	-Basic Form의 담보위험 -낙하물, 실재, 수침손, 다른 붕괴	면책사항외 모두 담보, 운송중인 개인재산, 유리파손
면책사항	법집행/정부기관 행위, 지진, 핵위험, 구외유틸리티서비스, 전쟁군사행동, 수손(water)		

- 미국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 활용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만 기업의 기업휴지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통계는 조사기관이나 조사 목적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재해에 따른 사업 계속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화재 등의 재해를 입은 기업은 43%만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9%는 2년이 지나야 사업재개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Safeco사가 미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험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중소기업의 45%가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기업휴지의 원인으로는 전력시설 72%, 컴퓨터H/W 52%, 통신수단실패 46%, S/W문제 43%, 인적실수 34%, 낙뢰 34%, 홍수 17%, 화재 14%, 허리케인 12%로 나타났음.
- 미국의 기업연속성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는 2001년의 9.11 테러나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참사와 같은 지진, 테러 등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대형재해 발생으로 경영활동이 중단될 경우 중요업무를 가능한 신속하게 복구시켜 기업의 경영상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
- 2001년 9.11 테러의 경험은 테러 이전에 각 조직 단위로 실행되던 미국의 개별적인 재해관리체제를 정부기관, 사업체, 자원봉사 조직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조직들이 동시에 재난관리에 참여하는 통합적인 관리체제로 변화하게 하였음.
- 사베인즈-옥슬리 법의 404항(Sarbanes-Oxley Section 404)은 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들은 내부통제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기업의 사업연속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재해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기업들의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연속성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에 대한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이의 관리수단으로 기업휴지보험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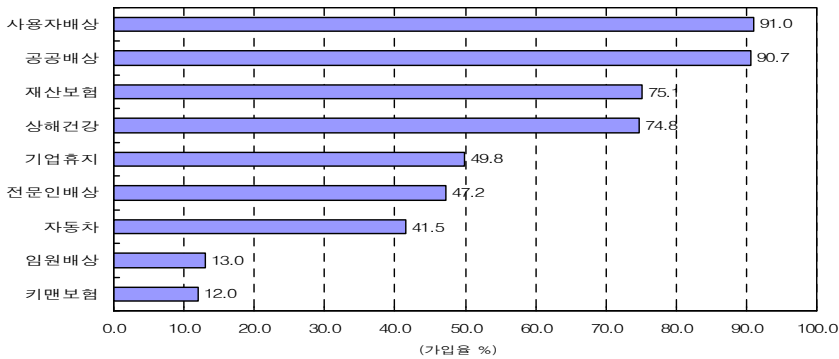
## 2. 영 국

- 영국의 기업휴지보험은 1797년에 Minerva Universal회사가 결과적 비용 및 이익손해(consequential loss)를 담보하는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939년에 현대적인 기업휴지보험 표준약관이 만들어짐에 따라 영국식 기업휴지보험은 미국식 기업휴지보험과 더불어 기업휴지보험의 중요한 두 축을 이루게 되었음.
- 영국의 기업휴지보험은 화재보험의 기업휴지손해담보특약을 첨부한 형태의 상품과 상업용 물건을 대상으로 한 상업용 종합보험(commercial combined insurance)으로 구분됨.
- 영국의 기업휴지보험은 미국의 보험과 같이 국제 표준형태의 한 종류로 되어 있으며, 영국식 기업휴지보험은 총이익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통상적으로 영국의 기업휴지 보험은 다른 나라들처럼 패키지보험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업용 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로 통칭되나 회사별로 상품의 특성에 따라 상업용 종합보험(commercial combined insurance)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상업용 종합보험(commercial combined policy)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도소매업자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계약자들이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해나 사고로 인한 물리적 피해, 경영중단 손해 등의 위협으로부터 사

업의 연속성을 지속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맞춤형 보험 상품 (Tailor-made Cover)임.

- 영국 중소기업의 52%는 매년 평균 22,914파운드의 기업중단 비용이 발생하는 중단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이들 기업의 소유자나 경영자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주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1만 파운드 이상을 지출하고 있음.

영국 중소기업의 보험가입현황(2008.3)



- Hiscox사의 2007년 중소기업 521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기업의 44%는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결과적 손해 (consequential loss)에는 30%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까지 포함하는 경우 영국에서의 기업휴지보험의 가입률은 보편화되어 있음.
- 영국은 정부차원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업 중단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제도 중의 하나가 “사업연속성관리(BCM: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에 대한 표준규격”임.
- 영국표준협회는 사업연속성연구소(Business Continuity Institute)와 공

동으로 2002년 사업연속성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에 대한 공공표준인 PAS56을 제정, 보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06년과 2007년에 BCM에 대한 실행지침(BS 25999-1)과 규격(BS 25999-2)을 제정, 발표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의 사업연속성관리를 위한 노력과 지원을 기울이고 있음.

- 영국의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정부의 사업연속성 리스크관리 정책을 기업 휴지보험의 보급과 시장개척의 활로로 삼아 다양한 기업휴지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사업연속성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기업휴지보험을 활용하여 재난대비 역량과 복원력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고 있음.
- 영국의 Zurich 보험사의 경우 “Zurich Risk Engineering,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ervices”를 개설하고 고객들에게 사업연속성계획의 개발, 사업연속성계획에 대한 감사, 기업휴업(business interruption) 모델링, 기업충격분석(business impact analysis)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3. 일 본

- 일본의 기업휴지보험인 이익보험의 역사는 영국 등 유럽국가나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70여년에 불과하지만 전후의 경제발전에 따라 이익보험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공인회계사제도의 도입으로 기업회계제도가 투명하게 정비되자 수요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음.
- 현재와 같은 일본식 약관체계는 1981년에 대폭적인 변경이 있었으며 1987년 6월에는 이익보험의 요율체계를 개정하여 실시하였고 현재는 화재보험보통약관(이익보험, 영업계속비용보험용)에 이익보험특약을 부대하

는 형태로 이익보험이 운영되고 있음.

□ 화재보험의 이익보험담보특약

- 화재보험보통약관(이익보험, 영업계속비용보험용)에 이익보험특약을 첨부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이익담보특약에서 담보하는 손해는 보험의 목적이 보통약관(및 특약)의 담보위험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결과, 영업을 휴지 또는 저해되어 생긴 『상실이익』과 손실(상실이익)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익감소 방지비용』을 보상함.
- 이익보험에서 상실이익은 피보험자인 사업자의 영업수익 중 영업이익과 영업비용(경비)중 고정비의 일정 부분 즉 부보경상비를 담보함.

□ 화재보험의 영업계속비용담보특약

- 영업을 휴지나 저해가 되지 않도록 영업을유지 및 계속을 위해 소용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으로 이익보험과 동일하게 약관구성상 화재보험보통약관(이익보험 및 영업계속비용보험용)의 특약형태로 판매되고 있음.

□ 기업비용 및 이익종합보험

- 이익보험과 영업계속비용보험을 합한 종합보험 성격으로 화재보험 및 점포종합보험과 함께 가입해야 하며, 점포휴업보험과 같이 독립적인 상품으로 이익보험에서 담보하는 상실이익과 수익감소방지비용, 영업계속비용보험에서 담보하는 영업계속비용을 동시에 담보함.

□ 초비즈니스 보험

- 초비즈니스보험은 기업들의 영업환경이 복잡하게 기업내외부적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어 과거의 일반적인 기업휴지보험 상품으

로는 기업의 니즈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됨.

- 동 보험 상품은 보험가입대상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아 업종별로 리스크 특성에 맞는 담보를 제공, 사고시 효율적인 보상, 선택을 제공하며 독자적인 할인제도와 계약절차와 관리가 간단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일본에서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을 이용한 휴업손실 리스크관리는 일본식 이익보험이 개발된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초기에 도입된 기업휴지보험의 활용이 미진하자 현재 일본 보험업계는 독립적인 기업휴지보험 상품담보가 가능하거나 담보방식을 달리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음.

동경해상 초비즈니스보험의 담보체계

구 분	기 본 담 보 위 험	선택담보 위험(보험상품)
담보 위험	재물손해담보: 건물, 설비, 집기, 운송중 상품제품 휴업손해담보: BI, CBI를 포괄 담보 배상책임보상: 사업활동관련 배상책임 상해보상: 취업중 임직원 상해 산재초과보상: 산재시 산재초과손해 담보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지진보험
컨설팅 서비스	IT 컨설팅시스템을 통해 보험료견적을 즉각적으로 실시	

- 2007년 10월 노무라 종합연구소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연속성계획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일본 기업의 29%는 이미 구축해서 시행하고 있고, 36.1%는 구축 중에 있으며 32.5%는 구축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이에 관심이 없는 기업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최근 일본 손해보험에서는 비용이익종합보험, 초비즈니스보험 등의 다양한

형태의 이익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사업연속성관리(BCM)에 대한 기준이 제정되어 중소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일본의 손해보험회사들은 정부차원에서 사업연속성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의 사업연속성관리의 영역을 손해보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 IV. 국내 기업휴지보험 운영 현황 및 평가

##### 1. 상품 운영현황

- 화재보험의 기업휴지보험(영문약관)
  -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업휴지보험은 1960-70년대 경제발전 시기에 외국차관업체의 기업휴지보험 가입 요청으로 재보험출제가 가능한 영문약관이 필요하게 되어 1970년 9월 24일 미국식(gross earning form) 기업휴지보험특별약관(제조업체용)이 영문화재보험약관(FOC policy)에 첨부되는 방식으로 인가되었음.
  - 그 후 1983년에는 영국식 이익보험약관(loss of profits)과 상업 및 비제조업체용(gross earning form no.3 상업용, gross earning form no.4 제조업체용)의 미국식 기업휴지보험 약관이 인가되어 판매되기 시작하였음.
- 화재보험의 기업휴지보험(국문약관)
  - 기업휴지 등의 특별한 리스크에 대한 국내의 경험통계가 축적되지 못하고 자체적인 가격산출이나 리스크관리 수요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두되자 해외 재보험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87년

11월 2일에 기업휴지보험특약이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국문약관의 시장규모는 2006년의 경우 26건 계약에 2억원의 보험료로 현재 아주 미미한 실정에 있음.
- 국문기업휴지 특약은 영문약관과 동일하게 보통약관에 특약형태로 첨부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화재이외의 위험(peril)으로 인한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담보할 수 있음.
- 기업휴지보험특별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확장담보위험에는 폭발, 풍수재, 전기, 소요노동쟁의, 차량위험, 악의적인 파괴행위, 확장위험담보 등이 있음.
- 국문 기업휴지보험약관은 일본의 이익보험과 유사하게 총수익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영국식 약관에서 사용하는 복구기간 등을 채용한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재산종합보험(Package All Risk Policy)
  - 재산종합보험은 미국과 영국, 일본 소비즈니스보험과 같은 Package Policy로 1968년 도입 판매되었음.

재산종합보험의 기업휴지담보체계

	담보구성	면책/확장담보	세부사항
Package Insurance Policy	Master Schedule	부보명세서	
	Operative Clause	약관전체 적용특약	보험계약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규정
	General Exclusion	약관전체 면책사항	
	General Condition	약관전체 계약조건	
	Section I : Property All Risks Cover	special exclusion special extension provision applying to	
	Section II : Machinery Breakdown Cover	special exclusion special extension provision applying to	
	Section III : Business Interruption Cover	special exclusion provision applying to additional memoranda application to	gross profit basis standing charging basis off-premises power
	Section IV : General Liability Coverage	special exclusion	
		special extension 1	pollution liability Employer's Liability
		special extension 1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Cover(복미수출부담보)
		provision applying to	

- 우리나라의 재산종합보험의 기업휴지손해 담보는 영국식인 총이익기준(gross profit basis)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관의 규정방식은 화재보험이 영국식과 미국식을 혼합한 하나의 형태인 것에 비해 큰 차이가 있음.
- 재산종합보험에서 기업휴지손해담보는 화재보험과 비교할 경우 담보위험에 의한 물적 사고를 전제로 하는 것은 동일하나 담보위험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

- 재산종합보험은 상품 도입초기부터 해외 재보험자가 제시하는 보험요율을 구득하여 사용하여 온 관계로 지금까지 요율수준이나 요율산출체계 등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계약실적이나 손해율 실적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

## 2. 국내 기업들의 활용사례

- 2000년 이후 화재 등으로 재물 손해를 공시한 8개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의 가입여부에 따른 기업 성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한 기업군(보험가입)은 사고 발생 후 가입하지 않은 기업군(보험미가입)에 비해 사고 발생(AY: Accident Year) 전후의 부채비율, ROE,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율, 영업레버리지율(DOL) 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3. 기업의 기업휴지보험 인식

- 설문에 응한 73개 기업 중 21%인 15개 기업이 기업휴지보험에 가입(가입률 21%)
-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한 기업들에게 가입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0%인 9개 기업이 “스스로 기업휴지 리스크관리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가입하였다고 응답함.
- 설문 결과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한 15개 기업 중 5개의 제조업체만 영업중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5개 기업들은 최저 30일에서 최대 180일의 영업중단 기간 동안 기업휴지보험금이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재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 향후 기업휴지보험을 계속 가입하겠는가에 대한 의향을 설문한 결과

93.3%가 계속 가입하겠다고 응답함.

-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58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기업휴업손실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게 생각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크게 나타났음.
- 미가입 기업들의 향후 기업휴지보험 가입의향은 11.5%로 나타남.
- 보험시장의 활성화에 대해 보험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요인에 대한 질문의 결과, 높은 보험료의 인하(41.4%), 기업의 종합적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다른 상품의 개발제공(21.4%),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21.4%)이 가장 많은 순위로 응답하였음.
- 반면에 기업휴지보험의 활성화에 있어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6순위의 사유를 보면 보험회사의 가입심사 기준을 완화(33.3%), 보험회사의 기업휴지보험 전문가 양성(33.3%) 등을 들고 있음.

## V. 기업휴지보험의 활성화 방안

### 1. 기업휴지보험의 활성화 방향

- 기업휴지보험은 무형의 매출액 감소와 같은 재무적 손실을 보상하기 때문에 동 사고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직면하거나 사전에 이에대한 리스크를 측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보험가입 유인이 적은 특성을 가짐.
- 화재보험의 경우 제조업체의 가입률은 0.05%에 불과하며 과거에 비해 큰 변화없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6년도의 경우

공장물건 화재보험계약은 4만 9,841건이 체결되었지만 23개 기업만 기업휴지손해 담보특약을 가입하고 있음.

- 재산 종합보험의 경우 화재보험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큰 기업들이 보험가입을 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비해 가입률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건수 기준 9.4%).
- 기업휴지보험의 보험료 규모를 화재보험의 기업휴지손해담보특약의 산출식을 이용하여 추정해 보면 최대 4,8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임.
-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향
  - 특정 보험시장이 활성화되었다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보험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계약자가 다수 존재하고, 이러한 계약자들에게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적절하게 존재해야 함.
  - 국내에서 기업휴지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개발과 높은 보험료수준, 상품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기업 휴지보험의 활성화 방향

고려요소	현 재	개 선 방 향
상 품	국내 독자 상품 부재 계약자 니드 미반영	독자 상품 상품 판매 업종별 니드 부합상품개발 다양한 보상방식 상품개발
가 격	해외 재보험자 의존	국내 보험사 산출
판매방법	임직원 직접판매	고객군별 차별채널 전략
광 고	전혀 하지 않음	리스크관리서비스와 병행

## 2.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업휴지보험 상품은 1960년대에 도입된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변화 없이 판매되고 있어 현재와 같이 변화된 경제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음.
- 산업별 기업휴지 리스크의 특성을 기업 당 평균 휴업손해액 규모와 영업레버리지 비율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업종별로 다른 담보위험이나 보상방식 등을 반영한 다양한 기업휴지보험 상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개발 상품의 형태
  - 국내에서 판매중인 국문과 영문 기업휴지보험 상품은 업종별로 다르게 존재하고 있는 기업휴지보험 상품에 대한 니즈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휴지리스크를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상품과 현재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를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는 신개념의 상품 개발이 필요함.
  - 일본과 같이 모든 업종의 모든 리스크를 한 증권으로 포괄 담보가 가능한 초비즈니스보험과 같은 상품을 개발하여 종합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국의 기업휴지보험 상품

구 분	일 본		미 국
	과거 상품	현재 상품	
서비스업 상업용건물	화재보험	비용이익종합보험	Business Owners Policy
	점포종합보험		
제조업	화재보험	초비즈니스보험	Commercial Property Policy

- 기업휴지 리스크의 담보개념을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담보방식을 개선해야 함.
  - 상장기업들과 같이 기업의 회계정보가 투명하여 휴업손실을 추정할 수 있는 기업과 추정하기 어려운 기업을 이원화하여 추정하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에는 일본의 초비즈니스보험과 같이 휴업 1일당 정액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
- 기업휴지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휴지 리스크만을 독립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되어야 함.
- 기업휴지보험을 하나의 시장영역으로 규정하고 상품 명칭을 기업들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 기업휴지(企業休止)보험의 명칭을 기업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영업손실보상보험, 사업중단손실보험 또는 경영중단손실보험 등으로 변경하고, EU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전적 손실보험과 같이 기업휴지보험을 손해보험의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

### 3. 보험료 부담완화

- 기업들이 기업휴지보험가입을 꺼려하는 이유로는 높은 보험료 부담을 들고 있으므로 활성화를 위해 이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높은 보험료 인하(1순위) 응답 비율

(단위:%)

매출액 규모	500억 미만	500억~3000억	3000억~1조	1조 이상
응답비율	48	38	33	26

□ 높은 보험료 부과이유

- 높은 순보험료(국내 기업들이 계약건당 부담하는 기업휴지보험료는 최근 5개년 평균 3,100만원인데 비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1.21억원)
- 해외 재보험자나 보험자가 제시하는 요율을 적용
  - 국내 보험실적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해외보험자의 영업실적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음.

재산종합보험중 BI담보의 계약건당 보험료

(단위 : 억원)

연 도	건당 가입금액(a)	건당보험료(b)	건당보험금(c)	초과비율(c/b)
2002	146.06	0.35	0.81	2.29
2003	257.06	0.33	6.43	19.53
2004	145.92	0.13	-	-
2005	798.92	0.26	3.00	11.37
2006	546.05	0.41	0.99	2.41
누적평균	475.51	0.31	1.21	3.94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됨과 동시에 수지상등의 원칙이 성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휴지보험 상품 개발
- 둘째,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담보력을 제고시켜 기업성 인수물건에 대한 보

험요율 산출권을 국내 원보험사업자(direct insurer)에게로 복귀시켜야 함  
(Rating Authority)

- 셋째, 다양한 보험료 차등제도를 도입하여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해야 함.
  - 현재 해외 보험사업자가 어떠한 요율플랜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기업들의 국내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신뢰가 상실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리스크관리규격 인증을 받거나 사업연속성관리(BCM) 기준을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 과거 손해를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경험요율제도(experience rating), 한증권으로 담보하는 포괄담보할인 제도(package discount) 등이 그 해결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 4. 마케팅의 개선

##### □ 기업휴지보험 이해 촉진

- 국내 손보사들은 주로 가계성, 저축보험에 자원의 대부분을 할당하고 기업성보험 종목에 대해서는 상품개발이나 외국의 손해보험회사들처럼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미국의 손해보험회사들은 기업휴지리스크에 대한 개념을 별도로 마련하여 기업들이 노출되어 있는 기업휴지 리스크에 대한 걱정 가입한도 등을 스스로 산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자사의 홈페이지에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예, Travelers 사의 “Business Income and Extra Expense Calculator”)
- 일본의 동경해상, 손보재팬 등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우에도 기업들에

대한 BCP 컨설팅 서비스 제고 및 관련 보험상품 개발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을 포함한 종합 리스크관리 서비스 능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보험회사와 같이 다양한 기업휴지보험을 비롯한 기업성보험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들의 상품의 이해를 촉진하고 고객과의 접근성을 증진시켜야 함.
- 판매채널 다양화
  - 국내에서 기업성보험은 마케팅의 개념이 적용되지 못하는 시장영역으로 인식되어 기업휴지보험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성보험이 임직원 등을 통한 직판채널을 통해 보험가입이 이루어져 왔음.
  - 그러나 선진국의 사례에서 처럼 손해보험회사들과 기업들에게 종합적인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기업휴지보험 상품이 개발된다면 직판채널이 아닌 대리점이나 중개사채널 또는 설계사들도 기업휴지보험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5. 종합적 리스크 관리 제도 도입

- 기업휴지보험의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미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인 93%가 계속가입 의향을 보이지만 비가입기업의 경우에는 11.5%만이 신규로 가입할 의향을 보이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불의의 재해나 사고로 인한 매출액의 감소로 발생하는 기업의 영업이익 및 경상비의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기업휴지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업의 중단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복원력의 확보를 제공하는 총체적 관리 프로세스인 사업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하고 실

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현재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와 같은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화재나 정전과 같은 일반재해와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연속성계획(BCP)이 국가적인 규격으로 제정되어 기업들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미국은 96%(완료 62%, 수립 중 34%)의 기업이 사업연속성계획(BCP)을 구축했거나 구축하는 중에 있으며 경영활동에서 BCP 구축이 계약조건에 포함되는 사례가 일반화 되어 있음.
- 일본의 상장기업 및 비상장기업 매출액 상위 3,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연속성계획(BCP)의 구축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조사 기업의 65.1%가 현재 BCP 구축을 완료했거나 구축 중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주요국의 사업연속성관리 규격 운영현황

국가	규격명칭	작성주체	비고
영국	PAS56 Guide to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2003)	영국규격협회(BSI)	예상되는 리스크로부터 사업중단시 사업영향도(business Impact Analysis) 분석을 중요시함
미국	NFPA 1600 Standard on Disaster/Emergency management and Business Continuity Programs(2004)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일본	사업연속성계획책정가이드라인 (2005.3)	경제산업성	IT사고를 상정한 BCP 책정 수준, 검토사항 규정
	사업연속성계획책정가이드라인(제1판) (2005.8)	내각부 중앙방재회의	지진까지 상정한 BCP이며, 생명안전, 2차 피해 등 규정

- 우리나라도 영국이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재해경감지원법”이라 한다.』이 2007년 7월 19일 법률 제8530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9월에서야 시행규칙이 마련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개선방향

- 보험관리형의 전통적인 리스크관리에서 현대적인 전사적 리스크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의 규격화가 필요
- 경제주체들의 리스크관리 인식의 제고와 추진을 통한 사회전반의 리스크관리 비용감소를 위해 미국, 호주(The Risk Management Standard, AS/NZS 4360-2004), 일본(JIS Q 2001, 리스크마네ジメント시스템構築のための指針) 등과 같은 종합리스크관리규격을 국가차원에서 제정하여 기업들이 활용하도록 해야 함.
- 재해 경감법에 적용되는 재해의 범위가 향후에는 화재를 포함한 모든 재해로까지 확대되어야 함.
  - 현재 우리나라의 재해경감법에서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로만 되어 있어 기업의 사업연속성 리스크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해경감법에 적용되는 재해의 범위가 향후에는 화재를 포함한 모든 재해로까지 확대되어야 함.
- 정부의 지원 대상을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의 지원정책을 받는 기업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어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 경쟁력의 제고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 대상을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 기업들이 지출한 재해경감 활동투자 비용 이외에 보험가입비용도 법인세 공제를 해줄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재해경감지원법 제21조는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기업이 지출한 재경감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안은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출한 재해경감 활동투자 비용 이외에 보험가입비용도 법인세 공제를 해줄 필요성이 있음.

- 이상과 같은 선진국형의 종합리스크관리규격이 마련되게 되는 경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은 크게 증가하고 사회적 비용이나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이러한 정부차원의 기반의 마련과 동시에 손해보험회사들도 일본이나 유럽 손해보험회사들처럼 사업연속성계획(BCP)을 포함한 전사적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할 필요가 있음.

## 6. 도덕적 해이 방지

- 국내 기업들이 생각하는 기업휴지보험 활성화를 위한 우선순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기업의 보험료부담 등의 경제적 요인만 주요요인을 들고 있는 반면 보험회사의 전문가 양성은 가장 후순위이라고 답하고 있음.
- 그러나 보험회사가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전문가의 양성을 통해 기업휴지리스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더욱 많이 축적시키게 되면 가입자들이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등에 있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것을 더 감소시킬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기업휴지보험 금액을 가능하게 하여 높은 보험료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음.
- 미국의 CPCU(Chartered Property Casualty Underwriter), 영국의 CII(The Chartered Insurance Institute)과 같은 전문적인 언더라이터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휴지보험의 보험료산정에 있어 해외 재보험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관행을 탈피하여 보험회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VI. 결 론

- 우리나라에서의 기업휴지보험 역사는 40년이 되어 가지만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상품이나 요율의 변화에 비교하면 다소미흡한 상태에 있으며,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기업휴지보험은 기업들의 니즈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게 상품이 개발되지 못하고 자체적인 요율플랜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기업과 가입하고 있는 기업의 향후 기업휴지보험가입 의향의 차이는 가입하지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의 효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됨.

기업휴지보험 가입기업과 미가입의 인식차

구 분	BI 가입기업	BI 미가입 기업
향후가입 의향	93.3%(제조업 91%)	11.5%(제조업 10.3%)
BI보험 효용	부채비율 : 사고전후 3년간 표준편차 10%이내	150% 이상 증가, 외부 자금 조달 필요
	영업레버리지비율 : 사고 후 비율 증가가 미미	사고 후 300% 이상 증가해 고정비지출 부담가중
	ROE : 감소하지 않고 증가해 투자자 유치 무난, 새로운 사업 확장 가능	100% 이상 급격히 감소해 투자자 외면가능성 증가

- 기업휴지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한 기업과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경영성과는 물론이고 자금운

용 등 재무관리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업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산업구조와 경제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휴지리스크에 대한 측정과 평가가 가능하고 이에 기초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는 통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국내 보험사들은 담보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사업연속관리(BCP) 기준을 도입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손해보험회사들은 기업들의 사업연속성 관리계획에 대해 컨설팅 서비스와 보험 상품을 제공하여 국가의 내재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협력자 역할을 수행해야 함.

# I. 서 론

## 1. 연구목적

기업은 적절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품생산, 판매 등 다양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경영활동 과정에서 기업에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제품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여 매출액 감소와 이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가 수반된다<sup>1)</sup>.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경영활동이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원자재 공급, 조립, 완성, 판매 등으로 분할되면서 다양한 부문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기업 경영의 글로벌화는 이러한 손실의 가능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기업들은 화재, 배상책임, 인적손해 등과 관련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경영활동 중단, 기업평판 하락, 종업원 등의 횡령 등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는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영활동의 중단은 제품생산에 차질이 생겨 곧바로 매출액 감소와 이익축소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요인에 비해 보다 체계적으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리스크관리에 재무적 수단으로 보험제도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이라고 한다. 기업휴지보험은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매출액 감소에 대비한 상품으로 만들어져 현대와 같은 상품으로 발전되어 왔다. 기업휴지보험은 산업혁명으로 기업이란 조직이 생겨나고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그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현대와 같은 상품체제로 발전하기까지 200여년이 걸렸다. 기업휴지보험시장은 선진국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휴업으로 인한 간접손실 리스크를 보험으로 전가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기업휴지보험이 손해보험시장

---

1) 호주의 경우 기업이 주요한 물질적 손해(major material damage)를 입은 경우 피해기업의 71%는 도산(43%는 즉시 재가동 불가, 28%는 3년 이내에 파산)하며 29%만 재가동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federal government all business statistics-following a major material damage loss) ; [www.latrobe.edu.au/aurims/downloads/2008notes/Presentation%20Gerald%20Ewing.ppt](http://www.latrobe.edu.au/aurims/downloads/2008notes/Presentation%20Gerald%20Ewing.ppt)

의 주요시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기업휴지보험의 수요도 미진하며,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휴지보험은 다른 리스크에 비해 재무적 손실 부분을 담보하기 때문에 회계제도가 불투명하고 신뢰성이 낮은 경우 인수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하기 곤란하여 손해사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보험계약자 집단은 매우 크나 선택적인 가입으로 인해 가입건수는 매우 적고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심하며, 상장회사가 아닌 경우 리스크 측정이 어려운 현실 등의 요인으로 인해 보험회사들의 적극적인 상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리스크관리는 과거의 순수리스크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전사적 리스크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개념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에 기업휴지보험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의 수요는 앞으로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가입건수의 증가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증가로 결부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기업휴지보험의 정확한 리스크파악 및 획기적인 상품의 운영을 통해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영업상의 손실에 대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기업휴지보험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업휴지보험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여 향후에 보다 많은 기업들이 기업휴지보험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사업의 연속성의 제고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2. 선행연구

송일(1989)은 일본에서의 이익보험의 보급률은 1987년 기준 6.2%로 프랑스의 20%, 독일의 50%에 비해 크게 낮아 일본 기업들의 보험인식이 크게 낙후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화재보험에 부대하는 특약형태의 상품에서 별도의 독립적인 이익보험상품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제

시하였다.

오해송(1996)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업휴지보험 상품의 변천내용을 정리하고 현재 미국 총수익방식을 근간으로 만든 기업휴지보험특약을 이해하기 위하여 미국의 총수익방식의 상품을 설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山崎頼美(2006)는 전략적 기업경영에 있어 영업중단리스크의 손실 노출단위의 파악 및 분석에 대한 의의를 제시하기 위하여 제약이론(theory of constraint)을 활용했다. 그는 기업시스템의 목적이 현재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라면 총투자나 경비를 절감하여 스루풋(제품을 판매하여 기업에 돌아오는 돈 : 매출액-자재비)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제약이론과 기업휴지보험의 피보험이익이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했고, 기업휴지보험을 기업의 이윤 증대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이론적인 소개와 현황에 대한 단편적인 서술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된 이론적인 내용을 포괄할 뿐 아니라 기업의 전사적 리스크관리와 사업연속성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기업휴지보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 3. 연구방법 및 구성

국내에 기업휴지보험이 도입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손해보험의 국제적 위상이 10위권으로까지 성장하였지만 기업휴지보험은 하나의 보험종목으로서 개념조차 정립되지 못했고 기업들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기여도 역시 일반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기업휴지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업중단리스크에 대한 기업들의 보험가입 활용사례를 분석하고, 기업중단리스크의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기업중단 리스크관리에 있어 조건제약이론(theory of constraints)과 영업레버리지와 관련하여 기업이익의 목표인 적정 이익달성에 기업휴지보험이 활용될 필요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본,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기업휴지보험 현황을 기존문헌, 인터넷 조사를 통해 정리하였으며, 국내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국내 10개 보험회사의 영업부서에 설문지를 의뢰하고 고객으로부터 접수받는 방법과 상장회사 중 496개 업체를 랜덤추출하여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접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기업휴지보험의 가입현황, 가입사유, 미가입 사유, 보험가입의 만족도, 향후 가입의향,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의 회수는 총 73부로 4개 보험회사의 영업부서로부터 56개가 회수되었으며, 우편을 통해 상장회사로부터 17부가 회수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기업휴지보험의 국내 활성화를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I장은 서론으로 구성되었고, 제II장은 기업휴업손해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휴지리스크의 개념과 원인, 국내 기업휴지리스크 규모 추정, 휴지리스크관리에 있어 보험제도의 효용, 기업휴지보험의 특성 등을 기술하였다. 제III장은 미국, 영국, 일본에서 운용중인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상품종류, 보험활용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고, 제IV장에서는 국내 기업휴지보험의 시장 규모를 통계청에 있는 기업들의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를 이용하여 휴업손실 규모와 보험료 규모 등을 추정하였으며, 그동안 국내에서 운영되어 온 기업휴지보험의 상품 체계와 활용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제V장은 기업휴지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장으로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활성화요인을 분석하여 활성화 방향성을 설정하고 상품측면, 보험료부담문제, 마케팅측면, 세제지원 등 정책지원측면에서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제VI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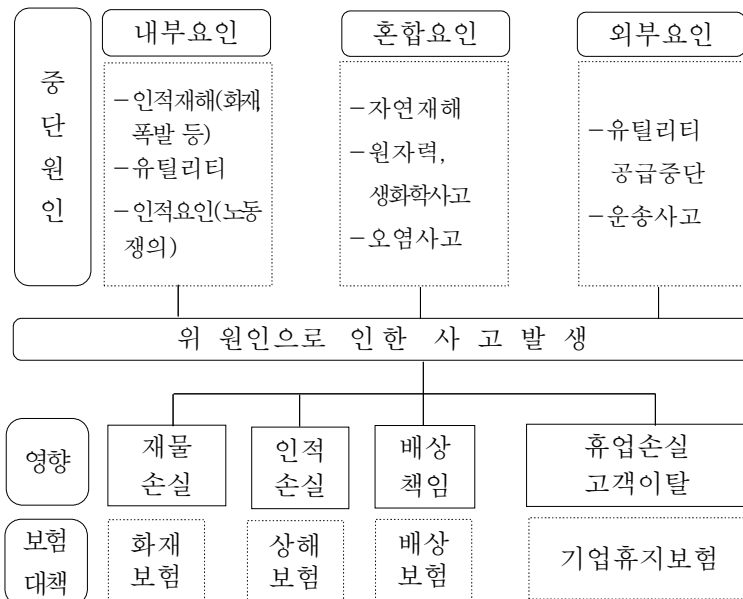
## II. 기업휴지손해보험의 특징 및 리스크관리 역할

### 1. 기업휴지보험의 개념 및 종류

#### 가. 기업휴지보험의 개념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은 국내의 보험업법에 서 정 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은 보험이지만 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해 기업의 순수익의 상실과 지속적으로 나가는 경상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림 II-1> 기업휴지보험의 개념



기업휴지보험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기업휴지보험이 만들어져 발전해 오면서 국가별 특성에 따라 사용되어 온 결과이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이익상실보험(loss of profit) 또는 결과적 손해보험(consequential insurance), 미국의 경우에는 기업휴지 또는 이익보험(business interruption/income insurance)으로 불리며 일본의 경우에는 이익보험(利益保險)으로 불리고 있다.

기업휴지보험의 탄생으로부터 변천되어 온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최초의 기업휴지보험은 결과적 비용과 상실이익을 부분한 1797년 영국의 Minerva Universal사의 보험 상품에서 시작되었고, 1817년에는 Hamburger Generalfeulrkasse사가 임차비용손실을 부대하여 화재보험을 보완하였다. 1821년에는 최초로 시간손실증권(time loss policy) 즉 휴업 하루당 금액을 보상하는 방식이 영국에 도입되었다. 1880년에는 미국 보스턴에 있던 Dalton이라는 대리점이 화재보험에 부대하여 사용 및 점유(use and occupancy)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보험의 운용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1899년에 들어서는 영국의 Ludovig McLellan사가 매출액이 중심이 되는 이익보험(loss of profit)을 도입하였다. 1906년에는 스위스에 영국 이익보험방식의 기업휴지보험이 도입되었으며 1910년 독일에서는 감독당국의 주도로 기계이익보험(machinery business interruption)을 도입했다. 1938년에는 미국에서 총수익방식(gross earning)의 기업휴지보험이 도입되었고, 1939년에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표준기업휴지보험증권이 도입되어 영국의 대표상품으로 운영되었다. 1956년에는 독일에서 독립적인 기업휴지보험이 개발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1986년 미국에서는 ISO가 기업휴지보험 담보방식을 총수익방식에서 현재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익담보방식(business income coverage)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1991년에는 영국 보험협회(ABI)가 기업휴지보험 약관을 제안한 바 있었고, 2000년 이후에는 전자장치에 의한 휴업손실, WTC테러이후 테러공격에 의한 휴업리스크<sup>2)</sup> 등으로 관심이 전환되었다.

2) WTC 테러로 보험금규모는 356억 달러였으며, 이중 재물손해보험금은 105.6억 달러인 것에 비해 기업휴지보험금은 121억 달러나 되었다. 杉野文俊(2007)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다 적극적인 리스크관리를 하기 위하여 운용 리스크(operational risk)까지 포함한 전사적 리스크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를 유도하기 위한 표준규격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사업연속성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를 위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의 사업연속성관리를 위한 재무적인 수단으로써 기업휴지보험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표 II-1> 기업휴지보험 상품의 개발 내역

연 도	상품개발 내용 및 변천 사항
1797	영국 Minerva Universal이 최초로 결과적 비용 및 이익손해를 담보
1817	Hamburger Generalfuerkasse 임대손실을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담보
1821	영국에서 기간손실증권(time loss policy)도입 : 일당 주당 보상방식
1857	프랑스 Chomage사가 화재로 인한 결과적 손실을 화재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로 담보
1880	미국 Dalton보험대리점이 화재 영업손실 담보약관에서 사용 및 점유라는 용어 처음도입
1899	영국 Ludovig McLellan사가 이익보험(loss of profit) 상품개발
1906	스웨덴 영국방식의 보험상품 도입
1910	독일에서 기계휴업보험(machinery business interruption policy) 도입
1938	미국에서 총수익(gross earning)방식 보험 도입
1939	영국(아일랜드) 화재보험 기업휴지보험표준약관 도입
1956	독일 독립적인 화재보험 기업휴지보험 개발
1986	미국 ISO는 총수익방식을 기업이익담보방식(income coverage)으로 변경 권고
1991	영국 ABI는 새로운 기업휴지보험약관을 권고
2000년 이후	전자매체, 글로벌리스크, 테러리스크 등의 신종 리스크(로) 증가로 인해 기업 휴지리스크관리 중요성 증대

자료 : Swiss Re(2004),p.6.

## 나. 간접손해 발생원인

기업은 적절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기업 활동을 한다. 그러나 기업 활동은 기업내부 또는 외부의 요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부분의 기업들의 경우 원재료, 생산, 유통 등의 경영활동이 완전히 분리되는 복잡한 형태의 기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휴지리스크는 기업경영관리나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기업휴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 화재나 폭발, 자연재해, 전기적 등 사고 등으로 인한 기계장치 파괴, 원재료의 소실, 건물 파손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게 존재한다. 그 외의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종업원들의 노동쟁의나 고의 과실 행위에 의거한 생산의 중단 등이 있다. 또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기업휴지를 살펴보면 외부로부터의 전력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외부로부터의 전력공급이 중단<sup>3)</sup>되는 경우와 하청업체로부터 원재료나 부품의 공급을 통해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경우 원재료나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의 재해나 사고로 인해 생산중단 (supply chain risk)<sup>4)</sup>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다.

3) 여수산업단지에서 2008년 5월 3일 발생한 정전사고로 인한 매출액 감소로 손해는 한화석유화학 64억원, 여천NCC가 45억원, 대림산업 9억 원, 코오롱유화 4억 원, 콜롬비안 케미컬즈 코리아 1억 원 등 14개 업체에서 전체 123억 원으로 집계되었다(전남CBS 고영호 기자).

4)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2008년 7월 17일부터 GM대우에 대한 타이어 공급을 중단하여 하루 최대 2,000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희정 기자 yvette@sed.co.kr,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2008.8.21)

<표 II-2> 기업휴지 손해 발생원인

구 분	휴 업 원 인
내 부 적 요 인	자연재해(풍수재, 지진, 설재 등)
	화재, 폭발 등 사고
	전기적 사고
	기계적 사고
	노동쟁의
	종업원 고의, 과실
외 부 적 요 인	전력공급 실패
	원재료 부족 또는 공급 지연
	컴퓨터 바이러스 등 통신문제
	배상책임(생산물배상, 환경배상 등)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휴업 및 폐업 통계를 통해 기업들의 휴업과 폐업의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일정한 기업들이 휴업과 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장의 휴업하는 비율은 매년 1%이상으로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7년의 경우 12만개 공장에서 1407개 공장이 휴업하여 1.15%의 휴업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폐업률은 최근에 들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법인 기준으로 보면 2006년의 경우 42만개 법인 중 3만 7천개 법인이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폐업률 8.84%).

&lt;표 II-3&gt; 국내 기업의 휴업 및 폐업을 추이

(단위 : 개, %)

휴업 공장	연도	2004	2005	2006	2007
	공장수	104,547	110,352	114,196	122,082
	휴업수	1,712	1,656	1,583	1,407
	휴업률	1.64	1.50	1.39	1.15
폐업 법인	연도	2003	2004	2005	2006
	법인수	359,154	372,041	400,398	425,667
	폐업수	41,295	31,868	41,761	37,625
	폐업률	11.50	8.57	10.43	8.84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에서 작성

국내 기업들의 휴폐업의 원인을 알 수 있는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본 연구는 통계청의 휴업 및 폐업의 통계를 이용하여 휴업이나 폐업을 한 기업들 중에서 일정 수의 기업들의 경우 화재, 폭발, 정전 등 내외부의 요인에 의한 기업휴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휴업이나 폐업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기업들의 휴폐업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영국의 조사기관에서 매년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 전 세계 기업들의 휴업원인의 통계를 살펴보면 82%가 직접적인 원인이며 14.8%가 외부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빈도가 높은 휴업원인은 자연재해(natural disaster), 화학약품 범람, 가스누출, 전력공급 등으로 나타나 기업의 휴업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4> 세계 기업들의 휴업원인

휴업원인		2006. 2/4		2007. 1/4	
		회사수	비중(%)	회사수	비중(%)
직접 원인	자연재해	37	16.6	14	23.0
	화재폭발	41	18.4	11	18.0
	수도관파열	3	1.3	0	0.0
	가스누출	35	15.7	5	8.2
	화학약품 범람	21	9.4	14	23.0
	노동쟁의	8	3.6	1	1.6
	IT장치실패	0	0.0	1	1.6
	S/W오류	21	9.4	4	6.6
소계		166	74.4	50	82.0
간접 원인	통신실패	9	4.0	3	4.9
	전력공급	28	12.6	4	6.6
	바이러스	2	0.9	0	0.0
	폭과위협	12	5.4	2	3.3
	소계	51	22.9	9	14.8
기 타 요 인		6	2.7	2	3.3
합 계		223	100.0	61	100.0

자료: Thin Ice, *the continuous survey of business interruptions*([http://www.glenabbot.co.uk/non\\_htdocs/thin\\_ice/thin\\_ice\\_q12007.pdf](http://www.glenabbot.co.uk/non_htdocs/thin_ice/thin_ice_q12007.pdf))

가. 간접손해보험의 종류

1) 사고발생원인의 기업 내외부 존재 여부

일반적으로 보험은 유형의 물체에 화재 등의 손인(peril)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직접손해보험(direct insurance)과 화재 등이 발생해 설비 등이 파손됨으로써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해 상실된 영업수익을 담보하는 간접손해보험(indirect insurance, consequential loss insurance)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업휴지보험(BI : business insurance)은 후자의 범주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서 기업휴지보험은 화재, 폭발 등에 의해 건물 또는 기계장치 등이 손실 또는 파손으로 된 결과로 인해 또 다른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보상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혼용으로 인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간접손해보험을 기업휴지보험으로 통일하여 부르기로 한다. 기업휴지보험은 상품역사의 길이만큼이나 복잡다기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기업휴지의 원인, 발생장소, 보상할 때의 시간적 개념 존재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휴지 손해가 기업내부에서 야기된 것인지 외부에서 제공된 것인지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다. 전자의 경우는 흔히 말하는 기업휴지보험을 지칭하며, 후자의 경우와 같이 기업외부의 요인 즉 원재료 공급업체의 사고로 인해 공급이 중단되거나, 전기나 가스 등 유틸리티 시설의 문제로 인해 생산 가동이 중단되어 발생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우발적 기업휴지보험(CBI : contingent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이라고 한다.

## 2) 시간적 요소 존재 여부

두 번째 방법은 기업휴지로 인한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 시간적 요소가 개입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다. 기업휴지보험에서 기업휴지손해 보상시 보상기간, 혹은 주당, 월간, 연간 등 시간적 요소 손실(time element loss)을 담보하는 보험이 있는데 일반적인 기업 휴지보험과 우발적 기업휴지보험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에 시간적 요소와 관계없는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는 임대 또는 임대비용보험, 감가상각보험, 날씨보험(weather insurance) 등이 있다.

## 3) 추가비용보험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보험으로서 추가비용보험이 있다. 추가비용보험(extra expense insurance)은 통상의 기업휴지 보험과 다른 개념으로 계약자의 구내(premise)에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설비장치 등을 임대차하는데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동 보험의 주요 계약자로는 신문사, 은행, 공립학교, 전기·수도·가스 및 기차 서비스 조직 등이 있다.

## 2. 기업휴지보험의 특징

### 가. 영미식 상품 국제적으로 통용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업휴지보험은 크게 영국식상품과 미국식상품의 두 가지 형태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휴지보험이 영국식과 미국식 두 가지 형태의 상품으로 표준화된 배경에는 기업휴지보험이 주로 물질적이고 직접적인 담보위험의 사고가 아니라 간접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상품으로 담보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적게 존재하고, 인수계약에 대한 정확한 리스크측정과 보험가격 산정이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영국식과 미국식 상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5> 영국식과 미국식 기업휴지보험의 주요 특징

	영 국 식	미 국 식
약관운영	재물손해약관과 분리 운영	재물손해약관에 첨부
담보범위/ 보험보호	상업적 운영 기업 (commercial operation)	기술적 운영기업 (technical operation) : (완성품 재고상품 제외)
이익손실결과로 시장의 손실	보상기간동안 보상	보상하지 않음
보험가입금액	총이익(고정비와 영업이익) *급여는 분리담보	기업이익(고정비와 영업이익) *급여(wage)는 분리담보 *약정부보비율(coinsurance)적용
보상한도액	보상기간(통상 12개월) *면책기간 없음	약정부보비율 *보상기간 제한 없음, 표준면책기간 72 시간
보험요율	화재보험료× 조정계수	화재보험료×조정계수(약정부보비율)
보험료	총이익×보험요율	보험가입금액×보험요율
보상원칙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태로 복구	수리기간동안 생산 손실
기타	재물손해담보 조건 (material damage provision)	

자료 : Swiss Re(2004),p.33.

## 나. 보험의 목적

통상적으로 보험의 목적은 보험계약의 부보대상이 된다. 간접손실보험의 목적은 일반적인 보험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 일반 보험의 목적은 보험계약에 부보되는 유형이 실체인 것에 비해 간접손실보험은 무형의 현금흐름이 목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손해보험인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의 목적은 보험계약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건물, 기계설비장치,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의 유형의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이 된다.

그러나 간접손실보험에서는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보험의 목적에서 화재 등이 생긴 경우 영업중단으로 매출액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 총이익의 감소되는 것이 부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의 목적을 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다. 보험계약의 목적

영업손익(net profit)과 고정비(standing charge)의 합인 손익 즉 총이익(gross profit)이 기업휴지보험 계약의 목적에 해당되며 영업외의 수익<sup>5)</sup>은 보험계약의 목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기업휴지보험은 기업의 영업수익력을 담보하는 보험의 기능을 수행한다.

기업휴지보험계약의 목적인 영업손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영업경비를 차감한 것이 되며, 또한 매출총이익에서 영업경비<sup>6)</sup>를 차감한 것과 동일하다. 영업손익을 영업경비에 대해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해하여 다시 정리해 보면,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하거나 고정비에 영업손익을 합한 것이 총이익(gross profit)이 된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text{매출액} - (\text{매출원가} + \text{영업경비}) = \text{영업손익}(\text{net profit})$$

$$\text{매출총이익} - \text{영업경비} = \text{영업손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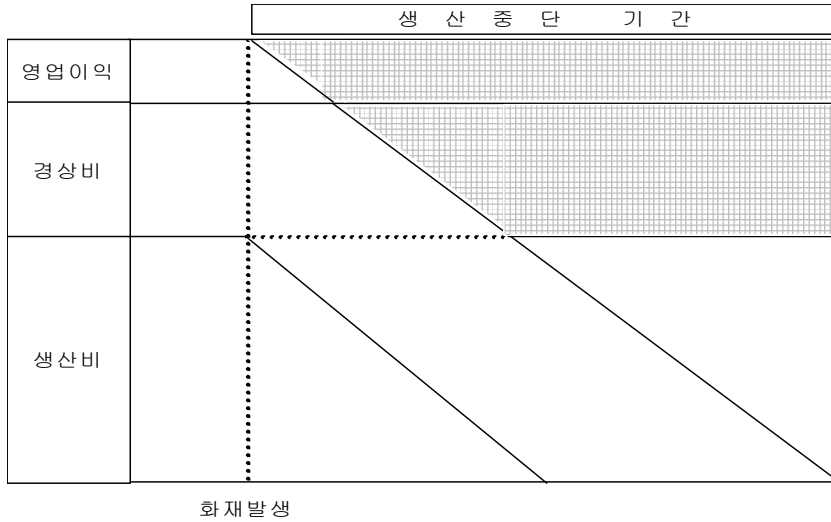
5)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유가증권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 매각이익 및 평가이익 등 기업의 영업활동이외의 활동으로 얻어진 수익을 말한다.

6) 영업경비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합임

$$\text{매출액} - (\text{변동비} + \text{고정비}) = \text{영업손익}$$

$$\text{매출액} - \text{변동비} = \text{고정비} + \text{영업손익} = \text{총이익(gross profit)}$$

<그림 II-2> 기업휴지보험계약의 보험 목적(총이익)



#### 라. 보상하는 손해

일반 재물보험과는 달리 기업휴지보험 등의 간접손실보험은 보상하는 손해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의 목적물이 존재하는 장소와 시간에 있어서의 가치에 대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준다. 반면에 간접손해보험은 약관에 담보하는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해 생긴 영업이익(net profit)과 휴지기간 동안 기업이 계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상비(standing charge), 보험사고시 기업휴지손해를 경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상한다.

<표 II-6> 간접손실보험의 손해액 산출 예

손해액 산출 항목 및 절차	금 액
보험사고가 없는 경우 통상 매출액	1,000,000
- 사고 후 매출액(actual turnover)	500,000
= 손실 매출액(lost turnover)	500,000
- 변동비(variable cost)	300,000
= 손실 총이익(gross profit lost)	200,000
+ 손해예방비용(loss minimization costs)	100,000
- 절감 고정비(fixed cost saved)	50,000
= 기업휴지손해액(Business Interruption loss)	250,000

마. 보험가입금액(total sum insured amount)

기업휴지보험에서 보험가입금액은 보험료를 결정하거나 보험회사의 지급한도로써의 기능을 하며 비례보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이다.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은 영국식인 총이익방식(gross profit), 가산방식 또는 차액방식(difference basis)과 미국식인 총수익 방식이 있다.

<표 II-7> 기업휴지보험의 보험가입금액 결정방식

구 분	영 국 식	미 국 식
산출항목	총이익	총수익
산출방식	<차액방식> 매출액 + 기말재고(원재료, 재공품, 제품) - 기초재고 - 비부보변동비	순판매액 - 원재료 및 소모품의 순비용
	<가산방식> 영업이익 + 부보경상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경비)	손실가능총수익= 총수익 - 변동비

영국식 보험가입금액 결정방식인 가산방식은 앞에서 기업휴지보험의 보험계약의 목적인 총이익을 살펴 본 바와 같이 고정비에서 영업손익을 합한 금

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차액방식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는 것으로 두 방법을 통해 산출한 금액은 모두 동일하다. 한편 미국식인 총수익 방식에서 보험가입금액은 총수익에서 기업휴지기간 중 계속 지출할 필요가 없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총수익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손실가능총수익이 보험가입 금액이 된다.

### 3. 기업휴지보험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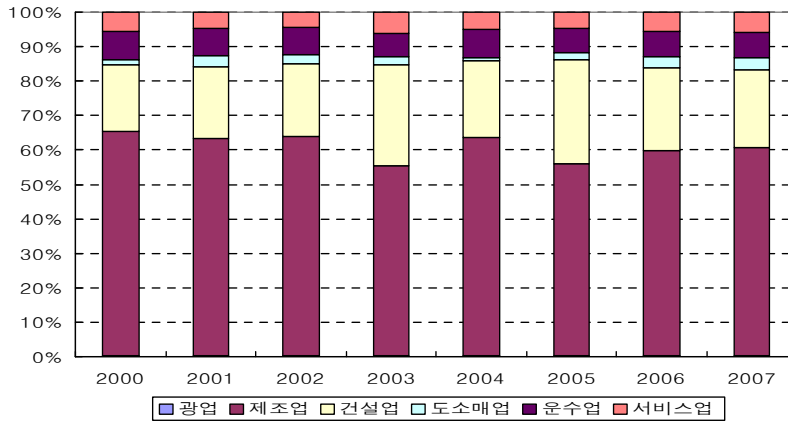
#### 가. 휴업손실 리스크 규모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 규모는 매년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휴업발생 손해액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화재 등으로 인한 휴업손실규모를 개략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기업총량의 산업별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산업별 휴업손실규모를 추정하였다.

$$\begin{aligned} \text{기업휴업손실액} &= \text{총매출액} - (\text{대손상각액} + \text{현금할인액}) \\ &= \text{순매출액} - \text{재고제품증가액} - \text{제품판매가액(원부자재비 등)} \end{aligned}$$

국내 기업들이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해 1년간 동안 휴업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휴업손실 규모를 추정하여 보면 2007년 기준 산업 전체로 595조 1,100 억원으로 나타났고, 연평균 8.7%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업별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광업은 3.1%씩 감소하는 반면에 다른 산업의 휴업손실 가액은 증가하고 있어 산업구조의 변화와 동조하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 국내 기업들의 휴업손실규모를 산업별 비중으로 보면 광업, 제조업은 감소하고 있지만 건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의 휴업손실액 규모는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3> 업종별 휴업손실액의 비중 추이



<표 11-8> 국내 기업의 휴업손해액 규모 추정결과

(단위 : 천억원)

업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광업	12.2	11.7	11.6	8.2	11.1	11.0	10.7	9.5	
제조업	소계	1,984.6	1,934.0	2,269.2	1,689.9	2,888.1	3,050.4	3,199.2	3,607.9
	대기업	1,247.5	1,210.5	1,405.3	964.6	1,866.5	1,785.5	1,873.3	2,111.6
	중소기업	736.3	723.2	862.2	725.9	1,023.9	1,264.4	1,325.8	1,496.3
	수출업	768.5	727.0	772.6	560.9	1,392.9	1,373.3	1,564.9	1,604.0
	내수업	1,215.6	1,205.2	1,496.1	1,148.9	1,494.7	1,675.9	1,916.4	2,002.0
	중화학	1,484.4	1,427.7	1,735.6	1,185.9	2,305.7	2,398.5	2,819.1	2,898.9
	경공업	498.4	503.3	531.6	509.9	578.4	645.1	652.8	699.3
건설업	584.2	634.1	751.7	894.3	1,013.7	1,639.0	1,282.2	1,339.9	
도소매업	51.6	103.1	91.7	72.2	52.9	115.8	171.5	213.6	
운수업	241.7	242.6	288.3	203.1	369.0	386.8	389.2	422.5	
서비스업	174.0	141.9	154.0	191.5	226.7	248.9	300.3	357.6	
산업 계	3,048.3	3,067.4	3,566.6	3,059.3	4,561.5	5,451.7	5,353.1	5,951.1	

앞에서는 기업들의 휴업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손실액을 추정하였지만 실제 휴업기간은 1년까지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1년 보다 더 적은 기간으로 기업들의 휴업기간을 추정하여 보았을 때, 국내기업들이 1개월 휴업하는 경우 기업휴지보험의 손해액은 2007년 기준 49조 5,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광업은 800억원, 제조업은 30조 700억원, 도소매업은 1조 7,800억원, 서비스업은 2조 9,800억원의 휴업손해액이 발생한다. 이러한 통계는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과 변동비의 지출이 월평균 균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다.

<표 II-9> 국내 기업들의 휴업기간별 휴업손실액 규모

(단위 : 천억원)

구 분	1년	10개월	8개월	5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광업	9.5	7.9	6.3	4.0	2.4	1.6	0.8
제조업	3,607.9	3,006.6	2,405.3	1,503.3	902.0	601.3	300.7
건설업	1,339.9	1,116.6	893.3	558.3	335.0	223.3	111.7
도소매업	213.6	178.0	142.4	89.0	53.4	35.6	17.8
운수업	422.5	352.1	281.7	176.1	105.6	70.4	35.2
서비스업	357.6	298.0	238.4	149.0	89.4	59.6	29.8
산업 계	5,951.1	4,959.3	3,967.4	2,479.6	1,487.8	991.9	495.9

#### 나. 사업연속성관리의 중요한 요소

산업구조가 1차 산업이 중심이 되었던 시기와는 달리 산업혁명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제조업의 생산라인이 분화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에 힘입어 생산라인의 분업화가 더욱 진전되어 왔다. 나아가 기업경영의 글로벌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국제적 분업이 증가하고 여러 국가들 사이의 원료나 부품의 상호의존도 심화로 경영활동에서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 통합이 복잡하게 일어남에 따라 재해나 사고로 인해 기업에서 어느 한 부분의 생산라인이 멈추어 경영활동이 중단될 경우 이는 바로

기업간 경쟁에서의 도태와 시장에서의 지위 상실을 초래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복잡다기화 된 생산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적기에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관리체제의 구축을 기업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들은 원재료 등의 원활한 공급을 관리하기 위한 공급체인관리(supply chain management)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업이 내외부적인 요인에 의거 사업의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사업연속성관리(BCM: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와 종합적인 리스크관리(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방법에서 핵심적인 복구수단으로 기업휴지보험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기업휴지보험이 효과적인 리스크관리 수단으로써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약조건이론(TOC: Theory of Constraints)과 기업휴지보험의 기능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살펴봄으로써 기업경영의 목표인 적정 이익달성과 사업연속성관리에 기업휴지보험이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약조건이론은 기업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제약조건을 찾아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기법으로 이에 의하면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스루풋(T : Throughput)의 증대, 총 투자의 절감, 경비절감 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여기서 기업의 목표를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스루풋의 증가가 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스루풋과 기업휴지보험이 담보하는 총이익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스루풋은 기업이 제품을 판매하여 기업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정의되며, 이는 매출액(T/O)에서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스루풋 = 매출액(T/O) - 변동비(VC))이 된다.

한편 기업휴지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총이익(gross profit)이 되는데 이 또한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것이 되어 스루풋과 동일한 개념이 된다. 따라서

7) 사업연속성관리(BCM)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지휘명령체통의 명확화, 백업시스템의 구축, 백업오피스나 대체요원의 확보, 무사(無事)여부 확인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정비하여 불측의 사태가 발생하여 업무가 중단된 경우 중요한 업무를 목표 복구기간내에 정비하여 경쟁사로의 고객이탈, 시장점유율이나 기업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를 말한다.杉野文俊,(2007),p.68

“TOC의 스루풋(T)= 기업휴지보험의 보험가입금액(TSI)”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이러한 관계를 다시 원가회계를 적용하여 나타내 보면 다음의 식과 같다.

$$\begin{aligned} \text{영업이익(NP)} &= \text{매출액(T/O)} - \text{영업비용(OE)} \\ &= \text{매출액(T/O)} - \text{변동비(VC)} - \text{고정비(SC)} \\ &= \text{스루풋(T)} - \text{고정비(SC)} \end{aligned}$$

기업의 영업이익(net profit)은 스루풋에서 영업비용(고정비)을 차감한 것이 된다. 위 식으로부터 고정비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스루풋은 영업이익과 고정비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는 영업이익과 고정비의 합인 기업휴지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동일하게 됨을 알 수 있다.

$$\begin{aligned} \text{스루풋(T)} &= \text{영업이익(NP)} + \text{고정비(SC)} \\ &= \text{기업휴지보험의 보험가입금액(TSI)} \end{aligned}$$

이와 같이 스루풋이 기업휴지보험에 부보되는 총이익과 동일한 개념이라는 사실은 기업경영의 목표인 적정 이익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기업휴지보험이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 주고 있다.

#### 다. 영업리스크관리에 필요

기업휴지보험은 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에 기대되는 수익이 화재나 기계적 사고로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 그 손해와 사고를 당한 재산을 복구하여 조업을 재개할 때까지 필요한 영업이익의 손실과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경상비에 대한 손실을 담보해 주는 보험이다.

기업휴지보험의 가입항목이 되는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영업비용(매출원가 또는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잔액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 항목은 일반적으로 보험가입대상의 영업이익이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업휴지보험이 보상하는

항목은 1) 영업이익, 2)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제비용 중 휴업 중에도 계속 지급하게 되는 비용, 3)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중 휴업 중에도 계속 지급하게 되는 비용 등이다.

기업휴지보험은 일반적으로 손해로 인해 잃게 되는 영업이익 및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경상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므로 이러한 사실은 영업레버리지(DOL: degree of operating leverage)가 커서 매출액이 감소 하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의 변화폭이 더 커지게 되는 경우 재해나 사고에 따르는 기업휴지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게 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또 실제로 기업휴지손실은 영업레버리지가 큰 경우 증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기업휴지로 인한 손실의 규모는 기업 매출액의 변화가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영업위험(operating risk)의 정도를 나타내는 영업레버리지의 크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영업레버리지를 통해 기업휴지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대략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영업레버리지 분석은 고정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부담해야 하는 고정영업비용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으로 기업휴지로 인한 손실은 일반적으로 영업레버리지가 클수록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업휴지손실에 의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피해의 정도는 그 기업이 얼마나 큰 영업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통해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영업레버리지의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국가통계포털의 기업경영분석에 수록된 결산회기 말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에서 추출하였으며, 이를 가공하여 업종별 영업레버리지를 산출하였다. 영업레버리지는 매출액의 증가율에 대한 영업이익의 증가율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text{영업레버리지(DOL)} = \frac{\text{영업이익증가율}}{\text{매출액증가율}} = \frac{\Delta EBIT / EBIT}{\Delta Q / Q}$$

△EBIT: 영업이익 증가분

EBIT: 영업이익

△Q: 판매량의 증가분

Q: 판매량

위 식에서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영업비와 고정영업비를 차감한 것으로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영업이익의 변화 또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BIT = Q(P-V) - FC$$

$$\Delta EBIT = \Delta Q (P-V)$$

Q= 판매량

P= 단위당 판매가액

V= 단위당 변동비

FC= 고정비용

위의 두 식을 앞의 식에 대입하여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text{영업레버리지(DOL)} = \frac{Q(P-V)}{Q(P-V)-FC} = \frac{(EBIT_t + FC_t)}{EBIT_t}$$

EBIT<sub>t</sub> : t년도의 i기업 영업이익

FC<sub>t</sub> : t년도의 i기업 영업고정비용

영업레버리지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영업고정비에 의한 추정방법과 회귀분석에 의한 두 가지 추정방법이 있다. 그러나 회귀모형에 의해 산출한 영업레버리지는 특정년도에서 개별 기업이 부담하는 영업레버리지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분석 기간 동안에 기업이 부담한 평균적인 영업레버리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특정년도에 기업들이 부담하는 영업레버리지 수준을 보여주는 영업고정비에 의한 추정방법을 통해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영업레버리지를 측정하였다.

영업레버리지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2000부터 2007년까지 국가통계포털의 기업경영분석에 수록된 결산회기 말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에서 추출하였으며, 이를 가공하여 기업휴지보험과 관련되는 산업(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업종별 영업레버리지 수치를 산출하였다. 계산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업이익(EBIT)의 계산은 손익계산서 상에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gross profit)에서 판매관리비를 차감하여 계산하였으며, 고정비용(FC)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서 사용한 방법을 아용하여 판매관리비, 노무비의 1/2, 제조경비의 합에서 외주가공비를 차감한 후 영업외 비용과 재고조정중의 가공비를 합하여 계산하였다. 이 중에서 제고조정중의 가공비는 (매출원가 - 당기 총제조비용) × (노무비의 1/2 + 제조경비 - 외주가공비) / 당기 총제조비용의 계산과정을 통해 산출하였다.

영업레버리지 수치가 높다는 사실은 매출액의 증가율보다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높아 매출액이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반대로 매출액이 감소하면 영업이익이 급속하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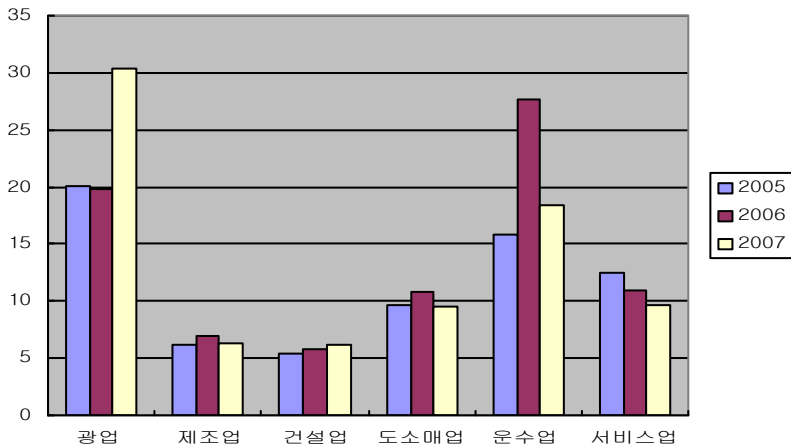
이는 재해나 사고로 인한 기업휴지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높은 영업레버리지는 사고 기업의 손실 폭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데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큰 사고가 발생하면 고가의 고정자산인 생산설비 또는 용역설비의 복구기간이 길어지고 그에 따른 고정비용의 발생으로 기업휴지에 따른 손해가 기업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경우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

<표 II-10> 산업별 영업레버리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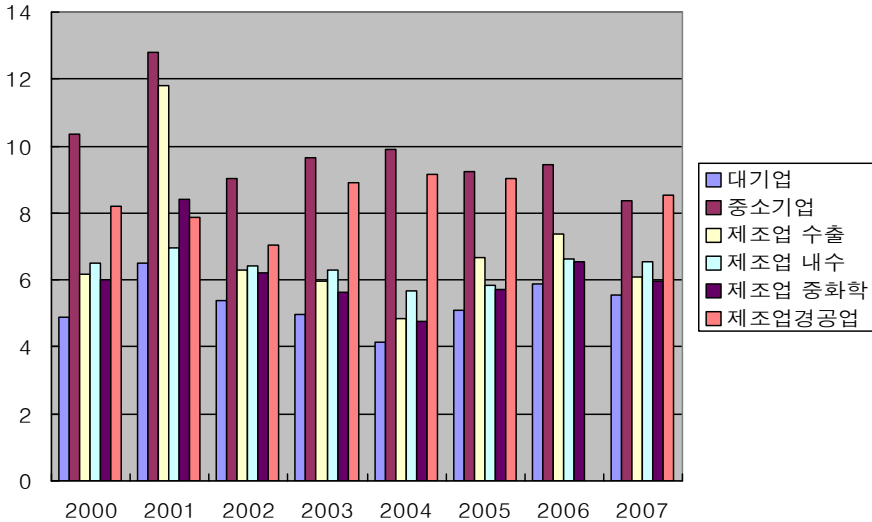
업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광업	-57.98	-30.34	52.92	-31.21	-55.43	20.05	19.76	30.39
제조업	계	6.37	8.27	6.39	6.15	5.25	6.19	6.34
	대기업	4.90	6.51	5.37	4.98	4.15	5.09	5.88
	중소기업	10.37	12.80	9.01	9.66	9.91	9.24	9.44
	수출업	6.18	11.82	6.30	5.98	4.85	6.65	7.36
	내수업	6.51	6.94	6.44	6.28	5.68	5.84	6.61
	중화학	5.99	8.39	6.23	5.65	4.75	5.72	6.56
	경공업	8.20	7.88	7.03	8.90	9.14	9.04	8.87
건설업	15.00	10.22	8.94	6.71	6.78	5.44	5.82	6.15
도소매업	16.43	11.80	10.39	9.26	9.43	9.70	10.81	9.55
운수업	18.34	24.42	34.05	18.97	12.96	15.83	27.62	18.39
서비스업	14.05	17.34	26.64	21.30	14.75	12.48	10.90	9.67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기업경영분석 각 연도별 자료)

<그림 II-4> 산업별 영업레버리지 추이 (2005-2007)



&lt;그림 11-5&gt; 제조업 세분류별 영업레버리지



영업레버리지에 관한 위의 그림을 보면, 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의 영업레버리지가 대기업의 영업레버리지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금이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한다 하더라도 가입해야 할 금액의 일부분만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휴지손해가 발생할 때 더 큰 경영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운수업,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에 있어 영업레버리지는 제조업보다 더 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업종에 종사자들의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가입은 매우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화재나 기계의 고장과 같은 사고를 당한 중소기업들은 사고발생 후 기업휴지로 인한 피해로부터 원상회복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 가입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소매업, 도매상, 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화재·낙뢰·파열·폭발 등의 사고로 영업을 휴업 또는 저해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휴업손실에 대한 간

접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의 기업휴지보험을 간소화한 점포휴업보험(store business interruption)과 같은 기업휴지보험 상품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자인 관계로 기업휴지보험의 가입에 따르는 많은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고, 또 기업휴지와 관련 사고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등의 이유로 기업휴지로 인한 영업중단에 대한 손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미루고 있는 실정에 있다.

모든 기업은 재물의 손해에 대한 위험 이상으로 기업휴지손해에 대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건설업, 서비스업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 큰 사고가 발생하면 생산 또는 용역설비가 고가품이고 복구기간이 길어져 기업휴지에 따른 손해가 기업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경우도 흔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기업 휴지보험을 활용하여 화재보험 등 전통적인 보험상품만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기업휴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휴지보험의 가입 등의 방법을 통해 영업부문의 위험을 고려하는 전략적인 리스크관리 체제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선진국의 경우 경영상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통제투명성법(KonKog: Corporate Control and Transparency Act 1998)<sup>8)</sup>에 의거 모든 상장기업은 기업의 위기상황에 관한 조기경보 및 사전예방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한편, 전반적으로 제조업 내수부문이나 경공업 부문의 영업레버리지가 제조업 중화학부문의 영업레버리지보다 높게 산출되어 경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정비용이 더 크게 들어가는 설비장치를 사용하는 중화학공업이 영업레버리지가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배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영업레버리지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영업고정비용 그 자체의 크기보다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영업고정비용의 상대적인 크기이므로 제조업에서 중화학공업이 경공업이나 내수관련 업종보다 유형고정자산을 더 크게 보유하더라도 충분한 크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유지할 수

8) Munich Re(2008), p.6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별로 영업레버리지가 높은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에서는 철도, 항공기 등의 운송장비 제조업(62.35), 선박 및 보트 건조업(65.11),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27.12) 등 생산을 위해 고가의 설비장치가 필요한 업종에서 영업레버리지가 높은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 도소매업, 운송업 등 비제조업 부문에서는 종합소매업(43.52), 일반소매업(30.27), 컴퓨터 관련 운용업(27.58) 등 주로 소매업과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산업에서의 영업레버리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 산업별 영업레버리지가 높은 업종 순위(2007년 기준)

제 조 업		비 제 조 업	
가방 핸드백 및 가죽제품	24.17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9.14
섬유제품	25.97	도로화물 운송업	21.84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27.12	컴퓨터 관련 운용업	27.58
선박 및 보트 건조업	65.11	일반소매업(통신 판매업 제외)	30.27
철도, 항공 및 운송장비	62.35	종합소매업(백화점 제외)	43.52

### Ⅲ. 주요국의 기업휴지보험 운영현황

#### 1. 미 국

##### 가. 시장개요

미국에서 기업휴지보험은 1880년 Dalton대리점이 화재로 인한 영업손실 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1938년에 들어 총수익방식이 도입되어 영국식 이익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상품으로 발전하였다. 현재와 같은 기업휴지보험 상품으로의 발전은 1986년에 미국 최대 손해보험요율 산출기관인 ISO(Insurance Service Office)가 표준적인 기업이익보험(business income insurance)을 개발하여 보급하면서 부터이다.

미국에서 현재 기업휴지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상품은 독립된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사업자 종합보험(business owner's policy), 상업용 재물보험(commercial property policy)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상업재물보험은 비교적 영업규모가 큰 기업들이 사용하는 약관이며, 사업자 종합보험은 규모가 작은 소규모 기업들이 사용하는 상품체계로 되어 있다.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기업휴지를 담보하고 있는 보험종목의 실적을 보면 단순한 화재보험이나 화재계열(fire allied lines)보험은 매년 1.1% 감소하여 전체시장의 3.6%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에 사업자종합보험과 상업재물보험이 속한 상업종합보험(commercial multiple peril insurance)은 매년 5%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전체 손해보험 시장의 7%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의 손해보험은 화재와 같은 단일위험담보 보험시장보다는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종합보험화 된 시장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종합보험화 된 보험시장이 미국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이유는 기업들이 다양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lt;표 III-1&gt; 미국 기업휴지담보종목의 보유보험료 실적 추이

(단위 : 백만달러,%)

종 목	2003	2004	2005	2006	구성비	CAGR
자동차보험	176,763	184,352	186,383	187,098	41.8	1.91
화재보험	16,550	14,035	13,882	15,954	3.6	-1.22
해상보험	12,077	12,947	13,184	14,338	3.2	5.89
상업종합	27,430	29,074	29,695	31,848	7.1	5.10
산재보험	32,919	36,734	39,724	41,825	9.3	8.31
배상책임	38,875	43,153	42,924	45,843	10.2	5.65
보증 기타	102,902	105,446	101,833	110,855	24.8	2.51
합 계	407,516	425,741	427,625	447,761	100.0	3.19

자료 : III(2008),pp.46-47에서 종목별 합계를 하였다.

## 나. 보험상품

### 1) 기업휴지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

기업휴지보험이 담보하는 손해는 사업의 중단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취득할 수 있었던 순이익의 감소분과 그 기간 동안 계속 발생하는 고정비용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사업을 복구하는데 요구되는 정상적인 비용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extra expense), 정부가 재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업장으로의 접근을 거부하는 공권력(civil authority), 건물의 변경과 신축(alternations and new buildings), 확장된 사업수입(extended business income) 등의 네 가지 추가위험담보와 신규취득 영역(newly acquired locations)의 한 가지 확장담보를 포함하고 있다.

네 가지 추가 위험담보의 내용 중 추가비용(extra expense)이 Business Income(Without Extra Expense) Coverage Form에서는 사업수입손실을 감소시키는 비용(expenses to reduce loss)으로 대체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BI의 두 가지 양식에서 추가담보와 확장담보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Business Income Coverage Form(BIC)에서는 담보된 건물의 외부에서 일어나

는 원인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off-premise service interruption), 완성품(finished stock)의 파괴에서 오는 손실, 라디오나 텔레비전 안테나(antenna)의 파손에서 오는 피해, 사업의 복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파업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복구의 지연(delay)으로 인한 손실, 복구의 기간 후 일어나는 계약, 리스, 면허 등의 취소와 같은 회사의 특권의 감소(loss of privilege)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으로 인한 손실 등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사업 손실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other consequential losses)이 된다면 이는 보상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2) 보험상품

### 가) 기업휴지보험

기업휴지보험은 화재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초래된 피해를 복구하는 동안에 사업 중단으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상실(actual loss of business income)과 특별비용(extra expense)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영업이익의 손실액은 사고로 인한 휴업이 없었더라면 얻었을 세전 순이익(Net income)과 사업 중단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용(continuing normal expenses)이 해당된다. 고정비용에는 급여가 포함되지만 종업원이 아닌 최고경영자와 부서장과 계약직원의 임금 등은 제외된다. 대부분의 기업휴지보험(BI) 상품은 사업수입 손실(business income loss)과 추가비용(extra expense)이 사업수입의 손실을 줄이지 않더라도 추가비용의 손실을 보상하는 Business Income(and Extra Expense) Coverage Form과 사업수입 손실과 추가비용이 사업수입손실을 감소시키는 범위 안에서 추가비용을 보상하는 Business Income(Without Extra Expense) Coverage Form의 두 가지의 ISO(Insurance Service Office) 양식 중 하나의 형태로 공급된다.

미국에서 기업휴지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대부분 보험회사의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BI Worksheet를 통해 기업 스스로 평가해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트래블러사(Travelers)의 경우에는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의 가입금액을 산업별로 약식으로 산출할 수 있는 기준퍼센트(benchmark percent)를 제시

하고 있다. 기준 퍼센트는 연간수익액(total annual revenue)에서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추정하는 비율로, 이에 의하면 의류산업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의 48%, 병원·간병시설은 85%를 기업휴지보험의 가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표 III-2> 미국 트래블러사의 기업휴지 벤치마크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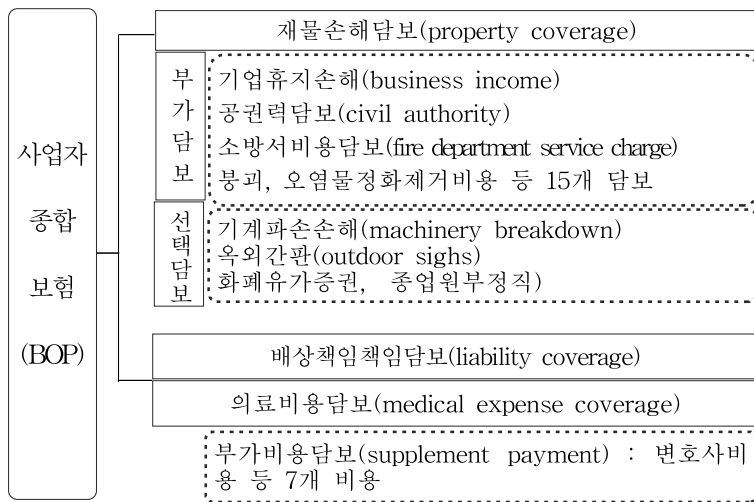
제 조 업		비 제 조 업	
의류	48	수선업	50
컴퓨터 및 전자	63	예술 레크레이션, 카지노	80
전기장치	69	건물재료 및 가든 시설	45
금속제품	49	음식료업	60
식품업	49	교육서비스업	80
가구업	49	가구업	57
기계류	54	상품가게	41
광물업	49	건강 개인간병 가게	32
자동차산업	38	병원요양시설	85
제지업	49	자동차딜러	23
플라스틱 및 고무업	44	인쇄업	75
인쇄업	59	스포츠상품	53
방직업	42	기타	30-35
양조업	68		
목재업	41		
기타업	40-50		

나) 사업자 종합보험

사업자 종합보험(BOP : Business Owners policy)은 개별보험회사가 개발한 상품이 아니라 1976년에 ISO가 개발한 보다 경쟁적인 상품이다. 그 후에는 미국보험서비스협회(AAIS)도 이와 유사한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였고, 개별 회사들도 이들 요율산출서비스기관이 제공한 상품을 기초로하여 변형된 형태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자종합보험은 단일위험을 제공하는 한계를 넘어 종합담보(all

risk package policy)방식으로 개발한 상품 중의 하나로 현재 미국에서는 가정종합보험(Homeowners Policy), 사업자종합보험(BOP), 상업종합보험(Commercial Property Policy), 농장종합보험(Farm owners policy) 등이 있다. 사업자종합보험의 담보위험은 재산손해와 사업체 경영상에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하나의 증권으로 담보하는데 이를 표시한 것이 다음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III-1> 사업자종합보험의 기업휴지담보체계



자료 : Fliter · Trupin(2004), chapter 11에서 정리하였음.

사업자종합보험의 가입업체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small sized business)이나 건물이 해당되기 때문에 동 보험을 소기업종합보험(small business owners policy)이라고도 하며, 또 이들 보험의 가입기업체들이 주로 중요도로(main street)옆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업체라는 점에서 “중요도로 기업체 보험(main street business insurance)”이라고도 부르고 있다<sup>9)</sup>.

사업자종합보험의 가입대상 목적물은 건축물의 이용형태(아파트, 사무실) 또는 건축물의 외형(높이, 바닥면적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어 있다. 가입대

9) Gerge Krauss, *Businessowners Policy manual; Student Workbook*, INVEST, 2004, p.1

상 목적물은 용도측면에서는 소매상, 도매상, 서비스업체, 건축 중인 건물이나 개인동산, 아파트나 콘도건물, 사무실건물(6층 이하, 바닥면적 10만 평방피트 이하), 제빵업, 장례업, 도색업, 수선업 등과 같은 상업/서비스/가공업체(총 바닥면적 25000평방피트이하 혹은 연간매출액 300만 달러 이하), 3층 이하로 바나 라운지가 없는 모텔, 계약 서비스업(목수서비스, 전기수리업, 도색업, 배관공), 주유 서비스매출이 연매출의 75%미만인 편의점으로 자동차수리서비스, 레스토랑이 없는 경우, 레스토랑(카페, 샌드위치가게, 약국, 피자가게 등)으로 패스트푸드의 바닥면적이 7500평방피트이하인 경우, 세탁소, 소매매출액의 25%이하인 도매업으로 총 바닥면적의 25%이상이 대중에게 공개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외의 건물은 모두 상업용 종합보험(CPP)의 대상이 된다.

동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업체로는 자동차사업, 바 등 대규모 레스토랑, 제조업체, 유흥장소, 금융기관 등이 있다<sup>10)</sup>. 사업자종합보험에서 기업휴지담보는 재산손해를 담보하는 위험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휴업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하는 개념이다.

기업휴지손해는 재물손해와 더불어 자동적으로 담보되는 형태(additional coverage)를 띠고 있어 부가적인 보험료를 내지 않고 기본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다. 사업자종합보험에서 기업휴지손해의 담보방식은 열거위험양식(named-perils form)과 특별양식(special form)의 2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표 III-3 > 사업자종합보험의 재산손해 담보위험

구 분	Basic Form	Special Form
담보 위험	화재, 낙뢰, 폭발, 폭풍/해일, 연기, 항공기/자동차, 폭동/소요, 악행, 스프링클러누출, 싱크홀붕괴, 화산활동, 재물의 운송 위험	기업휴지손실(business income, extra expense), 연기/증기/가스, 증기장기, 냉동배관, 부정직, 붕괴, 오염, 마모/녹/부식 등 위험, 기상조건 등
면책 사항	법집행/정부기관 행위, 지진, 핵위험, 구외 유틸리티서비스, 전쟁군사행동, 수손(water damage)	

10) Flitner · Trupin, *Commercial Insurance*, AICPU, August 2004, pp.11.4-11.6

사업체 종합보험에서 담보하는 기업휴지손해는 순이익의 감소액과 임금 등의 경상비지출액이다. 보상기간은 담보한 재물의 사고(covered cause of loss)가 발생한 이후 72시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파손된 재물이 교체되고 수리가 완료되어 보험금 지급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이며 통상적으로 12개월을 한도로 하고 있다. 다만, 통상급여의 담보(ordinary payroll)는 60일을 한도로 한다. 동 보험에서는 기업이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초기에는 정상적인 영업성과를 얻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고로 인한 사업재개 후 30일 동안에 기업휴업손실까지도 확장하여 담보하는 조항(extended business interruption cover)을 두고 있다.

특별비용담보(extra expense cover)는 담보사고 이후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추가적으로 보상해주는데 이를 특별비용이라 한다.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다른 건물을 임대하고, 컴퓨터 등 사무기기를 리스하거나, 전화 등 통신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부가적인 비용이 이에 해당된다. 이 비용을 보상함에 있어서는 72시간의 면책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다) 상업 종합보험

상업 종합보험(Commercial Package Policy)은 사업자종합보험과 같이 재산손해를 기본 담보 축으로 하고 배상책임 등을 하나의 증권으로 담보하는 패키지보험으로 기업휴지보험을 담보한다. 다만, 사업자종합보험과 차이가 있다면 규모가 큰 대규모 상공업 업체를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 보험의 담보체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업용 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영업배상책임보험(General liability),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내륙운송보험(Inland Marine), 범죄보험(Crime), 보일러기계보험(Boiler and Machinery)과 농업보험 (Farm insurance), 사업용 자동차보험(Commercial Automobile) 등 사업자에게 노출된 다양한 리스크를 하나의 증권으로 포괄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재산종합보험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동 보험에서 기업휴지손해담보는 별도의 약관(Business Income Coverage

Form)이 첨부되어야 하며, 기업휴지손실(business income)과 특별비용(extra expense)을 합해서 담보하는 방식(business income and extra expense coverage form)과 특별비용을 빼고 담보하는 방식(business income without extra expense coverage form)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III-2> 미국 상업종합보험의 기업휴지담보체계

상업 종합 보험 (CPP)	재물손해담보(commercial property coverage form)
	기업휴지손해담보(business income coverage form)
	상업일반배상책임담보(CGL coverage form)
	도난손해담보(crime coverage form)
	기계장치보장담보(equipment breakdown protection coverage)
	내륙운송보험담보(inland marine coverage form)
	자동차담보(auto coverage form)
	농장보장(farm coverage form)

상업종합보험에서 기업휴지손해의 담보위험은 재물손해의 담보위험(causes of loss)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든가 아니면 특정 위험만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세 가지 형태의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기본담보 양식(basic form)에서는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자동차로부터 낙하물, 폭동/소요(riot or civil commotion), 악행(vandalism), 스프링클러 누출, 싱크 홀의 붕괴, 화산활동(volcanic action)을 담보하며 확장 담보 양식(broad form)에서는 이외의 낙하물로 인한 손해(falling objects), 설재(weight of snow, ice or sleet), 침수손해(water damage), 다른 원인에 의한 붕괴(collapse such as hidden decay) 등을 담보한다. 특별담보 양식(special form)에서는 면책사항 외의 모든 손해를 담보하며 운송중인 개인재산손해(personal property in transit)와 유리파손을 추가로 담보한다.

<표 III-4> 상업종합보험의 재산손해 담보위험(BI담보위험)

구 분	Basic Form	Broad Form	Special Form
담보 위험	화재, 낙뢰, 폭발, 폭풍/해일, 연기, 항공기/자동차, 폭동/소요, 악행, 스프링클러누출, 싱크홀 붕괴, 화산활동	-Basic Form의 담보위험 -낙하물, 설재, 침수손, 다른 붕괴	면책사항외 모든 담보, 운송중인 개인재산, 유리파손
면책 사항	범집행/정부기관 행위, 지진, 핵위험, 구외유틸리티서비스, 전쟁군사행동, 수손(water)		

자료 : Dearborn Financial Institute(2001), p.328

상업종합보험의 약관은 기업휴지손해 담보(business income and extra expense coverage form)를 두고 있는데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재물손해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직접적인 재물손해(direct physical loss)가 발생해 사업의 중단이 발생해야 한다. 상업용 종합보험의 기업휴지손해의 담보 체계는 사업체 종합보험과 같이 세전 기업이익의 상실손해와 계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상비를 기본적으로 담보하며, 기간 확장담보조항과 특별비용담보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공동보험비율(co-insurance)을 50%에서부터 125%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과 선택조항(optional coverage)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선택조항은 최대 보상기간을 120일로 하여 공동보험비율을 약정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며, 보상한도를 공동보험비율 없이 월간한도(monthly limit of indemnity)를 연속해서 30일 한도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보험가액을 약정하는 방식(business income agreed value)도 가능하다.

특별비용담보는 사업자종합보험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간접기업휴지보험을 별도로 첨부하여 담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 다. 보험활용

미국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의 활용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만 기업의 기업휴지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통계는 조사기관이나 조사목적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재해에 따른 사업

계속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화재 등의 재해를 입은 기업은 43%만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9%는 2년이 지나야 사업재개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9일 이상동안 데이터센터에 손상을 받은 기업의 93%는 재해 후 1년 이내에 파산하며, 9일 이상 데이터관리를 하지 않는 기업의 50%는 바로 파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1)</sup>. 이와 같이 재해 후 발생하는 간접손해인 기업휴지손실에 대한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의 기업휴지보험의 활용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003년 Safeco사가 미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험가입현황을 조사<sup>12)</sup>한 결과에 의하면 화재 등의 사고이후의 경상비용이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 즉, 전체 중소기업의 45%가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휴지의 원인으로는 전력시설 72%, 컴퓨터H/W 52%, 통신수단실패 46%, S/W문제 43%, 인적실수 34%, 낙뢰 34%, 홍수 17%, 화재 14%, 허리케인 12%로 나타났고, 허리케인 앤드류가 상륙했을 당시 플로리다주 기업의 75%가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미국 기업휴지보험 시장도 아직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sup>13)</sup>.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재해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기업들의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연속성관리(B C M)에 대한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이의 관리수단으로 기업휴지보험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미국의 사업연속성관리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911 WTC테러나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지진, 테러 등과 같은 대형재해가 발생하여 경영활동이 중단될 경우 중요업무를 가능한한 신속하게 복구시켜 기업의 경영상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01년 911 테러의 경험은 테러 이전에 각 조직 단위로 실행되던 미국의 개별적인 재해관리 체제를 정부기관, 사업체, 자원봉사 조직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조직들이 동시에 재난관리에 참여하는 통합적인 관리체제로 변화하게 하였다<sup>14)</sup>.

11) [http://www.premierinc.com/safety/topics/disaster\\_readiness/downloads/cpac-bus-survive.pdf](http://www.premierinc.com/safety/topics/disaster_readiness/downloads/cpac-bus-survive.pdf)

12) [http://www.insurancejournal.com/news/west/2003/10/22/33403.htm?print=1\(Safeco Survey Finds Small-Business Owners Ill-Prepared When Disaster Strikes\)](http://www.insurancejournal.com/news/west/2003/10/22/33403.htm?print=1(Safeco%20Survey%20Finds%20Small-Business%20Owners%20Ill-Prepared%20When%20Disaster%20Strikes))

13) <http://www.keenansuggs.com/Insurance%20Updates/Commercial%202007/June%202007,%20Business%20Interruption%20Ins.pdf>

14) 또한 사베인즈-옥슬리 법 404항(Sarbanes-Oxley Section 404)은 기업에게 민간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들에 대해 내부통제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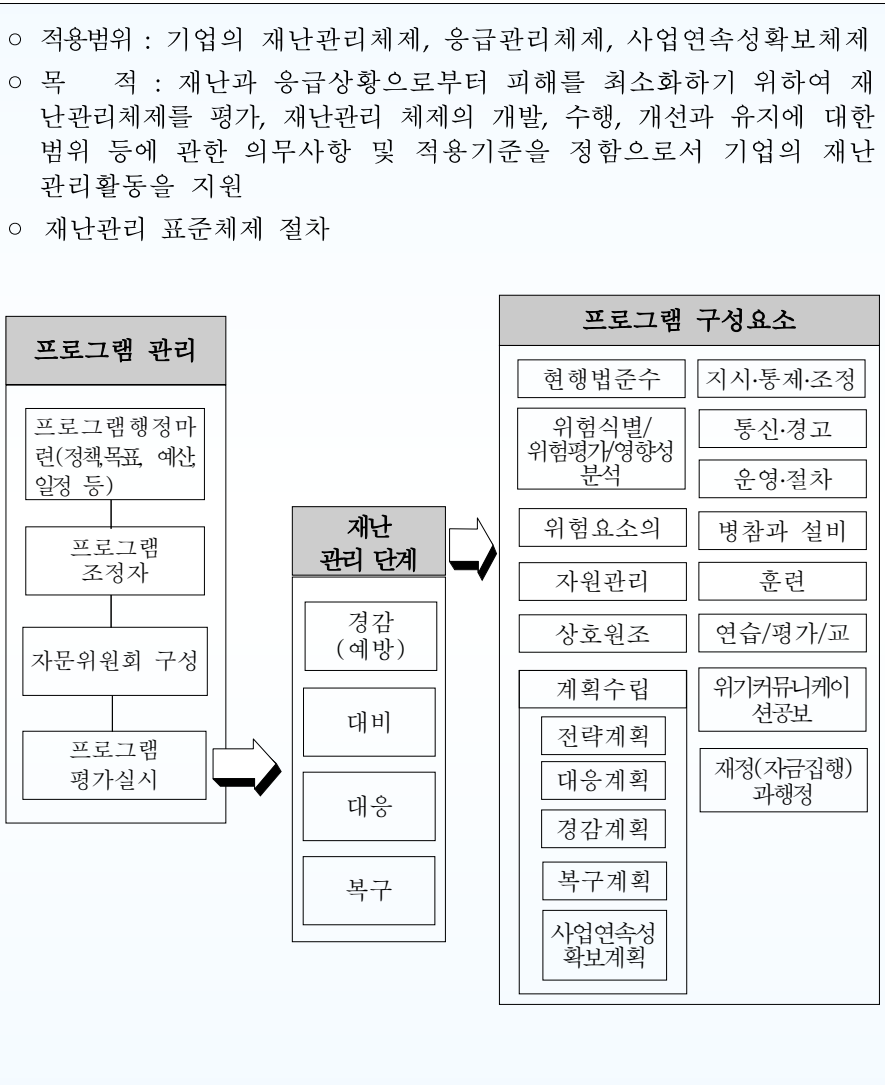
미국에서 기업들에게 사업연속성계획(BCP) 프로그램의 수립을 요구하는 규정은 2001년 9.11 테러를 전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9.11 테러 이전에는 사업연속성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규정이 소수에 불과하였지만 9.11 테러 이후 미국 소방방재협회(NFPA)와 식약청(FDA) 등 여러 기관은 해당기관에게 공식적으로 사업연속성계획 프로그램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기구인 재해회복위원회(DRII: Disaster Recovery Institute International) 및 재해회복저널(DRJ: Disaster Recovery Journal)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연속성관리를 위한 기업표준지침(GAP : Generally Accepted Practice for Business Continuity)"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GAP은 각 주제별 영역(subject matter area)의 소주제(sub-topic) 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What),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를 수행해야 하는지(How)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기존 문서나 자료 등 수행에 참고할 수 있는 참고문헌을 통해 실제 사업연속성계획을 수행하는 담당자가 지침을 해석, 적용 할 때 적절히 참고, 활용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9.11 테러 이후에 만들어진 뉴욕증권 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의 "Regulation 446"과 미국 유가증권딜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의 "Regulation 3510"은 모든 회원 기업들에게 사업연속성계획 수립 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금융감독위원회(FFIEC : 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에서는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사업연속성확보계획의 수립이 의무화가 되어 있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받으며 또한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미국의 사업연속성관리는 재난에 대한 연속성관리계획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나 공공단체가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위기관리계획(Crisis management plan)의 거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미국에서 일반화된 재난관리 및 사업연속성표준인 NFPA 1600(Standard on Disaster/Emergency Management and Business Continuity Programs 2007)<sup>15)</sup>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 <http://www.nfpa.org/assets/files/pdf/nfpa1600.pdf>

<표 III-5> 미국 NFPA 1600(재난관리 및 사업연속성 표준)의 개요



자료 : 국회 재해경감지원법 검토보고서, 2006.9 ,p.14

## 2. 영 국

### 가. 시장개요

화재보험이 1666년 9월 2일에 발생한 런던 대화재로 인하여 세계최초로 영국에서 개발되었듯이 기업휴지보험도 1797년에 Minerva Universal회사가 결과적 비용 및 이익손해(consequential loss)를 담보하는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899년에는 Ludovig McLellan사가 영국판 기업휴지보험의 효시인 이익보험(loss of profit)을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1939년에 현대적인 기업휴지보험 표준약관이 만들어짐에 따라 영국식 기업휴지보험은 미국식 기업휴지보험과 더불어 기업휴지보험의 중요한 두 축을 이루게 되었다. 현재 영국의 기업휴지보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상품은 화재보험의 기업휴지손해담보특약을 첨부한 형태와 상업용 물건을 대상으로 한 상업용 종합보험(commercial combined insurance)으로 구분된다.

2007년 Hiscox사가 영국 중소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 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국 중소기업의 44%는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30%는 결과적 손해(consequential loss)까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업까지 포함하는 경우 영국에서의 기업휴지보험 가입은 보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sup>16)</sup>. 영국의 경우에는 기업휴지보험에 대해 세부적인 통계자료가 공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자세한 실적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휴지보험은 상업용 재산보험에서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용 재산보험에 대한 실적통계를 통해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실적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영국의 상업용 재산보험을 비롯한 재물보험은 영국 손해보험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의 34%에 비해 약간 적은 28%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16) 영국 중소기업들의 기업경영관련 보험의 가입율을 보면 공공배상책임보험(public liability) 80%, 사무실동산컴퓨터 보험 66%, 사용자배상책임(EL) 66%, 전문인배상 59%, 건물보험 58%, 자동차보험 52%, 법률비용보험 46%, 건강보험 28%, 생산물배상책임보험 2%, 여행보험 22%, D&O보험 15%로 조사되었다.<http://www.hiscox.com>(Press Release, Under-insured SMEs face to significant financial risk from employee lawsuits, 2007.2.17)

&lt;표 III-6&gt; 영국 재물보험의 보유보험료 추이

(단위 : 백만파운드,%)

종 목	2003	2004	2005	2006	2007	구성비	CAGR
자동차	9,531	10,154	10,397	10,277	10,527	33.6	0.90
상해건강	3,894	4,140	4,089	4,385	4,664	14.9	3.02
재물보험	8,015	8,494	8,547	8,487	8,609	27.5	0.34
배상책임	3,173	3,252	3,532	3,273	3,353	10.7	0.77
금전손실	3,462	3,562	4,043	3,999	4,166	13.3	3.99
TOTAL	28,075	29,603	30,607	30,420	31,319	100.0	1.42

자료: [http://www.abi.org.uk/Display/File/524/Public\\_General\\_Business\\_Tables\\_2007.xls](http://www.abi.org.uk/Display/File/524/Public_General_Business_Tables_2007.xls)

## 나. 보험상품

영국의 기업휴지보험은 미국의 보험과 같이 국제 표준형태의 한 종류로 되어 있으며, 총이익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통상적으로 영국의 기업휴지보험은 다른 나라들처럼 패키지보험으로 제공되고 있다. 영국에서 패키지 형태의 종합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상업용 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으로 통칭되나 회사별로 상품의 특성에 따라 상업종합보험(CCP: commercial combined insurance)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상업종합보험(commercial combined policy)은<sup>17)</sup>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계약자들이 보다 저렴한 보험료비용으로 재해나 사고로 인한 물리적 피해, 경영중단 손해 등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사업의 연속성을 지속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험으로 계약자의 니즈에 따라 표준화된 약관과 달리 다양한 담보위험을 조합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보험 상품(Tilor-made cover)으로 주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도소매업자를 주요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 보험은 모든 담보위험에 적용되는 면책사항(general policy exclusion)으로 방사능오염(radioactive contamination), 전쟁 및 이와 유사한 리스크(war and similar risks), 폭음(sonic bang), 몰수, 테러위험을 두고 있다.

17) [www.ruralinsurance.co.uk](http://www.ruralinsurance.co.uk)

상업종합보험(CCP)에서 재물손해는 화재보험의 기본담보 위험외의 특약담보위험을 대부분 담보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담보하는 손인으로는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 노동쟁의 및 소요, 악행손해(malicious damage), 지진 및 지하화재, 폭풍, 홍수, 물의 피난, 제3자 및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나 동물로 인한 피해, 우연한 물리적 손해, 침강 또는 수평전위(subsidence or heave) 등이 있다. 그러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 우연한 오염사고, 고정된 유리의 우연한 손해, 도난 등은 제외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물손해를 담보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계약조건(policy condition)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85% 실손보상 조건, 방화문 및 방화샤터조건, 스프링클러장치 유지 테스트 조건, 소화기와 경보설비 유지 및 테스트조건, 보안보호조건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림 III-3> 영국 상업종합보험의 기업휴지 담보

상업 종합 보험 (CCP)	재물손해담보(material damage cover)
	기업휴지손해담보(business interruption cover)
	도난손해담보(theft cover)
	사용자배상책임담보(employers' liability cover)
	공공 및 생산물배상책임담보(public and products liability)
	유리담보(glass cover)
	돈 담보(money cover)
	운송중 화물담보(goods in transit cover)
	냉동식품 담보(frozen food cover)
고용인의 도둑담보(theft by employee cover)	

자료 : Royal Insurance(www.ruralinsurance.co.uk)

영국 상업 종합보험(CCP)의 기업휴지담보는 부보한 재물에서 담보하는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순이익의 감소를 담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과 기업휴지에서 담보하는 손인은 재물손해와 거의 동일하지만 도난 위험을 추가로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기업휴지보험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영국의 상업용 종합보험의 기업휴지위험담보는 가입휴지손해

를 133%로 전체부보율의 1/3까지 확장하여 담보하고, 경상비의 자동증액이 가능하며, 보험가입금액도 추가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하여 자동증액이 되는 것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 3가지의 확장담보를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선택약관은 접근 예방(prevention of access), 공공유틸리티(케이블이나 파이프는 제외), 24시간을 초과한 공공 유틸리티의 실패, 공권력에 의한 현장 폐쇄, 확정 또는 미확정을 불문하고 공급자 혹은 소비자로 인한 손해, 제3자의 구내에 저장된 동산, 운송중인 재화가 있다. 따라서 계약자가 이들 위험을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표 III-7> 영국 상업종합보험의 실적 추이

(단위 : 백만파운드)

	2002	2003	2004	2005	2006	CAGR
보험료	4,369	5,429	5,582	5,161	4,986	3.4
보유보험료	2,820	3,082	3,451	3,256	3,037	1.9
손해액	1,664	1,540	1,528	1,642	1,518	-2.3
사업비	862	1,034	1,146	1,216	1,169	7.9
영업손익	68	437	637	391	350	50.6

자료 : Datamonitor, UK commercial property insurance 2008,p.8

영국의 상업종합보험의 실적을 살펴 보면 2006년 기준으로 보험료는 49억 파운드로 최근 5개년 동안 평균 3.4% 성장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3.5억 파운드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06년 동안 기업휴지로 지급한 보험금은 1.68억 파운드로 동 종목 전체 지급보험금의 13.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2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준이다. 기업휴지보험금의 지급원인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6년 지급보험금 1.68억 파운드의 88.1%인 1.48억 파운드를 화재로 인해 지급했고 나머지는 기상재해로 지급하였다.

<표 III-8> 영국 기업휴지 보험금 추이

(단위 : 백만파운드)

	2002	2003	2004	2005	2006	CAGR
기상손해	291	98	109	251	163	-13.5
화재	799	672	486	791	744	-1.8
기업휴지	238	92	108	267	168	-8.3
도난	199	193	154	140	150	-6.8
계	1,527	1,055	857	1,449	1,225	-5.4

자료 : Datamonitor, UK commercial property insurance 2008,p.12

<표 III-9> 영국 기업휴지원인별 지급보험금 추이

(단위 : 백만파운드)

	2002	2003	2004	2005	2006	CAGR
화재	208	81	98	220	148	-8.2
기상재해	30	13	10	46	20	-9.6
계	238	94	108	266	168	-8.3

자료 : Datamonitor, UK commercial property insurance 2008,p.15

#### 다. 활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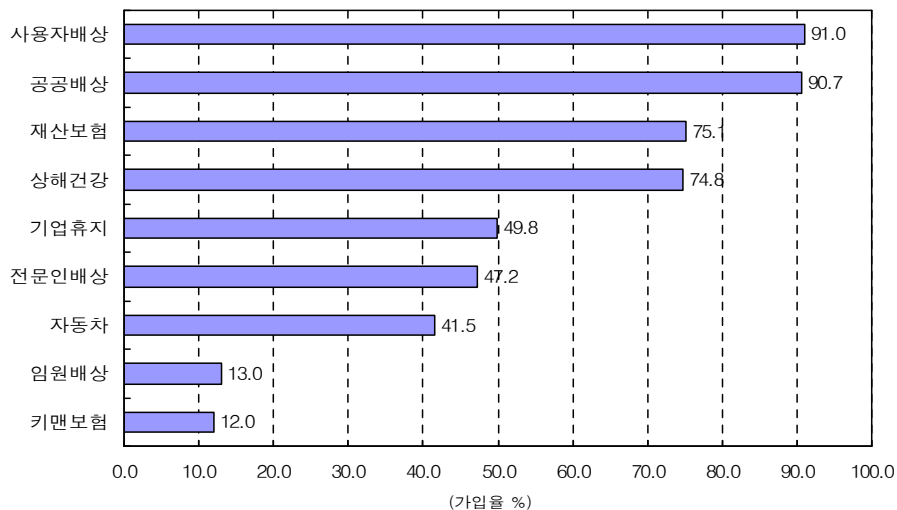
영국 중소기업의 52%는 매년 평균 22,914파운드의 기업중단 비용이 발생하는 사업 중단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up>18)</sup>. 또한 이들 기업의 소유자나 경영자는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한 주요 기술적 실패로 인한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1만 파운드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기업휴지 등의 리스크에 대한 보험가입 현황을 Datamonitor(2008)의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면, 영국 중소기업의 50%

18) <http://www.tenongroup.com/Press/2008/Press080228.asp>

가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사용자배상책임과 공공배상책임보험은 90%이상의 기업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국의 기업들은 기업휴지로 인한 사업 중단리스크를 기업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리스크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I-4 > 영국 중소기업의 보험가입현황(2008.3)



자료 : Datamonitor(2008), Targeting SMEs in UK Commercial General insurance 2008,p.17

영국은 정부차원에서는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업 중단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제도 중의 하나가 “사업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에 대한 표준규격”의 제정이다. 이러한 규격의 제정을 통해 영국 정부는 기업들이 사업연속성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기업휴지보험을 활용하여 재난대비 역량과 복원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국 정부는 기업이 사업연속성계획을 스스로 수립할 경우 해당 지방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2004년에 제정된 시민비상대처법(Civil Contingencies Act 2004)에 규정하였으며, 지

방정부는 지역의 위험목록을 구축하고, 이를 근거로 기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들의 사업연속성계획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민간기구인 사업연속성기구(Business Continuity Institute)는 각 산업별 사업연속성관리의 최고실무관행(Best Practice)을 선정하여 실무지침을 작성, 기업에 무료로 배포하는 등 민간 기업들에게 사업연속성계획의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림 III-5> 영국의 사업연속성관리(BCM)의 영역



영국의 사업연속성관리(BCM)의 영역에는 위기관리, 재해복구, 시설물관리, 공급체인 관리, 품질관리, 재난관리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영국의 사업연속성관리는 기업들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직면할 경우 경영 활동을 계속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방해, 또는 손실로부터 조직의 복원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통합적인 전략과 운영체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국표준협회는 영국 사업연속성연구소(Business Continuity Institute)와 공동

으로 2002년 사업연속성관리(BCM)에 대한 공공표준인 PAS56<sup>19)</sup>을 제정, 보급했다. 이를 기반으로 2006년 12월에 BS 25999의 첫 번째 표준인 BS 25999-1 실행지침(Code of Practice)을 발표하였고 2007년 11월에는 BCM에 대한 규격(Specification for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BS 25999-2를 제정 및 발표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의 사업연속성관리를 위한 노력과 지원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BS 25999의 제정은 사업연속성계획이 추구하는 목표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다른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들이 기업휴지보험의 가입 등을 통해 사업연속성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영국의 사업연속성관리(BCM) 표준인 BS 25999는 시행령인 ‘BS 25999-1: 2006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Code of Practice’와 명세서인 ‘BS 25999-2: 2007 Specification for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사업연속성관리 표준으로, ‘BS 25999-1:2006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Code of Practice’는 BCM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과 절차, 원칙과 분류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BS 25999-2:2007 Specification for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는 사업연속성관리(BCM)를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의 수행과 개선에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한편, 보험회사들은 정부의 사업연속성 리스크관리 정책을 기업휴지보험의 보급과 시장개척의 활로로 삼아 기업들에게 사업연속성 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다양한 기업휴지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보험료 수입 순위 5위인 Zurich보험사의 경우 “Zurich Risk Engineering,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ervices<sup>20)</sup>”를 개설하고 고객들에게 사업연속성계획의 개발, 사업연속성계획에 대한 감사, 기업휴업(business interruption) 모델링, 기업충격분석(business impact analysis)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Zurich사의 이러한 제공서비스의 안내문은 영국 기업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현금흐름 중단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해 수 천개의 기업이 영업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한 사고를 당한 기업의

19) [http://www.broadland.gov.uk/PDF/business\\_continuity\\_good\\_practice\\_guide.pdf](http://www.broadland.gov.uk/PDF/business_continuity_good_practice_guide.pdf)

20) <http://www.zurich.co.uk/RiskServices/riskengineering/strategicrisk/Businesscontinuitymanagementservices.htm>

40%는 영업재개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사업연속성 계획과 기업휴직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3. 일 본

#### 가. 시장 개요

일본의 기업휴직보험인 이익보험은 영국 등 유럽국가나 미국에 비해서 다소 짧은 70여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1938년 동경해상보험 등 8개사가 영국약관을 참조하여 작성한 이익보험상품의 판매를 개시하였지만 당시는 전시(戰時)인 관계로 수요도 적었고 군수산업이 대다수인 관계로 비밀의 보호성 때문에 가입실적은 매우 미미하였다. 전쟁의 종식후 일본의 경제발전 에 따라 이익보험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공인회계사제도의 도입으로 기업회계제도가 투명하게 마련되자 보험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1959년에는 영국식 약관을 개정하여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였고 그 후 수차례에 걸친 개정을 거쳐 1981년 현재와 같은 일본식 약관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981년에 이루어진 주요 변경 내용<sup>21)</sup>을 살펴보면 1981년 이전의 이익보험은 화재보험보통약관에 부대한 특약으로만 인수가 가능했으나, 전체 수요의 증가로 인해 이익보험만을 가입하고자하는 수요가 나타나게 되자 이익보험(이익보험특약조항)에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변경하여 이익보험용 화재보험보통약관이 인가가 되었다. 담보위험은 변경 전에는 화재, 폭발 및 전기적 사고에 한정하여 담보하였지만 변경된 방식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화재, 낙뢰, 파열, 폭발)외에 확장담보위험(전기적 사고, 풍수재, 소요·노동쟁의, 파괴행위, 항공기, 차량위험)을 추가적으로 선택하여 담보하게 되었다. 영업수익을 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변경 전에는 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매출액과 생산액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고시에 약정한 보험금을 충분하게 보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변경 후에는 사고시에 계약

21) 鈴木克彦(1982), p.131

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었다. 또한 약정담보기간 방식에 약정부보비율방식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미국식 이익보험(gross earning form)과의 정합성을 갖추었다.

또한 이익보험의 담보조건으로 보험의 목적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했고, 담보손해도 그 목적물에 기인한 것에만 한정되었었지만 변경 후에는 이익보험만 단독으로 인수가 가능해져 동 조항은 제외되었다. 또한 담보기간에 대한 특약조항을 도입해 이익보험의 종기를 영업수익이 원상태로 복구된 시점으로 정했으며, 이의 판정에 있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의 복구를 기본으로 하고 담보기간을 종기로 하는 특약을 첨부하여 계약자에게 보험료 할인(10%)을 부여하였다<sup>22)</sup>. 1987년 6월에는 이익보험의 요율체계를 개정하여 실시하였으며<sup>23)</sup> 현재는 화재보험보통약관(이익보험, 영업계속비용보험용)에 이익보험특약을 부대하는 형태로 이익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사업연속성관리규격을 제정하여 공급함에 따라 기업들의 사업중단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 들여 손해보험회사들은 새로운 성장동력 시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이익보험시장은 1998년에는 76억엔 규모의 시장이었지만 2005년의 경우 매년 23% 씩 성장하여 329억엔 규모가 되었으며 손보시장의 0.4%를 점유하고 있다.

- 
- 22) 미국에서는 물적 복구를 기본으로 하여 담보기간의 종기로 하고 있으나 일본의 이익보험은 영국의 이익보험을 기초로 하였기 때문에 물적 복구 후에도 영업수익 감소가 있는 경우 담보하는 방법을 채용하였다.
- 23) 이익보험요율과 물보험 요율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물건별 적용요율을 산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일반물건의 경우 구조급별, 지역별, 직업할증 및 작업할증표를 독자로 하였고, 공장물건의 경우 작업시설의 화재보험 요율표에 의하여 기본요율을 산출하고, 화학공장과 기타로 구분하여 기본요율수정계수를 도입하였다. 창고물건의 경우기초요율을 신설하였다. 또한 이익보험조정계수를 개정하고 손해율 조정계수의 할인할증을 신설하였다.

<표 III-10> 일본 기업휴지보험료의 성장추이

(단위: 백만엔,%)

	1998	2000	2004	2005	구성비	CAGR
화재	1,242,505	1,134,946	1,156,444	1,203,329	15.7	-0.46
자동차	4,659,480	4,648,906	4,713,138	4,671,268	61.0	0.04
기업휴지	7,600	15,121	32,127	32,873	0.4	23.27
기타	1,810,293	1,661,193	1,726,568	1,751,293	22.9	-0.47
합계	7,719,878	7,460,166	7,628,277	7,658,763	100.0	-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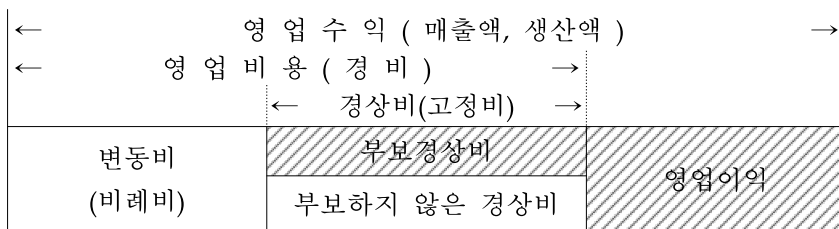
자료 : 일본 보험연구소, 『손해보험통계호』, 각년도

나. 보험상품

1) 화재보험의 이익보험담보특약

동 보험은 화재보험보통약관(이익보험, 영업계속비용보험용)에 이익보험특약을 첨부하여 운영되는 형태이다. 이익담보특약에서 담보하는 손해는 보험의 목적이 보통약관(및 특약)의 담보위험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결과, 영업을 휴지 또는 저해되어 생긴 『상실이익』 과 그 손실(상실이익)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익감소 방지비용』 을 보상한다. 이익보험에서 담보하는 상실이익은 피보험자인 사업자의 영업수익 중 영업이익과 영업비용(경비)중 고정비의 일정 부분 즉 부보경상비를 담보한다.

<표 III-11> 일본의 상실수익의 개념



다시 말해 일본의 이익보험은 위 그림에서 사선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담보위험(화재, 낙뢰, 폭발 등)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결과 영업이 휴지 또는 저해되어 생긴 손실이 상실수익으로 보상되는 대상이 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다시 보면 ①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가 없었다면 계상할 수 있는 영업이익액과 ②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원가,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의 영업에 소요되는 영업비는 경상비와 변동비로 나뉘는데 이중 경상비를 담보한다. 경상비는 고정비라고 말하며 손해나 휴업유무에 관계없이 영업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복구공사를 행하기 위하여 휴업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관련시설을 빌리고 있는 경우 지출되는 임대료와 휴업기간동안에도 종업원을 고용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매출에 상관없이 지불되는 급여가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경상비중 계약시에 부보하는 비용을 부보경상비라 한다.

그러나 이에 비해 원재료나 상품구입 관련비용은 영업을 축소하면 감소하며, 휴업을 한 경우에는 지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부보하지 않는 경상비로 부르고 있다. 따라서 보험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 계약자의 경상비와 영업이익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의 자료에서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이익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보경상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손익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경상비와 변동비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비목명을 보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광열비에 대해서도 제조라인의 가동이나 공조에 사용되는 부분은 변동비이나 기본요금은 휴업하였을지라도 필요한 경상비이다. 인건비도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불하는 한 경상비이나 고용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변동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경상비와 변동비간의 구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이익률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익률은 최근의 결산서상 회계연도에 부보항목(경상비와 영업이익 중 부보된 것)이 영업이익에서 점유하는 비율을 말하며 상실수익액은 이익률에 수익감소액을 곱한 값에서 지출하지 않은 부보경상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text{이익률} = \frac{\text{부보항목합계금액}}{\text{영업수익}}$$

$$\text{상실수익} = \text{담보기간 동안의 수익감소액} \times \text{이익률}$$

- 지출을 하지 않은 부보경상비

수익감소방지비용은 화재 등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휴업이나 영업축소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계약자들이 매출액이나 생산액의 감소를 방지, 경감하기 위하여 지출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계약자들의 지출은 휴업이나 영업축소기간을 단축시키며 발생할 수 있는 상실수익의 크기를 작아지게 한다. 따라서 보험자들은 계약자들이 수익감소방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공사비용, 일시적 임차비용)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 2) 화재보험의 영업계속비용담보특약

영업계속비용보험(extra expense insurance)은 이익보험과 동일하게 약관 구성상 화재보험보통약관(이익보험 및 영업계속비용보험용)의 특약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이익보험은 사고에 의해 휴업(혹은 영업축소)한 경우 상실이익과 수익감소방지비용을 지급하지만 휴업이나 영업축소를 한 결과 고객이나 거래처를 잃어 사업을 재개하여도 사고전과 같이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 특히 공공성이 큰 은행이나 통신사업자 등은 이러한 피해를 크게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업종은 사업을 복구할 때까지 대체시설을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기 전과 동일한 정도의 영업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영업계속비용보험은 이와 같이 영업을 휴지나 저해가 되지 않도록 영업을 유지 및 계속을 위해 소용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익보험에서도 이와 같은 손실에 대해 수익감소방지비용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이는 상실수익의 경감액을 그 한도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만일 상실수익을 초과한 경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계속비용보험을 들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액은 재해나 사고가 있는 경우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계속비용의 최대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며, 보험금으로 표준영업

수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소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복구기간 내에 생긴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복구기간 내에 지출을 면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 3) 가임보험특약

동 보험은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주택 임대차업을 하는 경영자를 위한 보험으로 임대주택에 손해가 생긴 경우 임대인의 상실된 임차비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동 보험은 이익보험과 마찬가지로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운영된다. 즉 동 보험은 화재보험보통보험약관(이익보험 및 영업계속비용보험용)과 같은 전용의 보통약관은 아니고 주택화재보험보통약관이나 주택종합보험보통약관과 같은 일반적인 약관에 첨부되어 운영된다.

동 보험의 보험금액은 월 임차료에 약정복구기간 월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재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정복구기간 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약정복구기간은 건물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거나 다른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며 계약시에 약정한다. 또한 계약에 있어서 부당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목적인 건물의 입거상황 등을 파악하여 둘 필요성이 있다. 동 보험의 담보위험은 보통약관에서 담보하는 자연재해는 담보하지 않고 화재, 낙뢰, 폭발 및 잡위험에 의한 손해만 담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자연재해도 담보하는 상품이 만들어 지고 있다.

### 4) 점포휴업보험

동 보험은 중소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익보험에 비해 보다 간결하게 운영되는 상품으로 화재보험에 부대되는 상품이 아니라 독립된 상품으로 판매되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금액은 1일당 조수익(매출액에서 상품 원재료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금은 약정복구기간 내에 지출을 면한 경상비 등을 제외하고 보상한다.

동 보험은 보험의 목적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보험자의 소유물만이 아니라 인접물건(보험증권 기재 건물에 인접하여 있는 아케이드나 이에 대면하고 있

는 건물 등)이나 유틸리티(전기, 가스, 수도, 통신배관, 배선 등의 설비) 등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한다.

### 5) 기업비용 및 이익종합보험

동 보험은 이익보험과 영업계속비용보험을 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합 보험으로 화재보험이나 점포종합보험과 함께 가입해야 하며 점포휴업보험과 같이 독립적인 상품이다. 동 보험은 이익보험에서 담보하는 상실이익<sup>24)</sup>과 수익감소방지비용<sup>25)</sup>, 영업계속비용보험에서 담보하는 영업계속비용<sup>26)</sup>을 동시에 담보한다. 이 상품의 이익조항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수익감소액의 일정 비율(계약시에 약정한 약정부보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비례보상은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시에 계산한 보험료를 청구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에 영업수익에 관한 자료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확정 정산하는 개념이다.

이익보험이 화재, 낙뢰, 파열 및 폭발을 담보하는 보험인 것에 비해 동 보험은 종합담보형태(all risk)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동 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침수 손해, 노동쟁의와 같은 파괴적 행위 등의 위험은 보통약관에서 면책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담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확장담보특약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보험의 목적에는 점포휴업보험과 같이 인접물건이나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으며 우발적 기업휴지손해(CBI)까지 담보하고 있다. 동 보험의 상품체계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 24) 상실이익은 사고가 발생한 결과 영업을 휴지 또는 저해되어 생긴 손실 중 경상비와 사고가 없었으면 계상될 영업이익의 합을 말한다. 계산은 매출액의 감소액×계약시에 정한 약정부보비율-담보기간 내 지출하지 않은 고정비×약정부보율/이익율에 의거 한다.
  - 25) 수익감소방지비용은 수익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보기간 내에 생긴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 중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 26) 표준영업수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소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복구기간 내에 생긴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 중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초과한 부분을 말한다.

&lt;표 III-12&gt; 일본의 비용 이익종합보험 담보체계

구 분	기업휴지손해(BI)	우발적 기업휴지손해(CBI)
담보 위험	화재, 파열 및 폭발, 낙뢰, 풍재·수재·설재, 소요 등 집단행동, 급배수설비의 누출, 외부로부터 물체의 낙하 등, 도난, 파손 등	유틸리티 설비 : 보험의 목적과 배관 또는 배선에 의하여 접속되어 있는 해당법률에 근거한 전기사업자, 가스사업자, 열공급사업자, 수도공급사업자, 공업용수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보상 손해	상실이익 수익감소방지비용 영업연속비용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사유에 의하여 유틸리티 설비의기능이 정지 또는 저해되어 전기, 가스, 열, 수도의 공급 또는 전신·전화의 중계가 중단됨으로써 생긴 휴업손실 보상
면책	고의, 자연마모, 분실망실, 토사붕괴(특약담보)	설비능력을 초과사용, 계약에 의한 해제, 노동쟁의, 오염, 갈수, 물부족 등

자료 : 동경해상 홈페이지(<http://www.tokiomarine-nichido.co.jp/hojin/zaisan/rieki/index.html>)

참고로 동 보험의 보험료수준을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연간 영업수익이 120억인 보험계약자가 기업휴지담보에만 30%의 약정담보율( $(\text{영업이익} + \text{경상비}) / \text{영업수익}$ )에 0.06%의 요율 수준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가액은 36억엔이 되며, 이를 100% 가입하고 담보기간을 12개월로 계산할 경우 보험료는 200만엔이 된다.

## 6) 초비즈니스보험

최근 일본의 보험사들은 기업들의 영업환경이 기업내외부적으로 복잡하게 연결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어 과거의 일반적인 기업휴지보험 상품으로는 기업의 니즈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의 사업활동 전반을 담보하는 새로운 개념의 보험상품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보험상품인 초비즈니스 보험은 현재 일본에서 동경해상<sup>27)</sup>을 비롯한 다른 손보사들에 의해 판매되고 있다.

27) [http://www.tokiomarine-nichido.co.jp/hojin/jigyoo/cho\\_business/index.html](http://www.tokiomarine-nichido.co.jp/hojin/jigyoo/cho_business/index.html)

<표 III-13> 동경해상 초비즈니스보험 담보체계

구 분	기본담보위험	선택담보 위험(보험상품)
담보 위험	재물손해담보: 건물, 설비, 집기, 운송중 상품제품 휴업손해담보: BI, CBI를 포괄 담보 재상책임보상: 사업활동관련 배상책임 상해보상: 취업중 임직원 상해 산재초과보상: 산재시 산재초과손해 담보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지진보험
컨설팅 서비스	IT 컨설팅시스템을 통해 보험료 건적을 즉각적으로 실시	

동 보험은 지금까지의 보험과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는 보험가입대상 업종을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업종별로 리스크특성에 맞는 담보를 제공한다는 점으로 건설업과 운송업의 경우에는 배상책임보상조항, 상해보상조항, 산재초과보상조항, 비용보상조항을 제공하며, 소매업의 경우에는 재물손해, 휴업손해, 배상책임보상손해, 산재초과보상, 비용보상담보를 제공한다.

두 번째는 기업이 노출된 모든 리스크에 해당하는 보험을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사고시 효율적인 보상을 받아 영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새로운 보상으로서 업종 특유의 리스크에 대해 폭넓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으로 이는 기업에 있어 예고 없이 발생하는 브랜드 라벨비용, 원재료 납품지연손해, 제조업의 리콜비용, 점포를 방문하는 고객의 상해치료비용 등을 신속하게 담보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네 번째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보상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마지막 특징으로는 독자적인 할인제도(포괄담보할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별도할인) 및 계약절차와 관리가 간단하다는 점이 있다.

동 보험의 휴업보상 담보는 계약자가 점유하고 있는 시설, 인접물건, 유틸리티설비(utility risk), 공급자의 물건(supplier's risk)에 생긴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결과 계약자의 영업을 휴지 또는 저해되어 생긴 손실을 포함한다. 휴업손해의 보상은 1일당 지불액을 설정하고 휴업일수 대로 지급하며 보상기

간은 최대 12개월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휴업손해이외에도 영업계속비용을 1일당 지불액의 30배를 한도로 담보하며, 휴업이 5일 이상 지속되고 사고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재개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1사고 당 10만엔을 보상한다.

#### 다. 활용현황

일본에서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을 이용한 휴업손실 리스크관리는 일본식 이익보험이 개발된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초기에 도입된 기업휴지보험의 활용이 미진하자 현재 일본 보험업계에서는 독립적인 기업휴지보험 상품담보가 가능하게 하거나 담보방식을 달리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일본에서 일본식 이익보험이 개발되기 전의 기업휴지보험의 시장에서의 활용도를 살펴보면 현재의 우리나라의 실정보다 더 나쁜 상황에 있었다. 동화손해보험회사에서 제공한 통계에 의하면 일본 기업들은 화재보험 계약건 중에서 6.2%만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랑스의 가입율 20%, 독일의 50%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이며 이러한 원인은 보험회사들이 기업휴지보험의 보급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로 보았다<sup>28)</sup>. 이와 같은 저조한 가입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송 일(1997)은 이익보험시장을 손해보험의 한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최근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은 비용이익종합보험, 초비즈니스보험 등의 다양한 형태의 이익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실적통계도 비용이익보험(pecuniary loss)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집계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사업연속성관리(BCM) 기준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등이 이를 채택하여 시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초기의 사업연속성 기준은 2005년 3월에 경제산업성에서 IT 사고를 상정한 『사업연속계획 책정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졌고, 2005년 8월에는 내각부의 중앙방재회의에서 지진까지를 포괄하고 생명안전, 휴업손실 등 2차 피해까지를 규정한 사업연속계획책정가

28) 송일(1997), p.183

이드라인 제1판이 제시되었다. 2006년 2월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재해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리스크가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중소기업 BCP 책정운용지침』이 마련되었다<sup>29)</sup>. 일본 중소기업청이 이와 같은 노력을 하는 것은 빈발하는 지진, 태풍 등 재해로부터 많은 중소기업이 직간접 피해를 입어 사업중단이 되거나 도산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지역경제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전에 기업들이 이러한 재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정부 차원의 사업연속성관리 노력에 따라 기업들은 적극 호응하여 자발적인 사업연속성관리를 도입하고 있다. 2007년 10월 노무라 종합연구소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연속성계획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일본 기업의 29%는 이미 사업연속성계획을 구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6.1%는 구축 중에 있으며 32.5%는 구축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업연속성관리에 관심이 없는 기업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30)</sup>. 일본 기업들이 사업연속성계획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험요인을 보면 지진이 95.8%, 화재 등으로 인한 자사설비 사고나 고장이 66.7%, 자연재해가 56.4%, 조류 등 신형인플루엔자가 25.5%, 테러 등이 20.6%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기업들의 70.9%가 재해를 입게 될 경우 자사의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수 있기 때문에 사업연속성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응답했고, 15.2%의 기업은 고객이나 거래처로부터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발적인 추진이 더 많았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들은 기업휴지보험이 정제<sup>31)</sup>된 손해보험시장의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보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손보재팬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

29) 일본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참조([http://www.chusho.meti.go.jp/keiei/antei/060217bcp\\_koukai.htm](http://www.chusho.meti.go.jp/keiei/antei/060217bcp_koukai.htm))

30) 株式會社野村総合研究所, 「BCP(事業継続計画)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を実施~BCP策定済みまたは策定中の企業は6割超~, NEW RELEASE, 2007.11.22(<http://www.nri.co.jp/news/2007/071122.html>)

31) 이와 같은 배경에는 일본 손해보험시장이 1980년대 후반부터 이어져 온 불황으로 인해 화재보험을 비롯한 자동차보험의 신규 수요가 줄어들고, 최저금리의 지속으로 위험보장과 투자 장점이 있었던 장기보험도 그 성장여력을 잃게 되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업의 사업연속성관리 도입정책과 연계하여 기업휴지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은 재해복구대책에 대한 관련 상품을 상세하게 비교 설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정보에는 사업중단에 대한 손해대책으로 이익보험, 영업계속비용보험, 올리스크(all risk)를 담보하는 종합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각각에 대해 보험개요, 가입조건, 담보하는 손해 등이 비교되어 있다<sup>32)</sup>.

이러한 기업휴지보험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2005년 1월 27일자 아시아 보험리뷰지<sup>33)</sup>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일본 국내 대형손해보험 5개사의 보험료수입은 이익보험의 수요에 힘입어 2004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에 전년에 비해 13%나 증가한 것으로 되었다. 2006년 기준으로 일본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 가입율은 10%~20%<sup>34)</sup>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영국, 독일 등 유럽 기업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32) 중소기업청, 중소기업BCP책정운용지침 안내자료([http://www.chusho.meti.go.jp/bcp/contents/level\\_a/bcpgl\\_05a\\_2\\_2.html](http://www.chusho.meti.go.jp/bcp/contents/level_a/bcpgl_05a_2_2.html))

33) ASIA INSURANCE REVIEW Vol III Issue 5, “이익보험 수요확대로 13% 증수”, 2005.1.27

34) 杉野文俊(2007), p.77

## IV. 국내 기업휴지보험 운영 현황 및 평가

### 1. 상품 운영현황

#### 가. 화재보험의 기업휴지보험

##### 1) 영문약관

우리나라의 기업휴지보험은 주로 산업시장이 1차 산업 중심이었던 60년대까지는 수요가 거의 없었으나 1968년부터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점차 수요가 발생하였다<sup>35)</sup>. 그 당시에는 소규모 건물 등에 화재보험을 운용하여 온 관계로 해외 재보험 출재 등의 필요성이 낮았으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외국의 차관업체의 요청 등에 따라 재보험출재가 가능한 영문약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영문약관과 국문약관의 차이점은 보험요율과 담보위험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보험요율의 경우 영문약관은 외국재보험자가 산출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며 정부의 사전인가 등의 절차가 불필요하지만 국문약관은 개별 보험회사가 직접 산출하는 요율이기 때문에 현재는 정부의 인가를 거친 제출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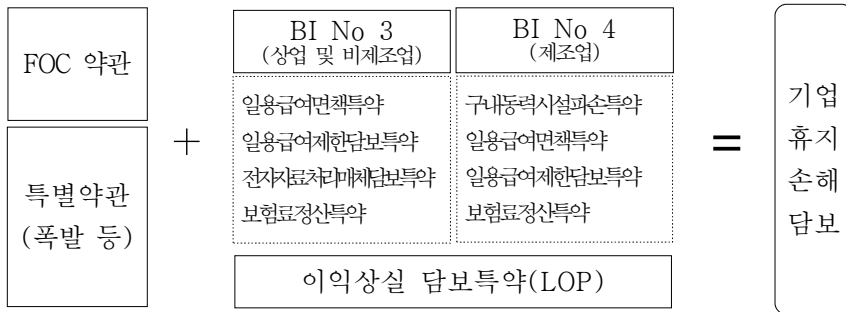
---

35)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영문약관에는 1968년 8월 20일에 인가를 받은 F.O.C(Foreign Policy)과 1971년 8월 17에 인가받은 American Standard Fire Policy와 기타 영문약관(Commercial Union Fire Policy;1983.6.3,Korea Pacific Chemical Fire Insurance Policy;1977.12.31)이 있다. 이와 같은 영문약관은 계약자들이 국문약관을 사용하는 것보다 보험요율이 낮다는 이유로 영문약관을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나 당시 재무부에서 1973년 2월 21일에 ①증권당 보험가입금액이 300만불을 초과하는 물건, ②외국인 소유물건, ③외국의 차관 또는 합작투자업체 물건에만 한정하여 영문약관의 사용을 허용하는 “영문약관 사용제한 지침”을 시달하였다. 이로 인해 화재보험에 서는 약관 및 요율의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표 IV-1> 화재보험의 국·영문약관 비교

구 분	국 문 약 관	영 문 약 관
보통약관	화재보험보통보험약관	FOC Form American Standard Fire Policy
적용물건	제한없음	증권당 300만달러이상, 외국차관업체 등
보험요율	국내사 산출, 적용	재보험자 산출적용

<그림 IV-1> 영문약관 기업휴지보험특약 종류



기업휴지보험은 부보한 재물의 화재위험이 먼저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화재보험보통약관에 특약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통약관에 따라 특성이 있다. 최초의 기업휴지보험은 1970년 9월 24일 미국식(gross earning form) 기업휴지보험특별약관(제조업체용)이 영문화재보험약관(FOC policy)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인가되었다. 그 후 1983년 2월 4일에는 영국식 이익보험약관(loss of profits)과 상업 및 비제조업체용(gross earning form no.3 상업용, gross earning form no.4 제조업체용)의 미국식 기업휴지보험 약관이 인가되어 판매되기 시작하였다.<sup>36)</sup>

36) 또 하나의 기업휴지보험인 기계보험의 기업휴지보험은 1970년 10월 22일 서독식 기계이익보험특별약관(loss of profits machinery breakdown insurance standard policy)이 기계보험보통약관에 첨부되는 형태로 인가되었다. 1976년 4월 24일에는 미국식 기업휴지보험특약(use and occupancy endorsement actual loss sustained, no specified daily indemnity)이 미국식 기계보험약관(Boiler and Machinery Policy)에 첨부하는 약관으로 인가

<표 IV-2> 영문 화재보험의 기업휴지보험 실적

(단위 : 건, 천원, %)

구분	연도	계약건수	보험료	보험금	손해율
일반	1986	3	3,382	-	-
	1990	5	56,619	-	-
	1995	2	33,504	-	-
	2000	-	-	-	-
	2005	1	8	-	-
	2006	1	261	-	-
공장	1986	17	225,969	-	-
	1990	23	194,896	4,214,644	2,162.5
	1995	16	11,976,529	-	-
	2000	-	-	-	-
	2005	-	-	-	-
	2006	-	-	-	-
계	1986	20	229,351	-	-
	1990	28	251,515	4,214,644	1,675.7
	1995	18	12,010,033	-	-
	2000	-	-	-	-
	2005	1	8	-	-
	2006	1	261	-	-

현재 운영 중인 영문 기업휴지보험약관은 미국식과 영국식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담보방식, 보험금액 결정, 보상방식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담보방식의 경우 영국은 총이익 방식(gross profit)인 반면에 미국은 총수익 방식(gross earning)이다. 영국식의 경우 총이익의 결정은 가산방식과 차액방식이 사용된다. 가산방식은 영업이익(net profit)에 보험가입경상비를 합한 금액이 되며,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가입경상비에서 영업손실과 보험가입경상비의 곱을 총경상비로 나눈 값이 이에 해당된다. 차액방식의 경우에는 매출과 기말재고액의 합계에서 기초재고금액과 기중 구입비와 특정변동비용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미국식의 총수익방식은 기업휴지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되었다. 오해송(1996), p. 116

없는 비용을 공제한 총수익의 감소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휴지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총수익의 산출이 중요하다. 총수익은 제품의 순판매액, 구입상품(재판매를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의 순판매액,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기타 수입의 합에서 생산의 원천이 되는 원재료, 원재료를 제품으로 하는데 소요되는 소모품비 등을 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영문약관의 상품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3> 영국식 및 미국식 약관의 비교

구 분	영국식 기업휴지보험	미국식 기업휴지보험
약관명	이익상실담보특약(Loss of Profit)	기업휴지담보특약(상업, 제조업체)
담보방식	총이익(gross profit) 순이익+부보경상비	총수익(gross earning)
인수형태	특약담보	특약
담보위험	화재, 폭발 등 담보위험 명시(국내는 보통약관의 담보위험)	보통약관의 담보위험
보험금액	연간총이익(annual gross profit)	연간총수익×약정부보비율
요율요소	기본담보요율, 약정복구기간	기본담보요율, 약정부보비율
복구기준	매출액복구	손상된 재산의 물리적 복구
보상기간	약정복구기간 한도내	보험금액의 한도까지 기간에 무관하게 보상(통상 1년)
가입금액 감액	감액됨	사고후 자동복원
손해보상후 사업중단	보험금 불지급	보험금지급
손해액	영업수익감소액×총이익율+감소방지 비용(특별비용)	총수익감소액·비지속비용+손해경감 비용
보상방식	손해액×가입금액/가액	손해액×가입금액/(가액×부보비율) : 약정부보비율방식
요율	동산요율이 기초요율(재물요율보다 높다)	건물요율이 기초요율(재물요율보다 낮다)
보상방법	비례보상적용	비례보상 적용

자료 : 이종섭(2004), pp.182-226에서 비교 정리함

## 2) 국문약관

기업휴지 등의 특별한 리스크에 대한 국내에서의 경험통계가 축적되지 못하고 자체적인 가격산출이나 리스크관리에 대한 수요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두되자 해외 재보험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고,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 시장에서는 활용되지만 국내에는 상품이 없는 확장담보특약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의 영향을 받아 1987년 11월 2일에 기업휴지보험특약이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표 IV-4> 국문 화재보험의 기업휴지보험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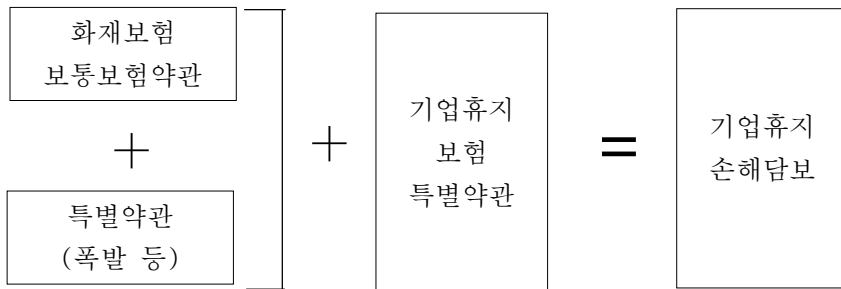
(단위 : 건, 천원, %)

구 분	연 도	계약건수	보험료	보험금	손해율
일 반	1986	1	132	-	-
	1990	4	3,008	21,846	726.3
	1995	20	17,838	-	-
	2000	27	27,029	-	-
	2005	7	44,473	2,263	5.1
	2006	12	55,719	-	-
공 장	1986	7	24,482	-	-
	1990	17	85,792	-	-
	1995	54	291,887	-	-
	2000	19	144,772	-	-
	2005	15	147,112	70,000	47.6
	2006	13	180,034	164,916	91.6
계	1986	8	24,614	-	-
	1990	21	88,800	21,846	24.6
	1995	74	309,725	-	-
	2000	46	171,801	-	-
	2005	22	191,585	72,263	37.7
	2006	25	235,753	164,916	70.0

국문약관의 시장규모는 연 20여건의 기업휴지보험특약 계약이 체결되고 있지만 보험료는 2억원 정도에 불과하며, 상업용 물건(commercial property)이 주로 가입하는 일반물건을 보면 10건 내외로 보험료가 1억원이 되지 않는 아주 미약한 실정에 있다. 이에 비해 제조업 등이 가입하는 공장물건의 경우에는 연간 계약건수는 10건이 조금 넘으며 보험료도 2억원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문기업휴지 특약은 영문약관과 동일하게 보통약관에 특약형태로 첨부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화재 이외의 위험(peril)으로 인한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담보하도록 되어 있다. 국문 기업휴지보험특별약관에 규정되고 있는 확장담보위험은 폭발, 풍수재해, 전기, 소요노동쟁의, 차량위험, 악의적인 파괴행위 등이 있다.

<그림 IV-2> 국문기업휴지보험 상품의 운영체계



국문약관에서 기업휴업손해를 담보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을 소유한 구내의 재산에 대한 유효한 재물보험계약이 존재해야 하고 그 계약에 의해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거나 지출책임이 인정된 경우에 손실을 보상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material damage proviso). 따라서 계약자가 기업휴지위험만을 떼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의 역선택이나 도덕적 위태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문 기업휴지보험약관은 일본의 이익보험과 유사하게 총수익방식으로 되

어 있는 동시에 영국식 약관에서 사용하는 복구기간 등을 채용한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담보위험은 미국식의 총수익 방식으로 담보위험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결과 영업이 전부 또는 일부 중단되어 발생한 손실 중 보험가입경상비와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영업이익(net profit)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또한 이때 고려되는 것은 보험계약 체결시 약정한 복구기간(restoration period)과 면책기간(waiting period)인데 실제 지급보험금은 복구기간동안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을 한도로 하나 이를 6개월 등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의 손실액 면책기간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은 식에 의해 산출하여 지급한다.

$$\text{보험금}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 \times \text{약정부보비율}}$$

여기서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begin{aligned} \text{손해액} &= \text{매출액감소액} \times \text{이익률} - \text{비지출고정비} \\ &= (\text{전년도매출액} - \text{복구기간 매출액}) \times \frac{\text{영업이익} + \text{고정비}}{\text{전년도매출액}} \\ &\quad - \text{비지출고정비} \end{aligned}$$

위의 보험금 지급 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계약자의 구내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즉 복구기간 동안 매출액이 없고 복구기간 동안 비지출고정비(지출하지 않은 보험가입 경상비)가 없다면 기업휴지보험계약의 목적이 영업이익과 고정비의 합(보험가입금액)이 됨을 알 수 있다.

국문약관의 보험요율의 적용은 기업휴지를 발생시키는 담보위험에 대한 요율(이를 기초요율이라 함)에 기업휴지보험특약에서 정한 담보조건별 요율요소를 곱하여 산출한다. 기초요율은 기업휴지의 원인이 되는 화재담보요율을 적용하며 화재이외의 다른 위험을 추가로 담보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복구기간계수는 최저 1개월(0.46)에서 최대 36개월(0.87)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면책기간계수는 최저 7일(0.95), 10일(0.925), 14일(0.9), 21일(0.875), 30일(0.8)을 적용한다.

$$\text{기업휴지담보보험료} = \text{기업휴지보험가입금액} \times \text{기초요율} \times \text{면책기간계수} \\ \times \text{복기기간계수} \times \text{약정부보비율계수}$$

약정부보비율계수는 일반물건과 공장물건을 달리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최저 50%, 60%, 70%, 80%, 90%까지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50%의 경우 일반물건 1.39, 공장물건 1.69를 적용한다.

## 나. 재산종합보험(Package All Risk Policy)

### 1) 약관체계

재산종합보험은 하나의 증권으로 화재보험과 같이 화재위험과 같은 하나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monoline)이 아니라 재물손해, 배상책임, 기업휴지손해 등을 하나의 증권으로 포괄적으로 담보하며 해외재보험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상품으로 1968년에 최초로 판매되었다. 동 보험은 다른 나라에서 운영하는 상업용 재물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과 유사한 개념의 보험 상품이다.

재산종합보험은 화재보험의 담보위험 제한, 가격탄력성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체적인 상품으로 도입되어 현재는 기업성 재물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성장하였다. 재산종합보험의 2006년도 보험실적을 살펴보면 8,890건의 계약이 체결되어 6,375억원의 보험료가 수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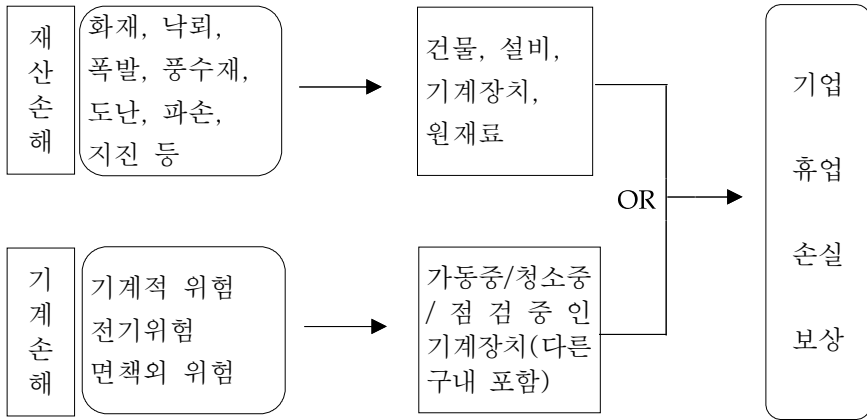
<표 IV-5> 재산종합보험의 담보위험 체계

	담 보 구 성	면책/확장담보	세 부 사 항
Package Insurance Policy	Master Schedule	부보명세서	
	Operative Clause	약관전체 적용특약	보험계약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규정
	General Exclusion	약관전체 면책사항	
	General Condition	약관전체 계약조건	
	Section I : Property All Risks Cover	special exclusion	
		special extension	
		provision applying to	
	Section II : Machinery Breakdown Cover	special exclusion	
		special extension	
		provision applying to	
	Section III : Business Interruption Cover	special exclusion	
		provision applying to	gross profit basis standing charging basis
		additional memoranda application to	off-premises power
	Section IV : General Liability Coverage	special exclusion	
special extension 1		pollution liability Employer's Liability	
special extension 1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Cover(복미수출부담보)	
provision applying to			

재산종합보험의 약관구성을 보면 공통적용사항(Operative Clause), 제1부문 재산손해조항(Section I : Property All Risks Cover), 제2부문 기계파손 조항(Section II : Machinery Breakdown Cover), 제3부문 기업휴지손해조항(Section III : Business Interruption Cover), 제4부문 배상책임조항(Section IV : General Liability Coverage)의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휴지손해담보는 제2부문의 재물손해조항 또는 기계위험담보조항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보험에 가입한 목

적물<sup>37)</sup>에 물적 손해(physical damage)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이익감소를 보상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림 IV-3> 재산종합보험의 기업휴지손해 담보체계



재산종합보험에서 담보하는 기업휴지보험실적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나 2006년 기준으로 회사들이 제공하는 통계에 기초하여 이를 추정하여 보면 800억원<sup>38)</sup> 정도로 보인다. 보험회사들이 재산종합보험의 담보별 세부 통계자료를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기업휴지담보의 계약건수와 보험료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을 기준으로 계약건수는 625건이며 보험가입금액은 34조 1,283억원에 이르고 있고, 보험료는 258억이다. 또한 재산종합보험의 기업휴지담보 가입현황을 보면 2002년 22%에서 2006년에는 9.5%로 낮아져 있는 상태에 있다.

37) 보험목적물에서 제외되는 것은 현금, 금은괴, 동전, 수표/인지, 미술품, 문서, 장부, 컴퓨터, 설계도 등 고가품, 건축/조립 기계적 성능시험을 포함한 시운전중인 재물 및 그로 인한 기업휴지손해, 육해공 운반용구, 동물/조류/어류 등 생명체, 임목 또는 채배적인 작물, 토지/도로/차도/활주로/운하/댐/터널, 지하의 재물/터널내부의 파이프, 해상외의 재물, 운송중인 상품이나 재물, 가공생산 과정에 투입된 촉매 및 소모성 재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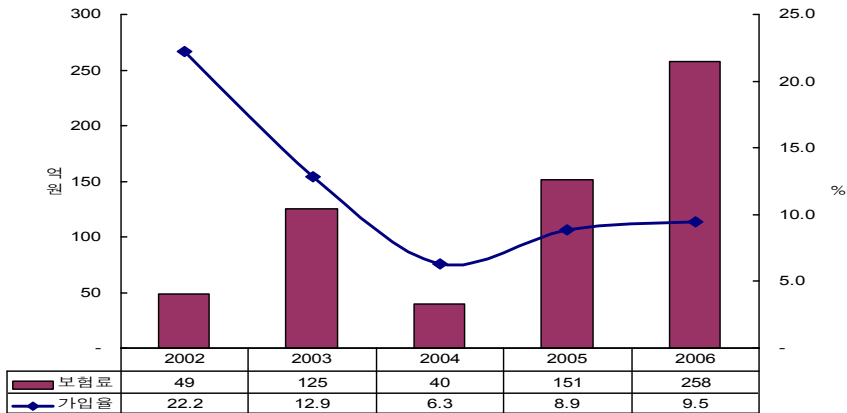
38) 2006년 재산종합보험의 보험료(6,376억)에 세부담보 합계 보험료 중 BI보험료 비중(12.1%)을 곱하여 추정시 773억원이 산출됨.

<표 IV-6> 재산종합보험의 기업휴지 담보 현황

(단위 : 건,억원,%)

연 도	건 수	보험금액	보험료	사고건수	보험금	손해율
2002	139	20,302	49	43	35	71
2003	381	97,940	125	7	45	36
2004	305	44,505	40	-	-	-
2005	573	458,157	151	1	3	2
2006	625	341,283	258	95	94	37

<그림 IV-4> 재산종합보험의 기업휴지 보험료 및 가입율 추이



## 2) 기업휴지손해담보 내용

재산종합보험의 기업휴지손해 담보는 영국식인 총이익기준(gross profit basis)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약관의 규정방식은 화재보험이 영국식과 미국식을 혼합한 하나의 형태인 것에 비해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재산종합보험의 담보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 기준을 보면 이 증권 하에서 보상하는 손해액은 재산종합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재산손해담보와 기계과손 담보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매출액이 감소됨에 따른 총이익(gross

profit)의 손실과 매출액의 감소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해 지출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 즉 특별비용(increase in cost of working)이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부보경상비만을 담보 받고자 할 경우에 대비하여 경상비보상조항(standing charge basis)을 따로 두고 있다. 이 경우에 보상하는 손해액은 총 이익방식과 마찬가지로 재산손해담보 또는 기계파손부문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보상기간동안의 매출액의 감소로 인한 부보경상비와 특별비용을 포함한다.

재산종합보험에서 기업휴지손해담보는 화재보험과 비교할 경우 담보위험에 의한 물적 사고를 전제로 하는 것은 동일하나 담보위험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화재보험의 기업휴지손해담보특약은 화재위험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위험은 특약을 첨부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재산종합보험에서는 재산손해조항에서 면책<sup>39)</sup>으로 하고 있지 않은 화재, 낙뢰, 폭발, 풍수재, 지진, 도난, 파손 등 모든 위험으로 인한 기업휴업손해를 보상한다. 또한 재물담보조항은 종합위험(all risk) 담보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고 동맹파업, 폭동 및 소요(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로 인한 손해의 경우 특별약관을 첨부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기계위험담보에서의 기업휴지 손해는 공장 구내에서 가동 중인 기계장치에 담보하는 원인<sup>40)</sup>에 의해 수리 또는 대체가 필요한 급격하고 우연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기업휴지손해담보조항은 물적 사고나 기계적 사고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특별면책사항(special exclusion to section III)을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39) 재물손해담보에서 제외하는 위험은 누출 및 오염으로 인한 손해와 비용, 고의적으로 설계허용치 또는 안전한도를 초과한 운전, 작업철회 등 태업, 침하/사태/토양의 수축이나 팽창, 자연발화/침식 등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손해, 발효/증발/품질의 변화에 의한 손해, 기계/전자/전기 장치 등의 고장/장해/파열, 단락/자체발열/누전/과전류/과전압, 결합부품/작업하자/설계상의 결함, 잔존물제거비용/청소비확장담보에서 담보하지 않은 비용, 저장용기내의 내용물의 누출/넘침 등이다.

40) 기계사고담보원인은 ① 재질결함, 설계결함, 건설 및 조립상의 결함, ②진동, 오조절, 느슨한 부품, 피로현상, 원심력, 윤활유 부족, 부분적 파열, 안전장치의 고장이나 결함, 연결된 기계의 고장이나 결함 등으로 인한 우연한 가동 중 사고 ③전압의 과부족, 절연실패, 단락, 정전기 ④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자질이나 기술부족 또는 과실 ⑤ 추락, 충격, 충돌 또는 이와 유사한 사고, 이물질의 유입 또는 이에 의한 장애 등이다.

① 건물이나 구축물의 건축 또는 수리를 규제하는 법령, ②리스, 면허, 계약 또는 주문의 중지, 소멸 또는 취소 ③ 물적 손해의 복구 또는 조업의 재개나 지속이 동맹파업자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방해됨으로써 증가된 손해, ④진행 중인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결과적 기업휴지손해, 예정이익 상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하지 않는다.

기업휴지보험금은 보상기간동안에 발생한 매출액 감소로 인한 총이익의 손실액(표준매출액<sup>41</sup>-실제매출액)×총이익율)과 매출액의 감소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해 지출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인 특별비용(increasing in cost of working)의 합에서 총이익(gross profit)<sup>42</sup>에 포함된 비용 중 조업이 중단 또는 휴지됨으로써 지출이 중지되거나 감소된 비용은 제외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이러한 보상방식을 화재보험과 비교하는 경우 재산종합보험에서는 약정보비율이 없어 비례보상이 적용되며, 가입금액은 보험금 지급 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복원을 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한 재산종합보험의 기업휴지손해담보에서는 추가특약을 첨부하여 우발적 간접손실(contingent business interruption loss)을 담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화재보험의 기업휴지보험과 큰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추가조항으로는 구외동력시설 파손으로 인한 기업휴지확장담보(off premise power clause), 고객업체의 사고로 인한 기업휴지 확장담보(customers extension clause)가 있다. 전자의 경우 계약자가 부보한 공장 구외에서 전력, 가스 또는 동력,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기업휴지가 발생한 경우를 확장 담보하며, 후자의 조항은 명기된 고객의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초래된 기업 휴지손해를 사고 당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한다.

41) 표준매출액은 사고일 직전 12개월로부터 보상기간에 대응하는 기간의 매출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07년 6월 1일 사고가 발생하고 보상기간이 3개월인 경우의 표준매출액은 2006년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의 매출액을 말한다.

42) 총이익은 (매출액 + 기말재고자산)-(기초 재고자산+변동비), 총이익률은 사고 직전 회계 연도의 매출액에 대한 총이익의 비율이다.

### 3) 보험요율 적용

재산종합보험의 기업휴지담보에서는 보험료 정산조항(premium adjustment clause)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서 과거 1년간의 총이익에 기초한 보험료를 산출하고 이의 75%를 잠정보험료로 낸 뒤 보험기간동안의 총이익이 확정된 경우 보험료를 정산하되 추징 환급하는 보험료는 잠정보험료의 1/3이 한도가 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재산종합보험은 해외 보험시장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된 보험 상품에 해당되며, 1968년 상품 도입초기부터 해외 재보험자가 제시하는 보험요율을 구득하여 사용하여 온 관계로 요율수준이나 요율산출체계 등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계약 실적이나 손해율 실적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재산종합보험을 활용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서는 리스크 전가비용인 보험료가 정확하게 추정될 필요성이 있으나 그 자체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보험산업이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해외 재보험자들에게 가격 산출을 의존하고 있는 것은 국내 기업휴지보험의 비활성화의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보험산업의 글로벌 경쟁에 있어서도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자체적인 요율산출 체계의 확립을 통해 기업휴지보험의 활성화뿐 아니라 국내 보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의 제고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국내 기업들의 활용사례

국내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의 활용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인터넷에서 2000년 이후 화재 등으로 재물 손해가 발생한 공장을 찾고 이들을 다시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한 기업과 가입하지 않은 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이 결과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한 4개 기업과 가입하지 않은 4개 기업이 추출되었다.

이들 기업들의 보험가입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전자 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활용하였다.

국내 기업 중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증권거래법 제186조<sup>43)</sup>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에 의거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휴업등으로 당해 법인의 재산상 변화가 다음 중의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발생한 날 일익까지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가. 최근 사업연도 생산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 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때 및 당해 중단 및 폐업사유가 해소되어 생산 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된 때, 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을 때 (그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반납과 그에 상당하는 생산품에 대한 판매활동의 정지를 포함한다), 다. 천재·지변·전시·사변 또는 화재 등으로 인

43) 제186조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등) ①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사실상 정리를 개시한 때
4.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결의가 있을 때
5. 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때
6.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유가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7. 「상법」 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제527조의3 및 제530조의2에서 규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8.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9. 증자, 감자 또는 주식(외국주식을 포함한다)의 소각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10.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조업을 중단하거나 조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11. 거래은행에서 당해 법인의 관리를 개시한 때
12. 자기주식(자기외국주식을 포함한다)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결정이 있을 때
13. 제1호 내지 제12호외에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하여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2.5) 이상의 재해(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발생한 때, 라.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또는 1,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 이다.

이하에서는 이들 기업의 공시자료에 기초하여 화재사고에 따른 휴업 리스크관리를 보험을 활용한 경우와 활용하지 못한 기업들 간의 성과의 차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 가. 기업휴지보험 가입 사례

### 1) A 사

A사는 00공업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석유화학업체로 이 공장의 사고는 2003년 10월 3일 고밀도폴리에틸렌 제3공장에서 발생하였다. 사고원인은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중에 공정 내 반응기의 순환 배관 내에 설치된 스트레너에서 막힘 현상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배관을 해체하고 스트레너를 청소하는 작업 중에 반응기에서 핵산이 누출되어 일어난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였다. 이로 인해 이 업체는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해졌고 2004년 2월 26일이 되어서야 조업을 재개하여 4개월 23일 동안 조업 중단기간을 경험하였으며 당시 공시한 피해액은 900억원으로 알려졌다.

동 기업은 재해에 대비하여 국내 5개 손해보험회사와 재산종합보험(property all risk policy)을 가입하고 있었다. 가입내역을 보면 재산보험금액 1,435,000달러, 기업휴지보험은 3,750억원이며 보상기간은 18개월로 하였고, 제3자 배상책임은 1억 1천 달러를 가입했으며 사고 당 보상한도액은 5억 달러였다. 동 기업은 화재로 인한 휴업기간이 4개월이 초과했음에도 재물손해와 기업휴지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여 경영성과를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주가의 변동도 거의 보이지 않아 주식 투자자들로 부터도 저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당시 애널리스트들은 A사는 화재로 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4분기의 영업이익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재산손해와 휴업손해를 가입한 보험에서 손실을 보상받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주가의 급작스런 변동은 없었다<sup>44)</sup>.

실제로 동 기업의 화재 피해액이 자본금의 56.5%, 2002년 영업이익의 165.6%에 해당하는 큰 손해였음에도 보험의 가입으로 인해 화재사고를 복구하기 위한 외부 자금의 조달을 하지 않는 등 재무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동사의 사고 당시에 비해 2년 후의 재무적인 성과를 보면 자산은 1.7배 증가한 반면 부채는 1.2배 증가에 그쳤고, 매출액은 1.4배 영업이익은 2.0배, 당기순이익은 2.4배나 증가했다. 또 부채비율은 사고당시 54.5%에서 2년 후에는 33.5%로 오히려 40%나 줄어들었다. 물론 이는 보험가입에 따른 전적인 효과로만 볼 수는 없지만 보험가입의 효과가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44) 머니투데이, 2003.10.21

<표 IV-7> A사의 사고 전 후 경영성과 비교

(단위 : 억원, %)

구 분		2005	2004	2003	2002	2001
자산	유동자산	9,377	6,485	4,044	3,869	3,483
	비유동자산	18,538	16,698	12,860	9,303	10,292
	자산계	27,915	23,183	16,904	13,172	13,774
부채	유동부채	5,460	3,336	2,956	2,783	3,778
	비유동부채	1,553	3,742	3,007	1,440	1,621
	부채계	7,013	7,078	5,964	4,223	5,399
자본	자본금	1,593	1,593	1,593	1,593	1,593
	자본잉여금	4,736	4,736	4,736	4,736	4,736
	이익잉여금	14,341	9,654	4,499	2,416	1,868
	자본계	20,902	16,105	10,941	8,950	8,375
영업 성과	매출액	21,128	19,521	14,603	12,297	9,898
	영업이익	3,401	3,855	1,720	544	130
	계속사업이익	6,145	6,728	2,826	694	91
	당기순이익	5,114	5,353	2,107	595	74
	ROE	24.5/17.0	33.2/24.5	19.3/9.4	6.7/7.3	0.9/-1.6
	ROA	18.3/7.9	23.1/11.3	12.5/3.6	4.5/2.6	0.5/-0.6
	부채비율	33.5/124	43.9/116	54.5/164	47.2/182	64.5/181

주: 1) 사고일자는 2003년 10월 3일임.

2) ROE, ROA, 부채비율의 오른쪽에 있는 수치는 당해 연도 동종업계 평균 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2) B사

B사는 총자산이 8조 5,000억원, 자본금이 4,195억원이나 되는 대형 기업체이다. B사는 2008년 3월 3일 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보일러실, 공조실 및 조립시설의 일부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재산피해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생산시설을 3개월 중단해야 하며 이로 인한 매출액이 90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었다. 이는 동사의 2007년 연간 매출액 10조 9,037억원의 0.73%를 차지하는 것이다.

<표 IV-8> B사의 사고전후 경영성과 비교

(단위 : 억원, %)

구 분		'08 3분기	'08 2분기	'08 1분기	'07 4분기	'07 3분기
자산	유동자산	38,224	32,246	30,025	29,619	22,384
	비유동자산	46,882	43,903	42,135	41,880	40,029
	자산계	85,106	76,149	72,160	70,499	62,413
부채	유동부채	28,204	22,810	19,639	20,302	18,962
	비유동부채	9,138	9,271	12,573	11,415	11,842
	부채계	37,342	32,081	32,212	31,717	30,804
자본	자본금	4,195	4,195	4,195	4,195	3,654
	자본잉여금	13,121	12,994	12,994	12,993	7,396
	이익잉여금	29,751	26,781	22,926	21,991	20,733
	자본계	47,764	44,068	39,948	38,781	31,609
영업 성과	매출액	40,648	37,380	34,481	30,037	27,633
	영업이익	4,429	4,814	3,788	2,211	2,523
	당기순이익	2,970	3,855	2,584	1,258	2,107
	ROE	6.22	8.75	6.47	3.24	6.67
	ROA	3.49	5.06	3.58	1.78	3.38
	부채비율	78.2	72.8	80.6	81.8	97.5

주: 사고일자는 2008년 3월 3일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B사는 00손해보험회사에 총 보험가입금액 8,920억원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이중 기업휴지보험은 2,604억원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사고로 인한 리스크관리대책을 미리 준비하여 놓았기 때문에 외부자금의 동원을 하지 않고 보험금을 이용하여 사고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동 회사의 사고가 발생한 2008년 1분기 전후의 경영성과를 비교하여 보면 큰 영향 없이 안정적인 수익달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증권시장에서도 화재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등을 이유로 B사의 주식에 대한 매수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sup>45)</sup>.

## 나. 기업휴지보험 미가입 사례

### 1) C 사

C사는 육계를 공급하는 업체로 연간 매출액이 3,000억원이 넘는 기업이다. 동사는 2003년 5월 12일 오전 2시에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유형자산, 재고자산 및 리스자산이 소실되어 2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규모는 2002년도 자산총액의 9.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동사의 주력공장으로 동사의 2002년 생산액 3,263억원의 62%인 2,016억원을 생산하고 있어 기업경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동사는 00손보사에 보험가입금액 195억원의 화재보험만 가입하고 기업휴지손해담보특약은 가입하지 않고 있었으며, 보험금은 2003년 10월 23일에 확정되어 화재보험금으로 173억원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동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통해 리스크관리를 하였지만 조업중단에 따른 매출액 감소와 영업손실, 고정비용의 지출과 같은 영업리스크(business risk)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경영상의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을 다음의 경영성과 지표를 통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동사는 화재사고로 인해 11개월 동안이 조업이 중단되고 2004년 4월 13일 에서야 생산을 재개하는 동안 관계사인 ○○사를 통해 거래처에 매출하는 형태로 조업활동을 유지하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IV-9> C사의 사고 전 후 경영성과 비교

(단위 : 억원, %)

구 분	2005	2004	2003	2002	2001	
자산	유동자산	1,105	1,065	1,214	1,168	1,190
	비유동자산	1,646	1,603	1,301	969	937
	자산계	2,750	2,668	2,515	2,137	2,127
부채	유동부채	737	1,523	1,460	763	985
	비유동부채	909	690	724	579	361
	부채계	1,646	2,213	2,184	1,342	1,346
자본	자본금	367	267	267	267	267
	자본잉여금	469	250	250	250	250
	이익잉여금	259	-64	-191	239	224
	자본계	1,104	455	330	794	781
영업성과	매출액	3,655	3,853	3,263	3,276	4,098
	영업이익	286	129	-391	2	157
	계속사업이익	329	148	-468	33	84
	당기순이익	315	135	-430	22	52
	ROE	28.5/6.8	29.6/2.8	-130.3/-12.9	2.8/6.6	6.7/15.0
	ROA	11.4/2.1	5.0/0.8	-17.1/-2.4	1.0/1.9	2.5/4.2
	부채비율	149/223	486/260	662/427	169/253	172/259

주: 1) 사고일자는 2003년 5월 12일임.

2) ROE, ROA, 부채비율의 오른쪽에 있는 수치는 당해 연도 동종업계 평균 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만약에 동사가 조업이 중단되는 기간 동안에 휴업손실을 담보하는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다면 영업성과가 급격히 악화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사가 기업휴지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손실과 고정비 지출을 담보받기 위해 가입해야 할 보험가입금액은 2002년 기준으로 산출하여 본 결과 3,560억원에 추정되는데 만약 동사가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했다면 11개월 동안의 조업중단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해에 대해 많은 부분을 보상 받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화재사고와 기업휴지손실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의 실패로 동사의 영업성과는 엄청난 악화를 초래하였는데 화재발생 당해년도인 2003년에는 391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43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화재사

고로 인한 공장 복구를 보험금을 이용하여 보전했다더라도 다른 생산채널을 이용하거나 종업원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이 필요했기 때문에 외부자본을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부채비율은 2002년 169%에서 2003년 662%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재물손해와 간접손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기업의 경영성과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 D 사

D사는 음식료품 및 담배 등 필수 소비재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 경기의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체이다. 동사는 2006년 4월 24일에 화재가 발생해 공장 건물 1동이 전소되고 그 안에 설치된 기계장치와 원부자재 및 제품이 소실되어 35억원의 재산손실이 발생했다. 이 피해규모는 2005년 총자산 654억원의 5.3%에 불과하나 당기순이익 10억원에 비하면 엄청난 규모에 해당한다. 또한 이로 인해 최대 3개월 동안 조업이 중단되었다.

동사의 경우 보험리스크관리 대책으로 재물손해만을 담보하는 화재보험을 00화재와 00화재에 보험가입금액 202억원으로 가입하였고, 휴업손실을 담보하는 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화재사고 보험금은 2008년 5월 소송으로 전개되어 90억원의 보험금 지급판결이 난 상태였고, 따라서 동사는 화재사고 이후 생산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비용의 상당부분을 외부자금 등을 통해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실제로 D사의 2006년의 부채비율은 167%였으나 2007년에는 447%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또한 화재발생 해인 2006년의 재무성과를 보면 매출액이 감소하고 영업손익이 16억 이익에서 42억원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영향은 다음년도까지 계속되어 2007년의 영업성과는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D사의 사고 전 후 경영성과 비교

(단위 : 억원, %)

구 분	2007	2006	2005	2004	2003	
자산	유동자산	514	527	245	243	231
	비유동자산	972	587	409	355	421
	자산계	1,486	1,114	654	597	653
부채	유동부채	825	404	219	234	205
	비유동부채	389	293	137	73	135
	부채계	1,214	696	356	307	339
자본	자본금	225	225	225	225	225
	자본잉여금	62	62	62	88	237
	이익잉여금	-7	130	10	-26	-149
	자본계	272	418	298	291	313
영업성과	매출액	806	662	721	692	643
	영업이익	-86	-42	16	5	-67
	계속사업이익	-137	120	10	-26	-149
	당기순이익	-137	120	10	-26	-149
	ROE	-50.5/8.8	28.7/10.6	3.4/11.1	-8.9/8.0	-47.6/8.2
	ROA	-9.2/3.1	10.8/4.0	1.6/5.6	-4.3/5.7	-22.9/4.7
	부채비율	446.7/166	166.7/103	119.6/94	105.4/86	108.3/87

주: 1) 사고일자는 2006년 4월 24일임.

2) ROE, ROA, 부채비율의 오른쪽에 있는 수치는 당해 연도 동종업계 평균 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다. 기업휴지보험 가입 효과 비교

국내의 상장회사들은 재해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나름대로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국내 상장기업들일지라도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리스크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공장 건물이나 제조설비, 원부자재 등에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재물손해와 조업중단에 따른 휴업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큰 사고인 경우에는 종업원의 인명피해와 인접공장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손해까지 발생하기도 하며, 사업실패(business failure)<sup>46)</sup>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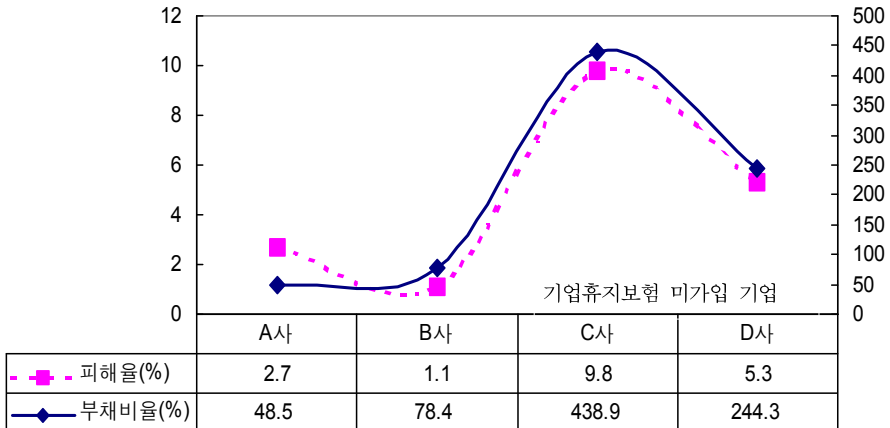
따라서 기업들이 이러한 리스크발생에 대비해 완전한 보험가입 즉 재물손해담보와 기업휴지손해담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나 사고가 발생할 때, 성과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기업이 만약 완전하게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재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험금으로 충당하여 신속한 복구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자금을 차입하거나 기업내부에 유보하고 있는 잉여금으로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조달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본 연구는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한 기업군(보험 가입)과 그러하지 않은 기업군(보험 미가입)간의 효과를 사고 발생전후의 부채비율, ROE,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율, 영업레버리지율(DOL)(율) 비교를 통해 기업휴지보험의 가입이 어떻게 재해나 사고를 경험한 기업의 경영성과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먼저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한 기업들의 경우 사고연도에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은 외부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을 볼 수 있다(<그림 IV-5> 참조).

---

46) 호주의 경우 기업에게 화재 등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70%는 사업실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Peter Jones(2007),p.2

<그림 IV-5> BI 보험가입여부에 따른 부채비율 차이



두 번째로는 사고가 발생하면 영업레버리지(DOL)가 크게 증가하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이는 사고 기업이 폐업하거나 해당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고정 비용은 지속적으로 지출되며 매출액은 감소되기 때문에 영업레버리지 비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영업레버리지는 기업휴직보험을 가입한 기업과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서 사고 후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기업휴직보험 미가입기업의 영업레버리지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상 조업을 하는 과정일지라도 영업레버리지가 높으면서 변동가능성이 큰 기업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상의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업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기업은 기업휴직보험의 가입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표 IV-11> 기업휴지보험 가입효과 차이(부채비율, DOL)

구 분		AY <sub>t+2</sub>	AY <sub>t+1</sub>	AY	AY <sub>t-1</sub>	AY <sub>t-2</sub>	평균	편차	CV	
부채 비율	보험 가입	A사	33.5	43.9	54.5	47.2	64.5	48.5	5.4	0.10
		B사	78.2	72.8	80.6	81.8	97.5	78.4	4.9	0.06
	보험 미가입	C사	149.1	486.3	661.5	168.9	172.4	438.9	249.7	0.57
		D사	920.5	446.7	166.7	119.6	105.4	244.3	176.8	0.72
DOL	보험 가입	A사	28.2	43.4	51.0	17.2	312.6	37.2	17.7	0.48
		B사	11.8	35.4	35.5	13.0	75.1	28.0	13.0	0.46
	보험 미가입	C사	79.0	88.1	2,976.2	18.9	10.4	1027.7	1687.7	1.64
		D사	70.2	31.0	98.5	39.5	145.5	56.3	36.8	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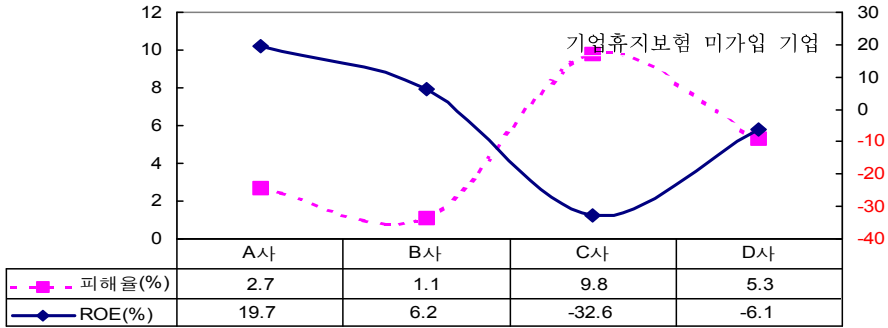
주 : 1) B사는 분기실적이며, D사의 AY<sub>t+2</sub>은 연도의 반기실적임.  
 2) 직전결산기의 총자산대비 피해액 비율은 A가 2.7%, B사 1.1%, C사 4.8%, D사 5.3%임  
 3) 평균, 표준편차, 변동계수(CV)는 사고전후 3년간임.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자료 재가공함

세 번째로는 기업휴지보험 가입기업들과 그러하지 않은 기업들과의 경영성과에서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보면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고전년에 비해 영업이익이 전년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하고 다음년도에 그 추이를 이어가나,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고 당해년도에 큰 폭의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C사와 D사의 경우의 사고당해년도 영업이익률이 전년도 이익에서 각각 -12.0%, -6.3%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경영성과의 차이는 기업휴지보험의 가입 여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 화재 등으로 인한 재물손해 외에도 매출액 감소와 고정비 지출을 보상해주는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기업들은 영업이익의 손실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정비의 손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재해나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IV-6> BI 보험가입여부에 따른 ROE 비교



<표 IV-12> 기업휴지보험 가입효과 차이(ROE, 영업이익율)

구 분		AY <sub>t+2</sub>	AY <sub>t+1</sub>	AY	AY <sub>t-1</sub>	AY <sub>t-2</sub>	평균	편차	CV	
영업 이익율	보험 가입	A사	16.1	19.7	11.8	4.4	1.3	12.0	7.7	0.64
		B사	10.9	12.9	11.0	7.4	9.1	10.4	2.8	0.27
	보험 미가입	C사	7.8	3.4	-12.0	0.1	3.8	-2.7	8.1	2.83
		D사	-11.8	-10.7	-6.3	2.3	0.7	-4.9	6.6	1.34
ROE	보험 가입	A사	24.5	33.2	19.3	6.7	0.9	19.7	13.3	0.67
		B사	6.2	8.7	6.5	3.2	6.7	6.2	2.8	0.45
	보험 미가입	C사	28.5	29.6	-130.3	2.8	6.7	-32.6	85.6	2.62
		D사	-85.6	-50.5	28.7	3.4	-8.9	-6.1	40.5	6.63

주 : B사는 분기실적이며, D사의 AY<sub>t+2</sub>은 연도의 반기실적임.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자료 재가공함

### 3. 기업의 기업휴지보험 인식

#### 가. 조사방법 및 응답자 수

국내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의 활용현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기업휴지보험 담당부서를 이용한 방법과 우편발송 방식을 병행하

여 설문조사를 2008년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다. 보험회사의 기업휴지보험 담당 부서에 자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제시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렇게 회수된 것은 56부이다. 우편발송 방식은 상장회사 명부에서 무작위로 498개 기업을 선정하고 반송용 봉투로 다시 받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서는 17부가 회수되었다. 따라서 설문조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된 사업체는 총 73개 업체이며 업종별 분포 및 매출액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13> 설문 응답 기업체의 업종별, 매출액별 분포

구 분	세부업종/매출액	응답기업 수	점유비(%)
업종별	제조업	57	78.1
	건설업	1	1.4
	부동산업	1	1.4
	숙박업	3	4.1
	음식업	2	2.7
	도소매업	6	8.2
	운송업	1	1.4
	서비스업	2	2.7
	계	73	100.0
매출액별	500억 미만	25	34.2
	500억-3000억	23	31.5
	3000억-1조	10	13.7
	1조 이상	15	20.6

## 나. 기업휴지보험 가입 기업체 인식

### 1) 기업휴지보험 가입률

설문에 응한 73개 기업 중 21%인 15개 기업이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실제 보험통계에 의한 가입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

편, 기업휴지보험의 가입률을 응답기업의 매출액 규모별 차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업규모가 큰 기업이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 군에 비해 가입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V-14> 기업 규모별 기업휴지보험 가입현황

(단위: 개, %)

매출액	500억 미만	500억~3000억	3000억~1조	1조 이상
조사 기업수	25	23	10	15
가입 기업수	6	3	1	5
가입율(%)	24.0	13.0	10.0	33.3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출액 500억 미만의 기업은 25개사 중 6개사가 BI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500억~3000억 기업군은 23개사 중 3개사가 BI보험에 가입했고, 3천억에서 1조 사이의 기업은 10개사 중 1개사가 가입했으며, 1조 이상 기업은 15개사 중 5개사가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2000년 1월 이후 재해발생 공시를 한 기업 14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재산종합보험의 기업휴지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집단에서의 가입률은 2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sup>47)</sup>.

## 2) 기업휴지보험 가입이유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한 기업들에게 가입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0%인 9개 기업이 “스스로 기업휴지 리스크관리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가입하였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 사유로는 5개사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해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4개 기업은 “기업휴업손실을 이전에 경

47) 해당하는 기업은 크린엔사이언스, 올촌화학, 디피씨, 기린, 대양제지, 일신방직, 조선선제, 풍경정화, 하림, 호암석유, 톨보이, 호성케믹스, LG화학, SK이며 이중 호남석유(사고당시 자산 1조 6,904억), 호성케믹스( 840억), LG화학(7조 2,160억), SK(1조 3,816억)이며 비교적 대규모기업체이다.

험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기업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은행 등 금융기관이 요청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1개 기업에서 나타났다.

<표 IV-15> 기업들의 보험가입이유 (복수응답)

(단위 : 개)

보험가입 이유	제조업	숙박업	서비스업	합계
기업휴업 손실을 이전에 경험	4	0	0	4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	6	2	1	9
주주(외국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	3	2	0	5
대출 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요청	1	0	0	1

매출액 규모별 기업휴지보험 가입이유를 보면 기업규모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매출액 500억미만과 500억~3000억에 속하는 기업들은 “리스크관리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했기 때문(6개사), “기업휴지 손실을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과 주주 또는 외국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보험 가입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라고 각각 3개사와 4개사가 응답했고, 1개 기업이 대출시 금융기관이 기업휴지보험의 가입을필요로 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들은 설문지의 가입이유에 대해 모두 기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휴지업손실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사업중단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분석된다.

<표 IV-16> 매출액별 기업휴지보험 가입이유 (복수응답)

(단위 : 개)

기업휴지보험 가입이유	500억 미만	500억~3천억	3천억~1조	1조 이상
기업휴업 손실을 이전에 경험	3	0	0	2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	4	2	0	2
주주(외국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	3	1	1	1
대출 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요청	1	1	0	1

### 3) 생산중단시 기업휴지보험의 기여도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한 15개 기업 중에서 5개의 제조업체만 영업중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생산중단기간은 최저 30일에서 최대 180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제조업체 5개 기업들은 기업휴지보험금이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재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휴지보험가입에 따른 효용이 있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매출액 규모별로 볼 때에도 보험효용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매출액이 5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개 회사가 기업휴지보험이 영업중단시 영업정상화에 보통의 도움을 주었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국내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 활용사례 분석에서 본바와 같이 중소기업일수록 BI 보험의 효용이 더욱 크게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 볼 때 의외의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만족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와 자기회사의 리스크 노출정도를 정확히 측정하여 이에 맞는 상품에 가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도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리스크관리 컨설팅을 제공하여 적절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lt;표 IV-17&gt; 기업휴지보험의 영업정상화 도움 정도

(단위: 개사)

매출액	도움이 안되었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었다
500억 미만	-	1	2
500억~3000억	-	-	-
3000억~1조	-	-	-
1조 이상	-	-	2
계	-	1	4

#### 4) 향후 가입의향

현재 기업 휴지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향후에도 기업휴지보험을 계속 가입하겠다는가에 대한 의향을 설문한 결과 93.3%의 기업이 계속 가입하겠다고 답변했다. 업종별로는 큰 차이는 없으나 숙박업과 서비스업은 100% 가입하겠다는 의향이나 제조업의 경우 91%만 계속 가입하겠다고 답변해와 업종 간 미미한 의향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lt;표 IV-18&gt; 가입 기업의 휴지보험 계속 가입의향

(단위: 개, %)

구분	제조업	숙박업	서비스업	합계
현재 가입하고 있는 기업수	12	2	1	15
향후 가입의향이 있는 기업수	11	2	1	14
계속 가입 의향률	91%	100%	100%	93.3%

#### 다. 기업휴지보험 비가입 기업의 인식

##### 1)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58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문을 하여 보았다. 설문조사 결

과, 기업스스로가 38개 기업이 “기업휴업손실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라고 응답해 아주 낮은 리스크관리 인식이 기업휴지보험에 가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의 미가입 요인으로는 보험가입을 하는데 있어 보험료가 높기 때문이라고 33개 기업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기업들은 선진국과 같이 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 가입을 기업을 위한 내부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소멸성 낭비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외의 미가입 이유로 보험상품의 복잡성을 6개사가 들고 있고 기업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어서와 보험회사의 엄격한 보험가입심사 때문이라고 각각 3개사, 2개사가 응답했다. 또한 기업휴지보험 미가입 기업들의 이유를 매출액 규모별로 차이를 보면 매출액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기업휴지손해를 경험하지 않아 앞으로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과 높은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서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로 볼 때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 가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기업휴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고 높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험가입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V-19> 기업휴지보험 미가입 이유 (복수응답)

(단위: 개)

구 분	제조업	숙박업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합 계
낮은 기업휴지 손실가능성	33	1	1	2	1	38
높은 보험료	27	2	1	3	0	33
엄격한 보험가입 심사	2	0	0	0	0	2
상품의 복잡성	6	0	0	0	0	6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3	0	0	0	0	3

## 2) 향후 가입의향

기업휴지보험 미가입 기업들에게 향후에도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겠다는가에 대해 설문을 하였다. 그 결과 현재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 52개 기업중 6개사만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간접휴지보험(CBI)에 대해서는 약 7%만이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기업뿐 아니라 음식업, 도소매업과 같은 서비스업종 기업들에서 기업휴지보험 수요(기업휴지: 9개 중 2개, 간접기업휴지: 9개 중 1개)가 작지만 다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현재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일지라도 제도적인 장치나 여건이 조성되면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표 IV-20> 미가입 기업의 휴지보험 가입의향(업종별)

(단위:%)

구 분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업	숙박업	음식업	도소매업	운송업	서비스업	합 계
기업휴지 보험	8.9 (4/45)	0 (0/1)	0 (0/1)	0 (0/1)	50 (1/2)	16 (1/6)	0 (0/1)	0 (0/1)	11.5 (6/58)
간접기업 휴지보험	4.4 (2/45)	0 (0/1)	0 (0/1)	0 (0/1)	50 (1/2)	0 (0/6)	50 (1/2)	0 (0/1)	7.1 (4/58)

주 : 상단의 수치는 가입의향율이며 ( )의 수치는 “가입의향회사/업종회사”를 의미함.

그리고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액 규모별 기업휴지보험 가입의향을 보면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00억 미만의 19개 기업의 경우 2개사가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고 1개사가 간접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0억에서 3000억미만인 20개 기업은 2개 기업이 기업휴지보험과 간접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3000억에서 1조 미만의 9개 기업은 2개사가 기업휴지보험에, 1개사가 간접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응답했으며, 1조 이상 10개 기업은 1개사만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미가입 기업의 휴지보험 가입의향(매출액별)

(단위: 개)

매출액	500억 미만	500억~3000억	3000억~1조	1조 이상	합계
기업휴지보험	2/19	2/20	2/9	1/10	7/58
간접기업휴지 보험	1/19	2/20	1/9	0/10	4/58

라.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요인

기업휴지보험은 건물 화재이나 선박 침몰 등을 담보하는 유형의 보험과 달리 보험가입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보험가입률이 재물보험에 비해 현저히 낮고 보험시장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기업휴지보험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본 설문조사는 응답 기업들에게 보험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기업휴지보험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표 IV-22> 기업 휴지보험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복수응답)

(단위:%)

개선사항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	21.4	5.7	18.6	20.0	22.5	11.6
단순한 상품체계로의 개선	8.6	35.7	25.7	14.3	9.9	5.8
기업휴지보험 전문가 양성	7.1	18.6	10.0	8.6	22.5	33.3
높은 보험료의 인하	41.4	17.1	15.7	12.9	8.5	4.3
가입심사 기준에 대한 완화	-	8.6	11.4	21.4	25.4	33.3
기업의 종합적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다른 상품의 개발	21.4	14.3	18.6	22.9	11.3	12.4

그 결과, 기업휴지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중 가장 1순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높은 보험료의 인하(41.4%)”, “기업의 종합적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다른 상품의 개발제공(21.4%)”,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21.4%)”의 순으로 나왔다. 반면에 기업휴지보험의 활성화에 있어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6순위의 사유를 보면 “보험회사의 가입심사 기준을 완화(33.3%)”, “보험회사의 기업휴지보험 전문가 양성(33.3%)”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이들을 보험회사 측면에서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이러한 기업의 활성화 인식은 앞의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이유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업휴지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종합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상품의 개발과 더불어 기업휴지보험의 보험료의 수준을 인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V. 기업휴지보험의 활성화 방안

### 1. 기업휴지보험의 활성화 방향

#### 가. 보험활용도 미흡원인

기업휴지보험은 건물 화재와 같은 유형의 손실을 보상하지 않고 2차적 손해인 무형의 매출액 감소와 같은 재무적 손실을 보상하기 때문에 동 사고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직면해보거나 기업이 사전에 리스크를 측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면 사실상 보험가입 유인이 적은 보험종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 가입수요는 아직까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국내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의 가입률을 매우 낮는데 이를 화재보험과 재산종합보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1> 화재보험의 기업휴지담보 가입율

(단위 : 억원, %)

연도별	공장계약 전체		기업휴지계약		기업휴지 가입율	
	계약건수	보험료	가입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2001	69,177	1,569	36	4.3	0.05	0.27
2002	69,557	1,757	25	5.4	0.04	0.31
2003	62,273	1,654	32	4.2	0.05	0.25
2004	51,612	1,505	32	4.0	0.06	0.26
2005	51,002	1,592	24	2.0	0.05	0.13
2006	49,841	1,556	23	2.3	0.05	0.15
계	353,462	9,633	172	22.2	0.05	0.23

자료 :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각 년도

화재보험의 경우 제조업체의 가입률은 0.05%에 불과하며 과거에 비해 큰 변화 없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2006년도의 경우 공장물건 화재

보험계약은 4만 9,841건이 체결되었지만 23개 기업만 기업휴지손해 담보특약을 가입하고 있고, 또한 23개 기업이 가입한 기업휴지보험료는 공장물건 전체보험료의 0.15%에 불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체, 대규모 상업시설 등의 휴업손실리스크가 크게 존재함에도 이들의 보험가입수요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실정에 있다.

재산 종합보험의 경우에는 화재보험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큰 기업들이 보험가입을 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비해 가입률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6년의 경우 6,612개의 재산종합보험 계약 중에서 625개 계약이 기업휴지손해담보를 가입하였으며 이들의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의 12%나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화재보험과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기업들 간의 기업휴지보험 가입률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기업규모에 따른 리스크관리 인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V-2> 재산종합보험의 기업휴지담보 가입율

(단위 : 억원, %)

연도별	공장계약전체		기업휴지담보		기업휴지 가입율	
	계약건수	보험료	가입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2002	625	720	139	49.0	22.24	6.80
2003	2,962	1,599	381	125.4	12.86	7.84
2004	4,820	617	305	40.0	6.33	6.49
2005	6,462	2,146	573	151.4	8.87	7.05
2006	6,612	2,127	625	258.0	9.45	12.13
계	21,481	7,209	2,023	623.7	9.42	8.65

자료 :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각 년도

이와 같이 기업휴지보험의 가입률이 매우 낮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내 보험회사들이 경제가 짧은 기간 속에 급속히 성장하면서 자동차보험의 꾸준한 성장과 국내 시장에만 존재하는 장기손해보험이 전체 시장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손해보험의 영역인 기업성 보험에 대한 상품개발이나 마케팅 전략이 크게 부진했다는 점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

나 향후에는 보험시장의 진입장벽이 철폐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보험은 채널간의 경쟁, 상품간의 경쟁으로 과거의 영업이익을 창출하는데 있어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생명보험에 실손보험을 허용한 상태라서 손해보 상품간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여 이들 보험을 통해 과거와 같은 자산운용수익률을 내는 데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전통적인 손해보험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들 잠재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기업휴지보험의 보험료규모를 화재보험의 기업휴지손해담보특약의 산출식을 이용하여 추정하여 보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기업휴지보험의 보험가액은 앞에서 언급한 <표 II-8>을 사용하였으며, 보험요율은 공장물건의 2006년 업종별 평균요율을 사용하였다. 물론 기업휴지보험료를 추정하는데 있어 보험가입조건(면책기간, 약정복구기간, 약정부보비율)에 따라 보험료는 큰 변화가 있으나 모든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한다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추정해 보았다.

<표 V-3> 기업휴지담보 보험료 추정액

(단위 : 억원,%)

업종	화재 기초요율(백만)			추정 BI 보험료		
	보험금액	보험료	평균요율	BI요율	BI가액	보험료
광업	12	4	0.33	0.26	9,483	25
제조업	1,034,561	155,626	0.15	0.12	3,607,908	4,331
도매 및 소매업	115,660	18,480	0.16	0.13	213,646	272
사업서비스업	2,084,102	126,365	0.06	0.05	357,621	173
계	3,234,337	300,479	0.09	0.07	4,188,658	4,801

주 : BI요율은 기초요율(화재보험 업종별 평균요율)×면책기간계수(7일 : 0.95)×복구기간계수(6개월 : 0.84)×약정부보비율계수(100%: 1)를 곱하여 산출

&lt;표 V-4&gt; 기업휴지보험의 가입율별 보험료 규모

(단위 : 억원)

업종	100%	90%	80%	70%	60%	50%
광업	25	22	20	17	15	12
제조업	4,331	3,898	3,465	3,032	2,599	2,166
도소매업	272	245	218	191	163	136
사업서비스업	173	156	138	121	104	87
계	4,801	4,321	3,841	3,361	2,881	2,401

이렇게 추정된 기업휴지보험료는 4,8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국내 기업들이 가입한 보험료는 화재보험계약의 2억원, 재산종합보험의 258억원을 합해 260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잠재수요가 크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정된 보험료는 국내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 휴지보험수요가 모두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보다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상업용 건물들의 기업휴지보험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수요추정은 기업휴업손해의 보상방식이나 가입방식, 보험료율 수준 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생략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현재의 기업휴지보험의 상품체계로는 이들의 기업휴업 손해 담보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러한 기업휴지 보험료의 추정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 나.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향

특정 보험시장이 활성화되었다라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보험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계약자가 다수 존재하고 이러한 계약자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적절하게 존재해야 한다는 점은 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보험회사 사이에 활발한 마케팅을 통한 상품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소비자는 최저 비용으로 최대 보험효용을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의 기업휴지보험시장은 과거와 동일하게 임직원의 직접 판매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점은 기업휴지보험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의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기업휴지보험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개발과 높은 보험료수준, 상품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인은 기업들의 특성에 맞는 기업휴지보험 상품을 개발하려는 보험업계의 노력이 부진했다고 보이므로 보험사들이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된다면 기업휴지보험의 시장이 점차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V-5> 기업 휴지보험의 활성화 방향

고려요소	현 재	개 선 방 향
상품	국내 독자 상품 부재 계약자 니즈 미반영	독자 상품 상품 판매 업종별 니즈 부합상품개발 다양한 보상방식 상품개발
가격	해외 재보험자 의존	국내 보험사 산출
판매방법	임직원 직접판매	고객군별 차별채널 전략
광고	전혀 하지 않음	리스크관리서비스와 병행

## 2.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

### 가. 보험 개발 필요성

#### 1) 상품개발 노력 부족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업휴지보험 상품은 196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기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내용상의 변화 없이 그대로 판매되고 있어

현재의 변화된 경제 환경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국내의 기업휴지보험은 국내 기업들의 자연적인 수요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것이라기보다 외국의 자본에 의한 경제개발정책으로 외국자본의 리스크관리 요청에 의해 기업휴지보험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기업휴지보험은 1970년에 영문으로 표기된 화재보험증권의 기업휴지보험특약이 인가되어 판매되기 시작한 이래 재보험의 필요성 때문에 1983년 영국식 이익보험약관이 판매되었고, 1968년에 복합리스크 담보 수요에 따라 재산종합보험이 인가되어 기업휴지가 한 부분으로 판매되었다. 이들의 주요 고객은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받은 기업들이었던 관계로 국내에서 기업휴지리스크에 대한 인식은 외국 자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기업들에게만 존재할 뿐이었고 국내의 일반적인 기업들의 경우에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표 V-6> 국내 기업휴지보험 상품 비교

	화재보험상품		재산종합보험
	국문약관	영문약관	
담보약관	화재보험보통약관+BI 특약	FOC Form+BI특약	Package All Risk Policy
가격산출	국내 손해보험사	외국 재보험사	외국 재보험사
판매방법	직판, 대리점	직판, 중개사	직판, 중개사
계약자	소규모 기업	중대형 기업	대규모 기업
도입시기	1987년	1970년	1969년
계약실적	계약 25건, 24억원	계약 1건	계약 625건, 258억원

그 후 기업휴지손해담보는 1980년대까지 영문화재보험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되어 왔으며, 1987년 11월에서야 국문으로 된 기업휴지손해담보상품이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인가되어 판매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 도입된 특약조차도 영국식과 미국식을 혼합한 일본식 상품체계를 준용하여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 적합한 독자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

이때부터 국내 기업들은 기업휴지보험을 다소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지만 여전히 소수 대기업과 같은 주요 업체만 기업휴지보험을 활용하고 있고 지금까지 상품내용은 거의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국내 보험회사들이 전통적인 손해보험시장의 상품을 개발하여 종합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표 33> 참조).

## 2) 다양한 기업휴업리스크에 대한 이해의 한계

기업들의 사업방식이 과거 60,70년대에는 단순한 단위 사업장내에서 가능하였지만 최근에는 기술발전과 글로벌화의 추진으로 고도의 기술을 접목하거나 원재료를 다른 기업이나 해외 소재 기업들로부터 제공받아야 하고, 전력이나 가스 등 유틸리티도 외부로부터 조달받기 때문에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는 과거와는 크게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sup>48)</sup>. 이러한 기업환경을 둘러싼 리스크의 변화에 대한 선진국 기업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기업휴지리스크(business interruption risk)는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선진국기업들은 기업휴지 손실을 테러위험이나 재물손해위험보다 높은 리스크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 V-7>를 통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들은 사업연속성 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에 대한 국가규격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업들이 활용토록하고 있으며, 기업휴지보험은 이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래의 <표 V-7>은 AON사가 영국의 1,000개의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리스크관리자, 보험관리자, 재무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2년 마다 실시하는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리스크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영국 기업들은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리스크로 기업휴지손해를 재물손해나 제조물책임, 테러리스크보다도 높은 순위로 인식하며, 기업휴지손해를 기업의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리해야 할 중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8) 민경휘(1998)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전산업연관도는 1975년 0.892였으나 1995년에는 1.397로 5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V-7&gt; 기업들이 직면하는 중요 리스크 순위

순위	2001	2003	2005
1	평판손실	기업휴지손해/변화실패	평판손해
2	변화실패		기업휴지손해
3	기업휴지손해	종업원사고	변화실패
4	제조물책임	종업원고용	제조물책임
5	컴퓨터범죄	평판손실	규제/법률 리스크
6	일반배상책임	전략적협조실패/전문인배상	재물손해
7	재물손해		종업원사고
8	종업원고용	일반배상책임	테러리스크
9	임원배상책임	제조물책임	지배구조
10	종업원사고	재물손해	전문인배상책임

자료: AON, Biennial Risk Finance Survey 2005(<http://www.aon.com>)

이와 같이 선진국 기업들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 중에서 기업휴지 리스크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여 이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보험회사들도 이러한 기업의 수요에 맞는 기업휴지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산업의 구조가 1970-1980년대의 중화학공업 중심의 제조업에서 1990-2000년대 들어오면서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과 유사한 산업구조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 상품은 1970년대에 도입된 외국보험사의 상품을 하나의 개선이나 발전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도입될 당시의 보험 상품은 1,2 차 산업(70년 기준 50%)의 기업체가 목표 고객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서비스업 비중(2006년 기준 69%)이 높은 경제 상황에서 과거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기업휴지보험 상품은 현재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기업휴지리스크에 대한 상품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lt;표 V-8&gt;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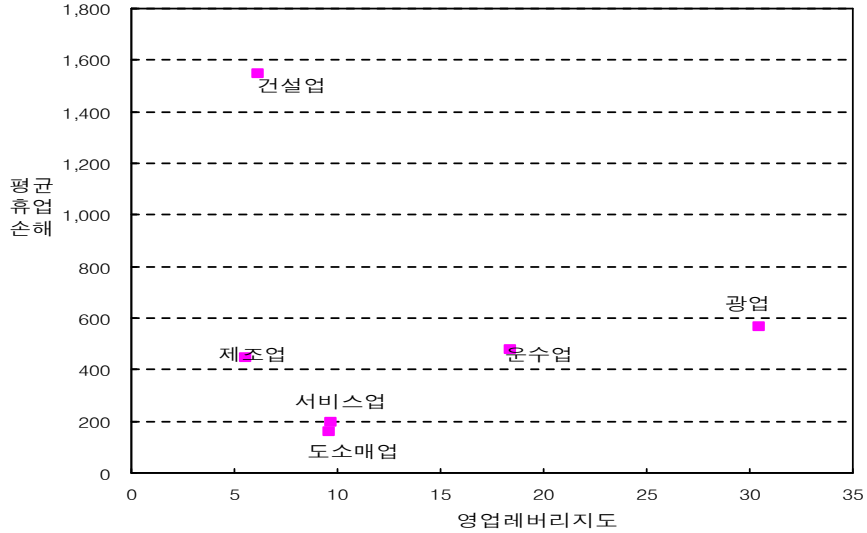
(단위: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7
농림어업	43.0	31.0	29.0	18.1	15.0	9.8	6.9	5.3	3.4
제조업	17.3	17.8	21.6	24.4	27.3	27.3	27.6	29.4	27.9
경공업	11.9	10.6	10.9	10.2	9.9	7.9	6.5	6.1	3.9
중화학공업	5.4	7.2	10.7	14.2	17.4	19.4	21.2	23.3	24.0
전기수도가스	1.1	1.4	1.1	2.2	3.0	2.1	2.0	2.6	2.3
건설업	3.7	5.1	4.6	8.0	7.3	11.3	11.6	8.4	8.9
도소매	13.2	14.3	16.3	12.4	12.0	10.5	8.4	7.9	6.7
운수창고통신	4.0	6.7	6.2	8.0	7.4	6.8	6.6	7.0	7.2
기타서비스업	17.7	23.7	21.2	26.9	28.0	32.2	36.8	39.4	43.7

주: 1960년대는 명목 요소비용 기준, 1970년부터는 명목 총부가가치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이러한 사실은 산업별 기업별 휴지리스크를 측정하여 비교하여 본 결과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그림 V-1>는 산업별 기업휴지 리스크의 특성을 기업 당 평균 휴업손해액 규모와 영업레버리지 비율을 통해 비교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건설업은 영업레버리지가 작은 반면에 휴업손실 규모가 매우 크고, 운수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평균휴업손해액 규모는 작으나 영업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기업휴지보험 상품의 담보위험이나 보상방식 등에서 차이가 존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경우 보험회사들의 경우에는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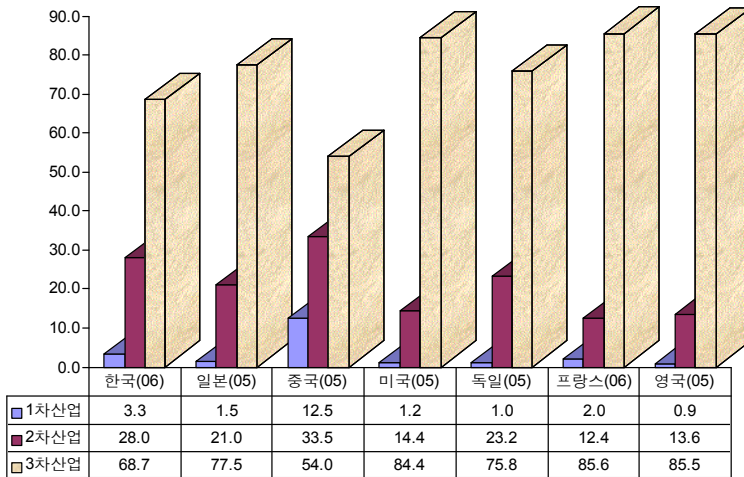
<그림 V-1> 영업레버리지와 평균 휴업손해액의 비교



나. 개발 상품형태

위의 <그림 V-1> 및 아래 <그림 V-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휴지손해담보상품은 업종별 기업휴업손해리스크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판매중인 국문과 영문 기업휴지보험 상품은 보험계약 실적도 연간 50건도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기업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재산종합보험약관의 경우에도 제공처가 불투명한 보험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소규모 기업이나 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기업휴지보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림 V-2> 한국과 주요국의 산업구조 비교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2007

이러한 기업휴지보험 상품의 구매력이 낮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손해 보험회사들은 기업들의 다양한 기업휴지 리스크에 대한 수요에 맞추어 적절한 상품을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과거 보험 상품의 상당 부분을 벤치마킹했던 일본 보험시장의 경우에는 기존 화재보험의 이익담보특약을 화재보험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담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규모 영업을 하는 점포 등을 대상으로 한 점포종합보험에 더해 최근에는 기업이익종합보험과 초비즈니스보험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기업휴지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휴지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의 손해보험회사들도 다양한 형태로 기업휴지리스크를 담보하는 일본이나 미국 등과 같은 종합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국내 손해보험회사가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약관이나 가격산출, 언더라이팅, 손해사정까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개발되어야 할 기업휴지보험 상품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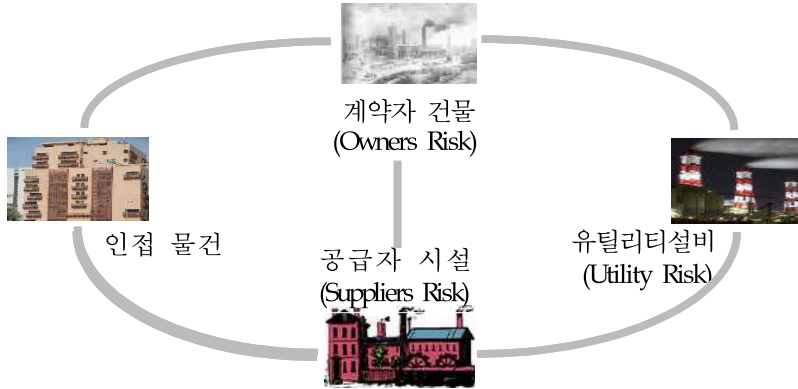
먼저 기업휴지리스크를 한 보험계약으로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

해야 한다. 현재 화재보험에서 판매하는 기업휴지손해담보특약은 기업체 자신의 사고(owners risk)로 인한 휴업손실을 담보하도록 제한되어 있고, 재산종합보험이나 영문 기업휴지손해담보특약의 경우에는 전력공급자(utility risk)나 원재료공급자(suppliers risk)에 대한 간접기업휴지보험(CBI)을 선택적으로 담보하나 약관이 공급자 중심의 약관체계인 과거 70년대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 변화된 경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여 보험 계약자인 기업들이 담보위험이나 보상손해액 등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를 종합적, 합리적으로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도록 신개념의 상품 개발의 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재산종합보험을 통해서 변화된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기업체의 영위업종별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이 가계성종합보험, 상업성종합보험, 제조업체용 종합보험 형태로 구분하여 이에 맞는 담보위험과 보상한도, 다양한 지급방식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일본과 같이 모든 업종의 모든 리스크를 한 증권으로 포괄 담보할 수 있는 초비즈니스보험과 같은 상품을 개발하여 기업들에게 종합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표 V-9>주요국의 기업휴지보험 상품

구 분	일 본		미 국
	과거 상품	현재 상품	
서비스업, 상업용건물	화재보험	비용이익종합보험	Business Owners Policy
	점포종합보험		
제조업	화재보험	초비즈니스보험	Commercial Property Policy

<그림 V-3> 기업의 휴지리스크의 포괄 담보 개념



두 번째로는 기업휴지 리스크의 담보개념을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담보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휴지보험은 가입 기업이 재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어느 정도 기업휴지손해가 발생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에 있다. 그리고 이는 제조업체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의 보상의 경우에는 더욱 설명이 어렵다. 따라서 상장기업들과 같이 기업의 회계 정보가 투명하여 휴업손실을 추정할 수 있는 기업과 추정하기 어려운 기업을 이원화하여 추정하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에는 휴업 1일당 정액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보상방식은 최근에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초비즈니스보험이 채택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기업휴지 리스크만을 독립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기업휴지 상품은 재물보험과 기업휴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기업휴지리스크를 담보 받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기업휴지 손해를 담보받기 위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가 나쁘거나 비용을 감축해야 하는 경제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높은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문제 때문에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재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경우 1981년에 이러한 이유를 감안하여 화재보험과 독립적인 상품(기

업휴지보험용 화재보험보통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휴지보험을 하나의 시장영역으로 규정하고 상품명칭도 기업들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상품명인 기업휴지(企業休止)보험이라는 명칭은 기업들이 이 보험 상품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 보험 상품인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영업손실보상보험, 사업중단손실보험 또는 경영중단손실보험으로 변경하여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동시에 기업휴지보험을 손해보험의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U의 경우에는 금전적 손실보험을 하나의 영역으로 하고 있다.

### 3. 보험료 부담완화

기업휴지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기업들의 보험니즈에 맞는 상품개발도 중요하다. 그러나 고객이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가입을 못하는 보험가용성 문제(affordability problem)<sup>49)</sup>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국내의 기업휴지보험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기업들이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높은 보험료 부담을 들고 있고 활성화를 위해 이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높은 보험료의 부담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49) 보험가용성 문제는 보험상품규제를 하지 않을 때 보험회사들이 경쟁에 따라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경우 대부분의 회사가 가격을 일제히 큰 폭으로 인상하여 계약자들은 보험가입 니즈는 있지만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보험가입을 못하는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주민이 법안을 만들어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인하시킨 사례도 있었다(캘리포니아 주 Proposition 103, 19).<http://www.iii.org/media/hottopics/insurance/ratereg/>

<표 V-10> 높은 보험료 인하(1순위) 응답 비율

(단위:%)

매출액 규모	500억 미만	500억~3000억	3000억~1조	1조 이상
응답비율	48	38	33	26

그렇다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업후지보험이 왜 보험료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 기업들이 계약건당 부담하는 기업후지보험료는 최근 5개년 평균 3,100만원이다. 이에 비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1.21억원이나 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기업후지보험을 인수하면 한 번의 사고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높게 부과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보험료 산출을 국내 보험사업자가 요율플랜(rating plan)을 가지고 산출하지 못하고 해외 재보험자나 보험자가 제시하는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국내 보험실적은 양호함에도 해외보험자의 영업실적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다. 보험료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11> 재산종합보험중 BI담보의 계약건당 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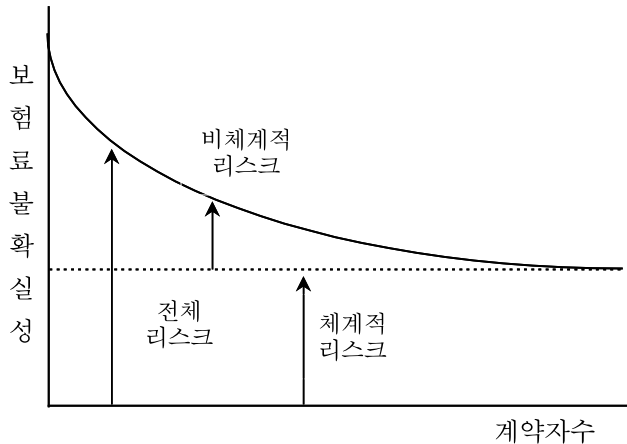
(단위 : 억원)

연 도	건당 가입금액(a)	건당보험료(b)	건당보험금(c)	초과비율(c/b)
2002	146.06	0.35	0.81	2.29
2003	257.06	0.33	6.43	19.53
2004	145.92	0.13	-	-
2005	798.92	0.26	3.00	11.37
2006	546.05	0.41	0.99	2.41
누적평균	475.51	0.31	1.21	3.94

자료: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각 년도에서 제작성

첫째, 기업휴지보험의 보험료가 높게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흔히들 말하는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됨과 동시에 수지상등의 원칙이 성립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계약자가 확보되고 손해액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휴지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질 위험 집단일지라도 대수의 법칙이 충족될 수 없는 계약자 집단이 되면 비체계적인 리스크(unsystematic risk, diversifiable risk)가 존재하게 되어 보험사업자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여 수지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그림 V-4> 다수 계약자 필요성



자료 : J. Francois Outreville(1998),p.105

둘째,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담보력을 제고시켜 기업성 인수물건에 대한 보험요율 산출권을 국내 원보험사업자(direct insurer)에게로 복귀시켜야 한다. 2007년 현재 국내 10개사의 평균 담보력비율은 298%로 1990 400%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담보력을 확충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향후 담보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성이 있고,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통계를 세부적으로 집적하여 기업휴지 리스크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기업휴지 리스크 특성에 맞는 요율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내 기업휴지 리스크에 대한 보험시장은 활성화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우 장기보험 중심이 아닌 전통적인 손해보험사업 영역에서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로 인해 국내 손해보험회사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취약해질 가능성 역시 존재하고 있다.

<표 V-12> 국내 손보사의 담보력 및 출재율 추이

(단위 : 억원,%)

연 도	담보력 비율			화재특종 출재율		
	잉여금 ①	경과보험료②	비율 (②/①)	수입보험료 ③	출재보험료 ④	출재율 (④/③)
1990	4,971	20,113	404.6	4,283	1,826	42.6
1995	7,872	53,951	685.3	9,947	5,302	53.3
2000	17,510	65,360	373.3	13,106	8,461	64.6
2005	24,438	91,612	374.9	23,636	13,939	59.0
2007	42,367	126,562	298.7	26,174	14,970	57.2

주 : 1) 보증보험사, 코리안리, 외국사 국내지점은 제외한 것임

2) 잉여금은 자본계정의 합에 비상위험준비금을 합한 것임.

자료 : 보험개발원 통계정보시스템(<http://www.kidi.or.kr/statpds/kidi/yearbook/yearbook.aspx>)

셋째, 다양한 보험료 차등제도를 도입하여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현재는 해외 보험사업자가 어떠한 요율플랜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지가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에 있어 기업들의 국내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상태에 있다. 따라서 기업휴지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기업휴지보험 상품에 대한 정체불명의 보험요율을 체계화하여 국내 기업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리스크에 상응하는 보험료 수준이 이해가 가고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휴지보험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이나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영위업종별 보험료가 작성되고, 다양한 보험료할인제도가 도입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고려해야 할 보험료 할인제도로는 뒤에서 언급할 리스크관리규격에 대한 인증을 받거나 사업연속성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 과거 손해율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경험요

율제도(experience rating), 한 증권으로 담보하는 포괄담보할인 제도(package discount)를 들 수 있다.

#### 4. 마케팅의 개선

##### 가. 기업휴지보험 이해 촉진

국내 손해보험 회사들은 주로 가계성, 저축보험에 자원의 대부분을 할당하고 기업성보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의 손해보험회사들처럼 상품개발이나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또한 2001년 완전가격자유화 이후 손해보험회사들의 영업활동은 다소 보험리스크가 적고 회사의 현금흐름확보가 보다 쉬운 가계성보험에 집중함으로 인해 현재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기업성보험 영역에서의 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sup>50)</sup>의 손해보험회사들은 기업휴지리스크에 대한 규모측정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 기업들이 노출되어 있는 기업휴지 리스크를 측정하고 적정 가입한도 등을 자동적으로 산출하는 코너를 사사의 홈페이지에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선진국들의 예를 살펴보면, 일본의 동경해상 등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우 기업들에 대한 사업연속성계획(BCP) 컨설팅 서비스 제고 및 관련 보험상품 개발 제공(손보재팬 그룹)등의 노력을 통해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홍보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Travelers사의 경우 기업성 보험 수요가 있는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휴업손실가액을 기업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Business Income and Extra Expense Calculator”<sup>51)</su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손해보험회사 중에는 Travelers사나 영국 Zurich 사와 같이 기업휴지보험 금액을 자체적으로 산출해 볼 수 있게 하는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아직은 없는 상

50) <http://www.zurich.co.uk/RiskServices/riskengineering/strategicrisk/StrategicRisk.htm>

51) <http://www.travelers.com/iwcm/trv/docs/BINonManufacturers.xls>

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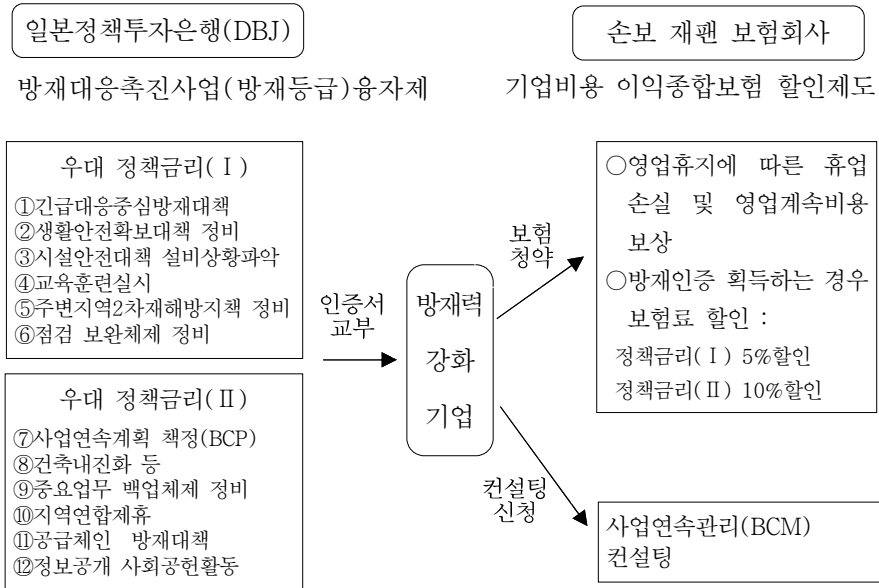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과 같은 종합 리스크관리 서비스 능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다양한 기업휴지보험을 비롯한 기업성보험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품의 이해를 촉진하고 고객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 나. 판매채널 다양화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기업휴지보험을 비롯한 기업성보험의 대부분이 임직원 등을 통한 직판채널을 통해 보험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과거부터 기업성보험은 마케팅의 개념이 적용되지 못하는 시장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우에는 대규모 제조업체나 서비스업체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체에게도 종합적인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상품개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이 다양화되고 소비자가 이해가 용이하게 되면 기업휴지보험 상품도 직판채널이 아닌 대리점이나 중개사채널 또는 설계사들에 의한 보험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 향후에 사업연속성관리기준이 국내에 도입되면 동 제도와 연계시켜 단체보험 형태로 기업휴지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에 사업연속성계획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산업별 단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6년에 정부투자은행이 중소기업들의 “방재대응촉진사업을 위한 용자제도”를 시행하면서 손보재팬과 업무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손보재팬은 기업들이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업연속성관리기준을 채택하고 이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 사업연속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면서 기업비용이익종합보험을 10%이상 보험료 할인하여 인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을 도식화 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V-5> 일본 손보재팬의 BCP 연계 보험제도



자료 : 일본정부투자은행 News Release, 損害保険ジャパンと企業防災の取り組み支援で提携, 2006.10.5 (<http://www.dbj.jp/news/archive/rel2006/1005.html>)

## 5. 종합적 리스크관리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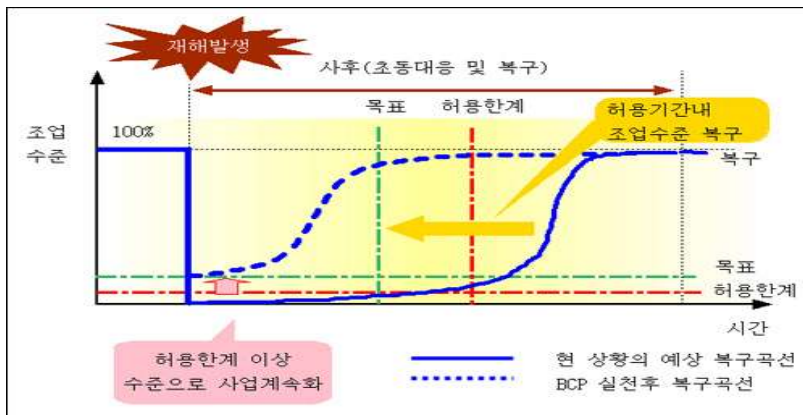
### 가. 도입필요성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의 항목 중 기업휴지보험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기업들과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향후 가입의향에 대해 질문한 설문 결과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기업의 거의 대부분인 93%가 계속가입 의향을, 비가입기업의 11.5%만이 신규로 가입할 의향을 보이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단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게 된 기업들은 기업휴지보험의 효용성을 높게

평가하여 향후에도 계속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기업휴지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휴지보험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기업휴지보험을 사업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는 사실을 제시해 주고 있다.

불의의 재해나 사고의 피해로 인한 매출액의 감소로 발생하는 기업의 영업이익 및 경상비의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기업휴지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업의 중단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복원력의 확보를 제공하고 조직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협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총체적 관리 프로세스인 사업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기업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는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V-5>는 사업연속성계획(BCP)의 실행여부에 따라 기업들이 재해를 당한 후 원래의 조업수준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복구기간이 현저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V-6> 사업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의 효용성



자료: 삼성지구환경연구소(2007)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예상치 못한 사업의 중단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복원력의 확보를 제고시키기 위한 기업의 사업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에 대한 국가적인 표준의 제정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구축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와 같은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화재나 정전과 같은 일반재해와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연속성계획(BCP)이 국가적인 규격으로 제정되어 기업들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사업연속성계획(BCP)의 구축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경우에는 96%(완료 62%, 수립 중 34%)의 기업이 사업연속성계획(BCP)을 구축했거나 구축하는 중에 있으며 BCP를 구축하지 않은 기업은 신뢰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되어 기업 간의 거래 및 비즈니스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등 경영활동에서 BCP 구축이 계약조건에 포함되는 사례가 일반화 되어 있으며, 일본의 경우 동경증권거래소의 상장기업 및 비상장기업 매출액 상위 3,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연속성계획(BCP)의 구축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조사 기업의 65.1%가 현재 BCP 구축을 완료했거나 구축 중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표 V-13> 주요국의 사업연속성관리 규격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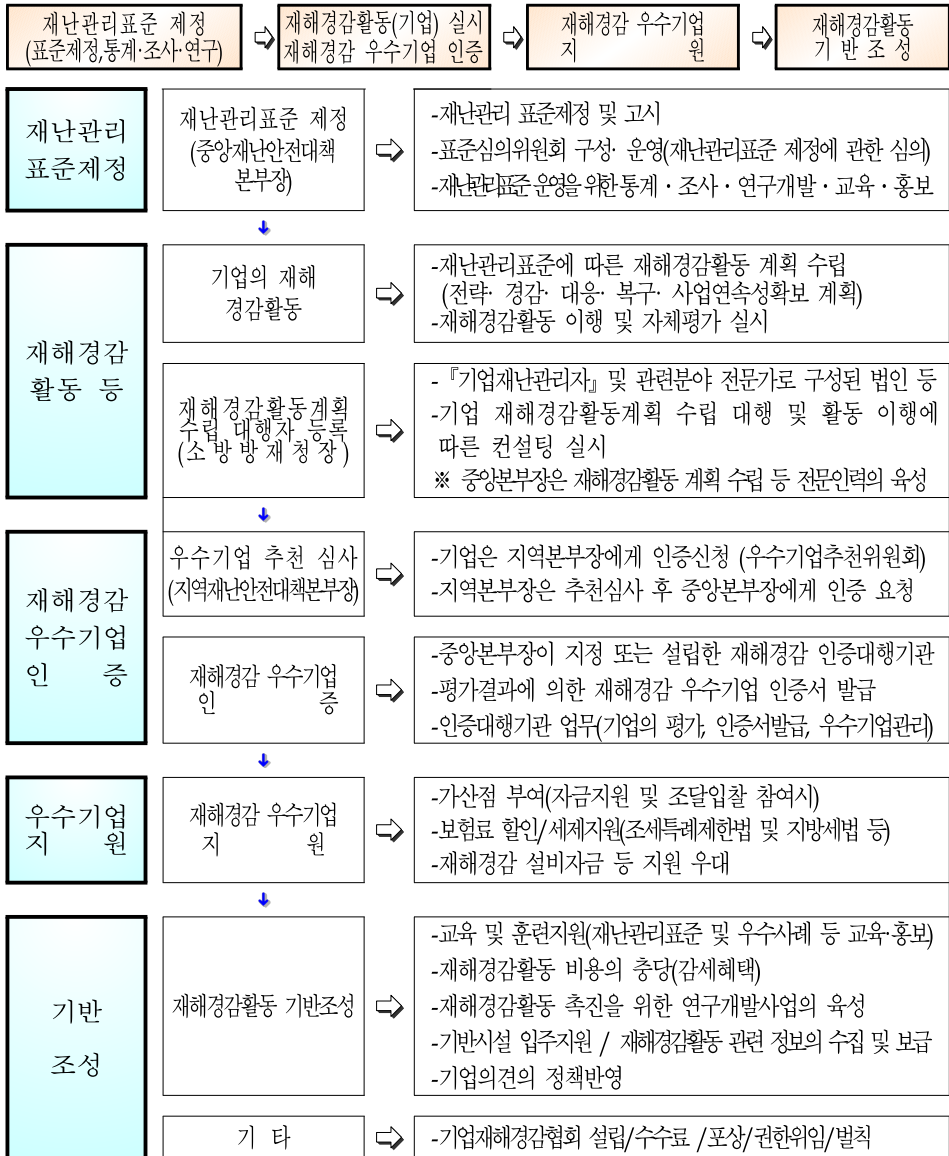
국가	규격 명칭	작성주체	비 고
영국	PAS56 Guide to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2003)	영국 규격 협회 (BSI)	예상되는 리스크로부터 사업중단시 사업영향도(business Impact Analysis) 분석을 중요시함
미국	NFPA 1600 Standard on Disaster/Emergency management and Business Continuity Programs(2004)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일본	사업연속성계획책정가이드라인 (2005.3)	경제산업성	IT사고를 상정한 BCP 책정 수준, 검토사항 규정
	사업연속성계획책정가이드라인(제1판) (2005.8)	내각부 중앙방재회의	지진까지 상정한 BCP이며, 생명안전, 2차 피해, 등 규정

자료 : 동경해상, 사업연속성계획(BCP)란, TRC EYE Vol. 85, 2006, p.3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거대하여 예측치 못한 재난과 사고의 발생은 해당 기업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기업의 리스크 관리실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의 손실이라는 사회전반의 비용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업연속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영국이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재해경감지원법”이라 한다)』이 2007년 7월 19일 법률 제8530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9월에 서야 시행규칙이 마련됨으로써 본격 시행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1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법 내용



자료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2006), p.13

## 나. 개선방향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는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재해경감 활동계획으로는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 계획(BCP), 대응계획, 복구계획 등의 규정이 있다. 국내 기업들이 재해경감활동계획을 도입하고 인증을 받게 되면 정부로부터 공공자금을 지원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거나,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를 할인 받거나, 세계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의 규정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실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보험관리형의 전통적인 리스크관리에서 현대적인 전사적 리스크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의 규격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리스크관리규격은 없지만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연속성관리기준을 도입하고 있어 리스크관리에 있어 일견 선진국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된 재해경감지원법은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경감유도에 중점을 두고 있어 경제 주체들의 리스크관리 인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주체들의 리스크관리 인식의 도입과 추진을 통한 사회전반의 리스크관리 비용이 감소가 될 수 있도록 미국, 호주(The Risk Management Standard, AS/NZS 4360-2004<sup>52)</sup>), 일본(JIS Q 2001, 리스크마네ジメント시스템構築のための指針) 등과 같은 종합리스크관리규격<sup>53)</sup>을 국가차원에서 규격으로 제정하여 기업들이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52) [http://www.broadleaf.com.au/pdfs/trng\\_tuts/tut.standard.pdf](http://www.broadleaf.com.au/pdfs/trng_tuts/tut.standard.pdf)

53) 호주와 뉴질랜드는 공동으로 1995년에 세계최초의 『전사적 리스크관리의 표준규격』을 제정하였으며, 그 후 1999년과 2004년(The Risk management Standard, AS/NZS 4360:2004)에 개정하였다. 일본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리스크관리 기준을 모델로 삼아 2001년 3월 20일에 일본공업규격으로 『리스크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지침 JISQ 2001』을 제정하였으며, 후지쯔, 카시오 등 일본 유수의 기업들이 동 지침에 의거한 전사적 리스크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기형(2007), p.

사업연속성계획도 전사적 리스크관리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여 순수리스크(pure risk)에서 재무적 요인에 의한 투기적 리스크(speculative risk)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표 V-15> 참조).

<표 V-15> 리스크관리와 사업연속성관리의 사이클 비교

구 분	전통적 리스크관리	전사적 리스크관리	사업연속성관리	
대상 리스크	순수리스크	순수리스크, 투기적 리스크	순수리스크	
사이클	1단계	리스크의 특징 및 분석	상황(전략적, 리스크 관리상황, 리스크평가 기준, 리스크관리체제)의 확정	사업의 확정
	2단계	리스크처리수단의 검토	리스크의 특징, 분석, 평가	사업영향도 평가, 중요업무의 결정 및 목표의 설정
	3단계	최적 수단 선택	리스크의 처리	계획의 책정
	4단계	수단의 실행	모니터링	교육, 훈련
	5단계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	점검 및 시정조치

자료 : 杉野文俊(2007),p.91

두 번째는 재해의 범위이다. 현재는 재해에 대한 범위가 자연재해로만 되어 있어 실제로 노출되어 있는 기업의 사업 연속성 리스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사례에서 보면 기업휴지보험금은 화재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업이 처한 지리적 환경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기상이변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리스크는 사전적으로 계획하여 대응하면 노출확률이 적은 반면에 인위적 재해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리스크는 기업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재해경감법의 적용되는 재해의 범위를 향후에는 모든 화재를 포함한 모든 재해로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정부의 지원정책을 받는 기업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의 규모나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는 제도가 계속 운영되는 경우에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재해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대기업은 어느 정도 자금력이나 인적자원측면에서 규모와 여력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이나 보험 가입 등의 방법을 통해 리스크관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정보력, 자금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리스크관리에 있어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화재 등의 인적재해나 자연재해가 한번 발생하면 경영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표 V-16> 기업규모별 수익대비 리스크비용 지출 비교

(단위 : %)

수익(백만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100	22.46	33.98	34.60	33.63	41.35	34.68
100~250	10.44	16.57	17.62	17.97	16.61	16.34
250~500	7.65	10.46	13.82	11.94	10.25	13.04
500~750	6.12	7.29	10.28	10.70	7.64	13.04
750~1,000	8.61	9.77	8.89	9.40	8.95	9.21
1,000~2,500	5.69	7.32	8.16	9.76	7.55	7.61
2,500~5,000	5.79	6.72	5.75	5.68	6.77	6.74
50,00~10,000	4.90	3.96	3.42	5.17	5.36	4.83
10,000~	3.22	6.42	5.28	4.02	3.14	3.70
평균	8.42	11.95	13.50	13.91	13.15	11.94

자료 : RIMS(2007), p.106

이와 같은 기업 간 리스크관리의 차이는 미국의 리스크 비용지출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확연히 나타난다. 위의 <표 V-16>에 의하면 연간 수익규모가 1억 달러 이하 기업들은 수익액의 34%를 리스크관리비용으로 지출하지만, 수익액 100억달러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는 3.7%를 지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은 리스크관리에 있어서 대기업에 비해 훨씬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의 제고 측면에서 국내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리스크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 대상을 대기업은 제외하고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는 기업들의 지출한 재해경감활동투자비용<sup>54)</sup>이외에 보험가입비용도 법인세 공제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현재 재해경감지원법 제21조<sup>55)</sup>는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업이 지출한 재경감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안은 없는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자연재해를 비롯한 인위적 재해에 대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의 전액 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내에서 법인세에서 차감해줄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 법인세를 차감해주는 보험도 저축성이나 투자성 보험, 사회보험을 제외한 종합리스크관리기준상의 정한 리스크에 대한 보험에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선진국형의 종합리스크관리규격이 마련되게 되는 경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은 크게 증가하고 사회적 비용이나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sup>56)</sup>. 아울러 이러한 정부차원의 기반의 마련과 동시에 손해보험회사들도 일본이나 유럽 손해보험회사들처럼 사업연속성계획(BCP)을 포함한 전사적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할 필요가 있다.

## 6. 도덕적 해이방지

미국 손해사정사를 대상으로 기업휴지보험의 손해사정을 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가장 높은 빈도로 접하게 되는 사항으로는 계약자가 선급금 요청하거나, 복구기간에 대한 동의여부, 계약자가 비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점, 손해사정을 하는데 있어 문서의 이용의 한계 등이었다. 반면에 가장 적게 접하게 되는 사항으로는 계약자들이 보험사기로

54) 재해경감지원법안의 세제지원 추계에 의하면 재해경감투자비용의 3%를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박기춘 의원 발의(2006),p.23

55) 제21조(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56) 박기춘 의원 발의, 재해경감지원법률안법률안, 2006.9.11, p.25

청구하는 행위(suspicious of fraudulent claim)였으며 그 다음은 손실경감에 대한 실패 등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과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보험사기로 진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V-17> 기업휴지보험의 손해사정 시 자주 접하게 되는 이슈

손해사정사가 자주 접한 내용	출현빈도
선급금 요구(request for advance payments)	2.72
복구기간에 대한 동의(agreeing on a period of restoration)	2.54
추가비용(extra expenses)	2.51
비합리적인 기대(unreasonable expectations)	2.45
문서의 이용 가능성(availability of documents)	2.36
담보범위에 대한 질문(coverage questions)	2.25
상호 협력의 부족(lack of cooperation)	2.17
청구의 중복(duplication in the claim)	2.15
약정보비율의 적용(application of co-insurance)	2.10
손실경감에 대한 실패(failure to mitigate loss)	2.01
사업의 생존(survival of the business)	1.97
사기적인 보험금 청구(suspicious or fraudulent claim)	1.90

주 : 출현빈도는 3는 자주출현이고, 1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 George Magula(2002),p.3

이에 비해 국내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이 생각하는 기업휴지보험 활성화를 위한 우선순위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보험료부담 등의 경제적 요인만 주요요인을 들고 있는 반면에 보험회사의 전문가 양성은 가장 후순위위라고 답하고 있다(<표 IV-22> 참조). 그러나 보험회사가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전문가의 양성을 통해 기업휴지리스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더욱 많이 축적되면 가입자들이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등에 있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것을 더

줄일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기업휴지보험 금액을 가능하게 하여 높은 보험료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휴지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전문성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업무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보다는 선배들로부터 전수받은 선협지식에 의하여 언더라이팅에 임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보험료산정도 해외 재보험자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나 일반 손해보험이 손해보험회사의 본연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CPCU(Chartered Property Casualty Underwriter)<sup>57)</sup>, 영국의 CII(The Chartered Insurance Institute)과 같은 전문적인 언더라이터 자격증 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손해사정사들도 기업휴지보험의 언더라이터나 손해사정사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수단으로 전문가인 멘토링을 통한 실전경험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며, 전문언더라이터 자격증 제도(CPCU)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표 V -18> 보험종사자, 손해사정사의 효과적인 교육수단

효과적인 교육수단	효과성
멘토링을 통한 실전경험("Hand-on" with Mentoring)	4.29
약관 이해(Reading Policies)	4.02
멘토링(Mentoring)	4.00
외부 전문가의 이용(Use of Outside Experts)	3.96
지속적인 조직 내 교육훈련(Ongoing In-House Training)	3.81
종일 교육훈련(One-Day Training)	3.22
논문과 책의 이해(Reading Article/Books)	3.15
전문언더라이터 자격증(CPCU/AIC course)	3.15
실전경험 ("Hand-on" Only)	3.05

주 : 효과성은 5는 가장 효과적이고, 0은 효과없음을 의미함.

자료 : George Magula(2002),p.9

57) <http://www.aicpcu.org>

## VI. 결 론

국내 손해보험의 국제적 위상은 전후 비약적인 성장에 힘입어 세계 10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손해보험시장이 성장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저축성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손해보험회사의 주력 보험상품은 화재보험과 해상보험이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이름에는 화재보험이나 해상보험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통적인 손해보험 종목이 손해보험회사의 주력 상품이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기업휴지보험도 그러한 시대였던 1969년에 처음으로 국내 시장에 외국의 투자 자본의 요청에 의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기업휴지보험 역사는 40년이 되어 가지만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상품이나 요율의 변화에 비교해 보면, 기업휴지보험은 40년이 경과하는 동안 고객인 기업들의 니즈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는 상품의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체적인 요율플랜 조차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 기업들의 리스크에 대한 중요도를 보면 기업휴지리스크를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기업들의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규격 즉 사업연속성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정책과 기업의 사업연속성 계획을 연계시키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기업의 중요한 리스크로 부각된 기업휴지리스크관리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종합리스크관리 컨설팅 관점에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t;표 VI-1&gt; 기업휴지보험 가입기업과 미가입의 인식차

구 분	BI 가입기업	BI 미가입 기업
향후가입 의향	93.3%(제조업 91%)	11.5%(제조업 10.3%)
BI보험 효용	부채비율 : 사고전후 3년간 표준편차 10%이내	150% 이상 증가, 외부 자금 조달 필요
	영업레버리지비율 : 사고 후 비율 증가가 미미	사고 후 300% 이상 증가해 고정비지출 부담가중
	ROE : 감소하지 않고 증가해 투자자 유치 무난, 새로운 사업 확장 가능	100% 이상 급격히 감소해 투자자 외면가능성 증가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인식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선진국들의 인식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존재한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기업과 가입하고 있는 기업의 향후 기업휴지보험가입 의향을 보면 현저한 차이가 있다. 가입한 기업은 93%의 기업이 계속적으로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겠다고 하나 가입하지 않은 기업은 11%만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기업휴지보험의 효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기업휴지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재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성과는 물론이고 자금운용 등 재무관리측면에서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업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들에게 BI 리스크를 이해시키기 위해 미국 트래블러사나 영국 Zurich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기업휴지손실가액을 측정하고 보험가입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다.

또한 기업휴지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1970년대의 산업구조에서 현재의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한 경제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국내 기업휴지리스크에 대한 측정과 평가가 가능하고 이에 기초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는 통계적 기

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보험사들은 담보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 국가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연속성관리기준을 도입할 것을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 자연재해, 테러, 화재 등 예측하기 힘든 각종 재난으로 인한 국가와 기업의 경제적 손실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요즘, 사업연속성관리 기준의 도입은 국가와 기업의 중요한 핵심 자원의 안정성 및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초석으로서 그 도입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큰 효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손해보험회사는 기업들의 사업연속성계획(BCP)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와 업종별로 다양한 맞춤형 기업휴지보험 상품을 제공하여 국가 전체의 리스크 관리에 있어 협력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2006.11
- 민경휘,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 관련구조 변화의 분석』, 산업연구원, 1998.9
- 박기춘의원 발의안,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6.9.11
- 이종섭, 『기업휴지보험』, 보험연수원, 2004.6
- 이기형, “미국기업들의 리스크 비용 지출현황과 보험에의 시사점(주간보험이슈 제116호)”, 2007.8.27
- 오해송, 총수익방식 기업휴지보험의 연구, 『보험개발연구』 통권 제3호, 1996
- 정예모, Plan B(대안)를 준비하라 -BCP 관점의 기업 자연재해 대응전략, 삼성지구환경 연구소, 2007
- 山崎頼美, 企業火災保險におけるPML(蓋然的最大損失)の意義に關する一考察 『保險學雜誌』 第583號, 2003.12.
- 山崎頼美, 企業火災保險リスク評價における今日的課題 『保險學雜誌』 第593號, 2006.6
- 鈴木克彦, 利益保險の改正について, 『保險學雜誌』 第498號, 1982.9
- 杉野文俊, 事業繼續マネジメント(BCM)にみる現代的リスクマネジメントの思考法, 『損保研究』 第39卷第2號, 2007.8.27
- 損害保險料率算出機構, 『火災保險論』,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 2007
-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Using BS 25999, www. pas56.cpom.
- Dearborn Financial Institute, *PASSTRAK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Licensure Exam Manual*, 2001
- Flitner · Trupin, *Commercial Insurance*, AICPU, August 2004
- George Magula, A Question of Time: Problems in Business Interruption Losses, *CPCU eJournal*, May 2002

- Gordon J. R. Hickmott, *Interruption Insurance Practical Issues*, London : WITHERBY, 1999
- J. Francois Outreville, *Theory and Practice of Insurance*,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8
- Munich Re, *Minimising Business Interruption Losses : Business Continuity Planning-A Risk Management Tool*, 2008
- Peter Jones, *Under-insurance and Non-insurance in the Small Business Sector*, SUNCORP, 2007
- RIMS, *2006 RIMS Benchmark Survey*, RIMS and Advisen Ltd ,2007, p.106
- R.M. Walmsley,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The Chartered Institute, 1992.
- Swiss Re, *Contingent Business Interruption and other special covers*, 2002
- \_\_\_\_\_,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2004



---

##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 ■ 연구보고서

-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옥 2006.1
- 2006-2 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 김헌수 2006.3
-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8
- 2006-4 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경희 2006.12
- 2007-1 국제보험회계기준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장희, 김동겸 2007.1
- 2007-2 민영건강보험료율 결정요인 분석 / 조용운, 기승도 2007.3
- 2007-3 퇴직연금 손·익 위험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07.3
- 2007-4 확률적 프런티어 방법론을 이용한 손해보험사의 기술효율성 측정 / 지홍민 2007.3
- 2007-5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 안철경, 기승도 2008.1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3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1

## ■ 조사보고서

-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 조재현, 박정희 2006.3
- 2006-2 주요국 방카슈랑스의 운용사례 및 시사점 / 류건식, 김석영, 이상우, 박정희, 김동겸 2006.7
- 2007-1 보험회사 경영성과 분석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류건식, 장이규, 이경희, 김동겸 2007.3
- 2007-2 보험회사 브랜드 전략의 필요성 및 시사점 / 최영목, 박정희 2007.3
- 2007-3 200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오승철 2007.3
- 2007-4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 류건식, 이상우 2007.4
- 2007-5 지적재산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7.10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정책보고서

- 2006-1 200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6.12
- 2006-2 의료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에 대한 연구 / 차일권, 오승철 2006.12
- 2007-1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 류건식, 이경희 2007.2
- 2007-2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 차일권, 이상우 2007.3
- 2007-3 퇴직연금 지급보증체도의 효율체계에 관한 연구: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봉주 2007.3
- 2007-4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 김성태 2007.3
- 2007-5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안철경, 기승도, 이경희 2007.4
- 2007-6 200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7.12
- 2008-1 민영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조용운, 김세환 2008.3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혜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2009.3 이경희

■ 연구논문집

-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1호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2호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3호
-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4호

■ 영문발간물

-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1호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6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6.10
- 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7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7.9
-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0호 선진 보험사 재무공시 특징 및 트렌드(유럽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장이규 2006.11
- 21호 지급여력 평가모형 트렌드 및 국제비교 / 류건식, 장이규 2006.11
- 22호 선진보험그룹 글로벌화 추세와 시사점 / 안철경, 오승철 2006.12
- 23호 미국과 영국의 손해보험 직판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 안철경, 기승도 2007.7
- 24호 보험회사의 자본비용 추정과 활용: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이경희 2007.7
- 25호 영국손해보험의 행위규제 적용과 영향 / 이기형, 박정희 2007.9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 CEO Report

- 2006-1 생보사 개인연금보험 생존리스크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6. 1
- 2006-2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 / 보험연구소 2006.1
- 2006-3 생보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2
- 2006-4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6.2
- 2006-5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분석 및 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6 보험사기 관리실태와 대응전략 / 정보통계본부 2006.3
- 2006-7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8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6.4
- 2006-9 날씨위험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4
- 2006-10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손익관리를 중심으로- / 손해보험본부 2006.5
- 2006-11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6.5
- 2006-12 장기간병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방향 / 보험연구소 2006.6
- 2006-13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 보험연구소 2006.7
- 2006-14 생명보험 가입형태별 위험수준 분석 / 리스크·통계관리실 2006.8
- 2006-15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연구소 2006.9
- 2006-16 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및 운영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9
- 2006-17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현황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10
- 2006-18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6.10

- 2007-1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 보험연구소 2007.4
- 2007-2 외국의 협력정비공장제도 운영현황과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7.4
- 2007-3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 보험연구소 2007.6
- 2007-4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 보험연구소 2007.7
- 2007-5 방키슈랑스 확대 시행과 관련한 주요 이슈 검토 / 보험연구소 2007.11
- 2007-6 자동차보험 시장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7.11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정기간행물

### ■ 계간

- 보험동향
- 보험개발연구

# 『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 · 보험동향(계간)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 · 보험동향(계간)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 · 보험동향(계간)	-보험개발연구 (년3회 ₩ 30,000)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월보 -손해보험통계연보	-보험통계월보 -손해보험통계연보	-	-보험동향 (계간 ₩ 20,000)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68-4414, 4415    팩스 : (02)368-4099

##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 지로번호 : 6360647

##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 저 자 약 력

### 이 기 형

국민대학교 경영학 박사  
현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  
(E-mail : kihlee@kiri.or.kr)

### 한 상 용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현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 연구원  
(E-mail : hsy@kiri.or.kr)

경영보고서 2009-0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발 행 일 2009년 3월 일

발 행 인 나 동 민

발 행 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02) 368-4400

---

ISBN 978-89-5710-075-2

정가 10,000원